

국립국어원 2017-01-4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87-0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강 승 혜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어교원 교육 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7년 04월 10일 ~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강 승 혜 (연세대학교)

연구 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강승혜
공동 연구원	장은아, 방성원, 조태린, 이보라미, 권진주
연구 보조원	김은실, 신승윤, 홍경희, 홍성주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의 타당성 점검을 통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05년 7월 한국어와 관련된 국어기본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근거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한국어교육의 성장과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0년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신청 제도’와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신청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학계 및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대두되었다.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운영의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 교원의 전문성 확보, 학습자 지원 관리 체제 등의 질적 발전을 위한 평가 체제 확립이 요청된다.

국립국어원 연구 과제였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방안 연구(강승혜 외, 2014)’의 연구에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현장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 유형에 따라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 개발된 평가 도구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서 시범 적용 과정의 문제점,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도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적용을 통해 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도구에 대한 내부 공동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평가 도구를 수정하였다. 둘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필요성에 대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관계자의 요구와 한국어교육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셋째, 공동 연구원들의 검토를 기초로 수정된 평가 도구(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 적용을 위한 평가 도구를 도출하고 기관 유형별(학부, 대학원,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로 두 곳을 선정하여 총 8개 기관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시범 적용 평가 결과와 시범 적용 평가 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 평가의 절차, 시기, 평가위원의 자격, 평가단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운영방식을 함께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시범 적용 과정을 통해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표준이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지정제(가칭) 도입과 시행에 있어 인증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평가 지표, 지정제, 기관 유형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accreditation evaluation model for the efficiency of Korean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e study proposes an evaluation model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by checking the validity of "Korean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rriculum Accreditation Evaluation Model" developed previously.

In July 2005,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was promulgated, and the Korean Teacher Qualifications System that based on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nd stabiliz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Korean Teacher Qualifications System for more than 10 years, the problems of "Examination Applic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Curriculum and Subject" and "Individual Qualification Applic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were revealed. In addition, the opinions of the academic and expert groups about the necessity of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e have been rais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order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quality management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is of vital importance. To achieve thi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evaluation system for qualitative development, such as improving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promoting efficiency of curriculum operation, ensuring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enhancing learner support management system.

In the stud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rriculum Evaluation (Kang et al., 2014)", the Korean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rriculum accreditation evaluation model was developed, but there was no review

on site suitabil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index by selecting a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type and applying the evaluation model developed previous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evaluation model for the accredit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pilot application process and the result of pilot applica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accredit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rying to build the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tentative name) in the future,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educational institute's operation through the pilot applica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proposes effective management plans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To this end, first at all, the evaluation model was revised through the review of internal collaborators. Seco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needs of the experts and the opinions of the academics about the necessity of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the evaluation model that was revised after the review of the co-researchers was consulted by the related expert groups and the evaluation model for the pilot application was derived by reflecting the consultation. After that, two institutions were selected per institution type (undergraduate, graduate school, non-degree cours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nd pilot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was conducted in 8 institutions. Fourth, the final evaluation model was presented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committee's opinions. The accreditation system operation methods, such as process, timing, qualification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and evaluation team operation method were also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that can be a standard for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e, as evaluation areas,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index are promoted and guided through pilot appli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p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by standardizing the operation of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Korean language teachers. Moreover, the study also expects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i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authentic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tentative name) and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Keywords: Korean Language Teachers,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Evaluation Index, Authentication System, Institution Type

I. 연구 개요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시범 적용을 통해 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증 평가 모형 및 평가 도구를 수정·제시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II. 선행연구 검토

- 강승혜 외(2014)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기관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함. 분류 기준은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유형, 학위 부여 여부 따라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유형,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 유형으로 설정함.
- ‘2015년~2016년 한국어교원자격제도 길잡이(국립국어원, 2015)’에 따른 자격 취득 구분 및 등급별 취득 방법,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운영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및 학계에서 논의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요약·제시함.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유사한 타 평가인증 제도인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내용, 평정방법 및 기준,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 및 기준, 평가내용을 요약·제시함.

III.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을 위한 기초

- 내부 공동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도구를 수정함. 평가 영역별 검토 내용 및 수정 방향에 대해 제시함.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각 유형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수정된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함.

IV.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도구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필요성에 대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관계자의 요구와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후 평가지표별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도구를 점검·수정함.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현황 파악과 함께 본 과제의 평가 지표별 척도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함.

V.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현장 적합성 검토

- 공동연구원의 검토를 기초로 수정된 평가 도구(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 적용을 위한 평가 도구를 도출하고 기관 유형별(학부, 대학원,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로 두 곳을 선정하여 총 8개 기관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 시범 적용 평가 결과와 평가 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 평가의 절차, 시기, 평가위원의 자격, 평가단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운영 방식을 함께 논의함.

VI. 한국어교육 교원기관 인증 평가 수정안: 한국어교육 교원기관 인증 평가 편람

- 내부 연구원 및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관계자의 요구와 한국어교육 학계 전문가의 의견 조사, 외부 평가단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수정된 한국어교육 교원기관 인증 평가 도구 수정안을 제시함.

VII. 향후 과제 및 제언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지정제(가칭) 시행을 위한 평가 절차 및 방식 등의 모형을 제안함.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개선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의 효과를 기대함.

차 례

I.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의 내용	3
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3. 연구원 구성 및 추진 일정	7
3.1. 연구원 구성	7
3.2.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구성	8
3.3. 추진 일정	9
4. 기대 효과 및 결과물	10
4.1. 기대효과	10
4.2. 과제 결과물	11
II. 선행연구 검토	13
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원자격제도	13
1.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	13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15
2. 유사 평가 인증 제도	20
2.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20
2.2.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25
III.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타당성 점검을 위한 기초	31
1. 201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 검토: 내부 연구진	31
1.1. 평가 영역별 검토	32
1.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수정 방향	34
1.3.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수정(안)	35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별 검토: 외부 자문위원	37
2.1. 학부	37
2.2. 대학원	41
2.3. 비학위과정	43
2.4. 학점은행제	47
3.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행 관련 외부 자문위원 검토	50
3.1. 지표 내용 관련	50
3.2. 평가 준비 및 진행 관련	51
3.3. 평가 후 관련 및 기타 내용	53
IV.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54
1. 평가 지표별 설문조사 분석	54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54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57
1.3. ‘전임교원/강사 확보’	61
1.4. ‘3/5영역 전문성 확보’	63
2. 종합적 논의	65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영역	65
2.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영역	66
2.3. ‘전임교원/강사 확보’ 영역	67
V.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타당성 점검: 시범 적용	68
1. 평가 인증 도구의 타당성 점검 목적	68
2. 평가 절차 및 방법	69
3.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단 운영	70
3.1. 평가위원 선정	70
3.2. 평가단 운영	73
4.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74
5.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교육기관 유형별 평가위원 검토	75
5.1. 학부	75
5.2. 대학원	80
5.3. 비학위과정	84

5.4. 학점은행제	86
6.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 검토	88
6.1. 현장 평가 종합의견에 대한 평가 지표별 검토	88
6.2. 현장 평가 종합의견 및 기타 논의사항	89
7. 피평가 기관의 시범 적용 결과 개요	91
7.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91
7.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91
7.3. ‘전임교원/강사 확보’	92
7.4. ‘3/5영역 전문성 확보’	92
VI.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 수정안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편람	93
1. 교육과정 영역	95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95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108
2. 교원 · 강사 영역	122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122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131
VII. 활용 방안 및 향후 과제	146
1. 평가 모형,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146
1.1. 평가 유형에 따른 평가 절차(안)	146
1.2. 평가 방식	148
1.3. 평가 주기별 운영 모형(안) 및 평가 결과 활용	149
1.4. 현 교원자격제도와와의 연계	152
2. 평가 체제 운영의 기본 방향	154
2.1. ‘학점은행제 유형’ 현행 심사체제 유지 필요	154
2.2.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중심의 1주기 평가체제 운영	155
2.3. 평가 대상 기관의 점진적 확대	155
3. 향후 과제 및 제언	156
3.1. 지정제(가칭) 도입 시 운영 관련 고려 사항	156
3.2. 제언	158

부록1.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운영 현황 조사 설문지(예)	159
부록2. 서면 평가/현장 방문 평가 일정 및 점검 사항	167
부록3. 시범 평가용 편람(피평가 기관 설명회 및 평가위원 연수회 자료)	168
부록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매뉴얼 -평가위원용 (학부/대학원)-	218
부록5. 평가위원 평가표	234
부록6. 평가위원 종합의견서	241
부록7. 평가 절차도(예시)	242
참고문헌	243

표 목 차

[표 II-1]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	14
[표 II-2]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	14
[표 II-3]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	15
[표 II-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	15
[표 II-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국립국어원 발주)에 관한 연구	18
[표 II-6]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영역 및 부문별 평가 항목	21
[표 II-7]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항목 평정 공통 루브릭	22
[표 II-8]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영역 평정 공통 루브릭	23
[표 II-9]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판정 유형별 판정 기준	23
[표 II-10]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별 판정 기준	27
[표 II-11]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 내용의 구성 체제	29
[표 II-12] 필수평가준거 및 평가 영역·부문·준거의 구성	29
[표 III-1] 강승혜 외(2014)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31
[표 III-2] <수정 전> 교육과정 영역: 4개 평가 항목 16개 평가 지표	35
[표 III-3] <수정 후> 교육과정 영역: 2개 평가 항목 9개 평가 지표	35
[표 III-4] <수정 전> 교원·강사 영역: 2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36
[표 III-5] <수정 후> 교원·강사 영역: 2개 평가 항목 6개 평가 지표	36
[표 VII-1] 평가 방식(안)	149
[표 VII-2] 평가 결과 활용방안 (1안)	151
[표 VII-3] 평가 결과 활용방안 (2안)	152

자 료 목 차

[자료 V-1] 평가위원 신청서 서식	73
----------------------	----

도 표 목 차

[도표 I-1] 연구 절차	4
[도표 I-2] 인증 평가 도구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적용의 단계	6
[도표 II-1] 한국어교원 자격 일반 취득	16
[도표 II-2]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절차	17
[도표 II-3] ‘간호교육인증평가’ 평가 항목의 평정 단계	22
[도표 II-4] ‘간호교육인증평가’ 판정 유형별 인증기간	24
[도표 II-5]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추진 절차	26
[도표 II-6]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	27
[도표 II-7]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별 인증기간	28
[도표 IV-1] 기관 유형별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	55
[도표 IV-2] 기관 유형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 비율’	55
[도표 IV-3] 기관 유형별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56
[도표 IV-4] 기관 유형별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57
[도표 IV-5]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강의참관 참여율 및 강의실습 참여율)	58
[도표 IV-6]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59
[도표 IV-7]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60
[도표 IV-8]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60
[도표 IV-9] 기관 유형별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61
[도표 IV-10] 기관 유형별 ‘전임교원 확보율’	62
[도표 IV-11] 기관 유형별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62
[도표 IV-12] 기관 유형별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63
[도표 IV-13] 기관 유형별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64
[도표 IV-14] 기관 유형별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64
[도표 IV-15] 기관 유형별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65
[도표 V-1] 단계별 평가단 운영 사항	73
[도표 V-2] 서면 평가 절차	74
[도표 VII-1] 평가 단계 (1안)	147
[도표 VII-2] 평가 진행 절차 (2안)	148
[도표 VII-3] 5년 주기형 평가 진행 절차 (1안)	150
[도표 VII-4] 5-3-1 유형 평가 진행 절차 (2안)	151
[도표 VII-5] 단계 접수에 따른 자격증 발급 절차도	154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1.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필요

-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교원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 교원의 전문성 확보, 학습자 지원 관리 체제 등의 질적 발전을 위한 평가 체제 확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지정제(가칭) 도입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지정제(가칭)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현황 분석이 요구된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단기 양성기관의 질적 관리와 효율화를 위해서 한국어교원 양성의 타당한 교육과정 편성 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통한 지정제(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교육기관 지정제(가칭) 필요성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요구된다.

1.1.2. 기 개발된 평가 지표의 적절성 점검 및 보완 필요

- 강승혜 외(2014)는 국립국어원 연구 과제를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여건상 현장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띠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 개발된 평가 도구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서 시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의 수정·보완 절차가 필요하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방안 연구(강승혜 외, 2014)’의 평가 지표를 활용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도구의 시범 적용을 통하여 기 개발된 평가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시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가 실제 운영에 있어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1.1.3. 현행 국어기본법 상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문제점 보완 필요

- 2005년 이후 국어기본법을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신청 제도’와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안이 요구된다.
- 2005년 한국어와 관련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한국어교육의 성장과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0년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신청 제도’와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신청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희원(2014)은 자격증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평가 지정제(가칭)를 통한 학위과정의 자격증 자동 취득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 도입이 요구된다.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를 시범 적용한 후 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평가 운영 방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기 개발된 평가 도구의 시범 적용 과정에서 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평가 인증을 통한 지정제(가칭)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2.1.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타당성 점검 및 시범 적용

1)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검토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방안 연구(강승혜 외, 2014)’에서 제시된 평가 도구에 대한 내부 공동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 사항들을 정리한다.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에 대한 자문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필요성에 대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관계자의 요구 조사 및 한국어교육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 개발된 평가 도구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사항을 논의한다.

3)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시범 적용

- 공동연구원들의 검토를 기초로 수정된 평가 도구(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 적용을 위한 평가 도구를 도출한다. 시범 적용 대상은 지역과 교육기관 유형을 고려한 층화(stratified) 표집을 실시하여 대표성을 갖는 표본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지방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등 각 유형별로 두 곳을 선정하여 총 8개 기관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4) 시범 적용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 수정·보완 및 평가 운영 방식 제안

- 시범 적용 평가 결과와 시범 적용 평가위원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증 평가의 절차, 평가 시기, 평가위원의 자격, 평가단 운영 방식 등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에 대한 상세한 운영 방식을 제시한다.

2.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제안

1) 현행 국어기본법을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신청 제도’,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신청제도’의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마련

- 정희원(2014)과 강승혜(2015), 황용주(2015)는 ① 복잡하고 번거로운 자격증 신청 절차, ②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 문제, ③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질적 관리 문제, ④ 필수 이수 학점 및 과목 기준의 적절성 문제, ⑤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 절차, ⑥ 승급 심사 기준의 문제 등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범 적용 결과를 기초로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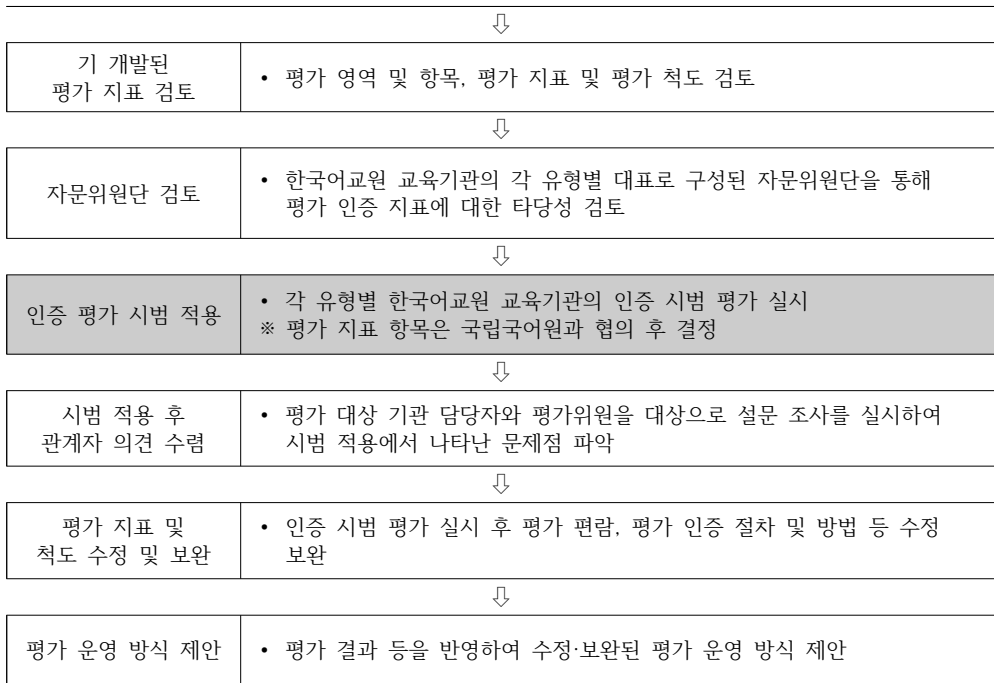
2) 장기적 관점에서 국어기본법 개정 등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관련 조항이 없어 관련 시행령에 인증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정제(가칭)를 실시하려면 국어기본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정제(가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어교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검증 과제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설정 • 연구진의 역할 분담 및 공동 협조 방안 마련
↓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검토 • 국내·외 유사 평가 인증 제도 분석
↓	
요구 조사 실시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조사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한 한국어교육계의 의견 수렴



[도표 I-1] 연구 절차

2.2.1.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연구에 필요한 개념 및 기준 정립을 위해 다각도로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통계 및 보도 자료, 정책 자료, 법령 등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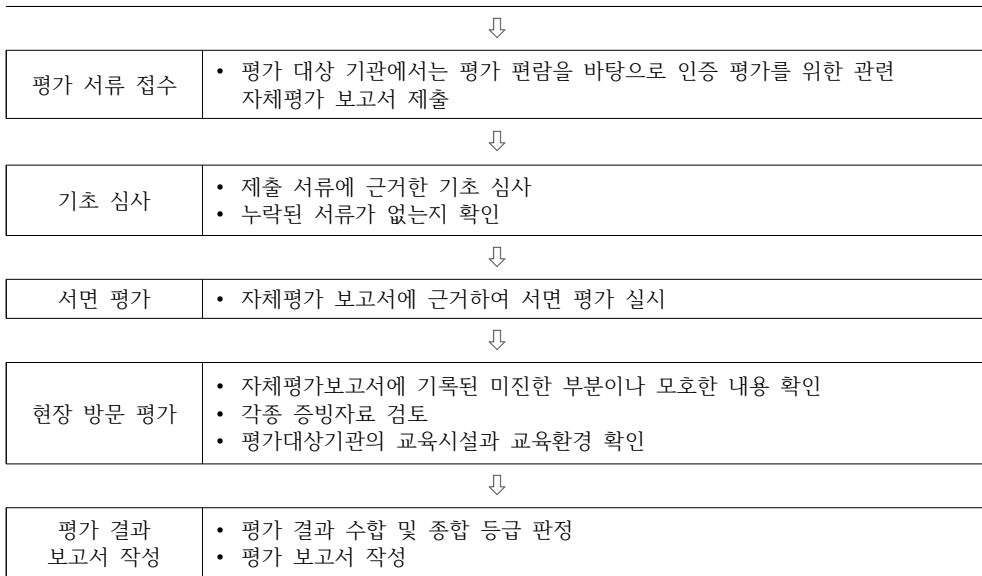
2.2.2. 설문 조사를 통한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 개발된 평가 도구의 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 항목을 작성하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도구의 타당성 점검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2.3.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 탐색을 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의 시범 적용

- 실용성과 효용성이 높은 평가 인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 개발된 한국어 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 풀(pool)을 조성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별(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등) 두 기관씩 피평가 기관 신청을 받아 시범 적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 피평가 기관 설명회 및 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시범 적용을 위한 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다.
- 피평가 기관의 서면 자료집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 서면 평가 후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서면 자료 평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도구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공동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여러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다.
- 인증 평가 도구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적용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시범 평가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지방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등 각 유형별로 두 기관 선정 ※ 시범 평가 대상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	
시범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대상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 영역 및 항목, 평가 지표 및 평가 척도에 대한 설명 • 평가 절차와 평가 준비에 대한 안내
↓	
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위촉 • 기관 당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에 대한 연수



[도표 I -2] 인증 평가 도구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적용의 단계

2.2.4. 시범 적용 후 관계자 의견 수렴

- 현장 평가위원들의 각 기관 유형별 종합 의견과 함께 인증 평가 도구의 시범 적용 시 현장의 상황 및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 도구의 지표 수정 및 척도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연구원 구성 및 추진 일정

3.1. 연구원 구성

구 분	성 명	현 소속
책임연구원	강승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은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공동연구원	방성원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조태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권진주	국립국어원

보조연구원	김은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신승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홍경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홍성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3.2.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구성

성 명	현 소속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곽지영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김서형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용경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김유미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원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지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김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나삼일	대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신경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주호	남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
오지혜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우창현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과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
이미향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이영숙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이정란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한국학부
장향실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은지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최주열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송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3. 추진 일정

연구기간 : 9개월(2017.4. ~ 2017.12.)											
연구 내용	월	4	5	6	7	8	9	10	11	12	
	- 연구 계획 수립		■								
- 착수 보고		■									
- 통계 및 정책 자료, 관련 법제도 조사		■									
- 선행 연구 분석		■									
- 설문 조사 실시 및 분석			■								
- 기 개발된 평가 지표 검토			■								
- 1차 자문위원단 검토				■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 분석				■							
- 인증 평가 시범 적용 시범 평가 대상 선정				■	■						
시범 평가 설명회 개최				■	■						
- 중간 보고				■	■						
- 인증 평가 시범 적용 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						■					
평가 서류 접수						■					
기초 심사						■					
- 인증 평가 시범 적용 서면 평가							■				
현장 방문 평가							■				
평가 보고서 작성							■				
- 평가 지표 및 척도 수정·보완								■			
- 2차 자문위원단 검토								■			
- 인증 평가 운영 방식 제안									■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	
- 최종 보고									■	■	
- 보고서 제출									■	■	

4. 기대 효과 및 결과물

4.1. 기대효과

4.1.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표준 지침 제공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모형의 시범 적용을 통해 국어 기본법 공포 이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의 홍보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시범 적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운영 표준이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4.1.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표준화에 기여

-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이수 학점 및 시간 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 외에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표준화를 도출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운영 형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양성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1.3.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교원 양성 운영의 표준화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주체에게 평가의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로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4.1.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 인증 과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합당한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통한 지정제(가칭)를 시행함에 있어 인증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한다. 각 평가 지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전략 등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4.1.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에 기여

-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바 향후 시행하게 될 지정제(가칭) 평가 모형을 통해 교과목 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한국어교원 수를 질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수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질적인 수준 제고는 불가피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정제(가칭) 시행 대비 타당한 평가 도구 제시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4.2. 과제 결과물

4.2.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모형

-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모형을 시범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지정제(가칭) 실시를 위한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4.2.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 기 개발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모형의 시범 적용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물로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을 위한 지정제(가칭)에 활용할 평가 도구를 제시한다.
- 수정·보완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및 척도 등이 포함된 평가 도구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원자격제도

1.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¹⁾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연구로 수행되었던 강승혜 외(2014)에 따라 본 과제에서 사용하게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기관 유형은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 가능하다.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유형 분류, 학위 부여 여부에 따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유형,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분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률인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목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고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 교육기관에는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등이 있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 제41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속하는 한국어교육 교육과정에는 비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양성 프로그램과 학점은행제가 있다.

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기관 유형에 대한 내용은 강승혜 외(2014: 7-9)의 내용을 정리했음을 밝힌다.

[표 II -1]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양성 프로그램 • 학점은행제

1.1.2.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따른 분류

학위과정은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취득한 자에 한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중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과 함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점은행제가 포함된다.

비학위과정은 과정을 이수하여도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을 말하며 대학교 부속(부설) 한국어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이에 속한다.

[표 II -2]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 학점은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부속(부설) 한국어교육기관 •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한국어교원양성과정

1.1.3.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에 근거한 분류

오프라인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가 면대 면으로 직접 만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선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비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학점은행제의 오프라인 과정이 속한다.

온라인 과정에는 교사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러 학습을 말한다. 이에선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의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이 포함된다.

[표 II-3]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

	오프라인 과정	온라인 과정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 대학원 포함) • 비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학점은행제의 오프라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대학, 사이버특수대학원 • 비학위과정의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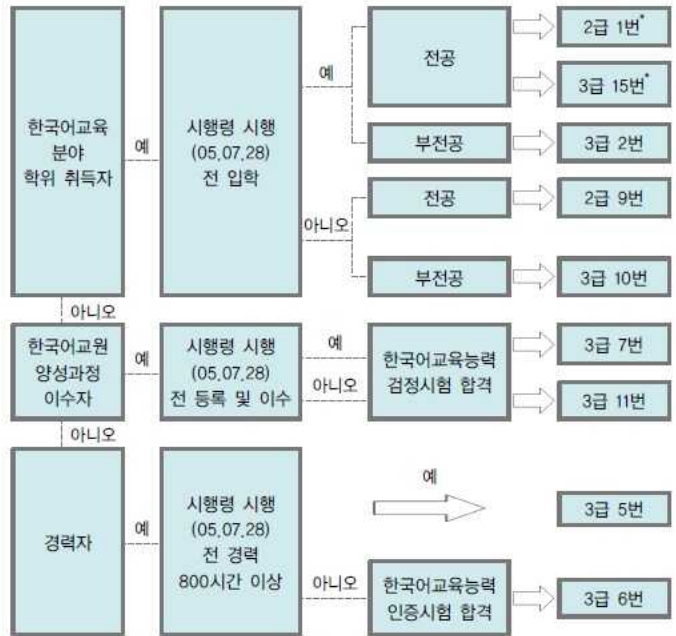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우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분류하고 학위과정을 다시 대학(혹은 학부), 대학원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기관 유형 내에서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표 II-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

고등교육법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평생교육법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가가 인증하는 최초의 법령으로 학계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기준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적·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2016년 한국어교원자격제도 길잡이(국립국어원, 2015)'에 따르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 취득 구분은 일반 취득과 승급 취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등급별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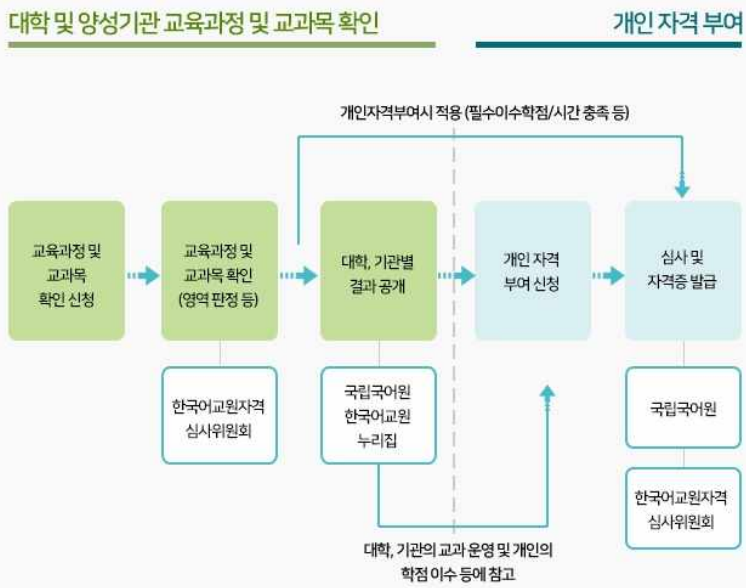


* 2급 1번, 3급 15번은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학점에 따라 신청 구분.

[도표 II - 1] 한국어교원 자격 일반 취득

<출처: 2015년~2016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15: 4>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는 먼저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확인하고 개인이 필수이수 학점 및 시간을 충족하면 개인 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목의 기준 적합 확인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개인 자격 부여의 경우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에 따른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표 II -2]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절차

<출처: 2015년~2016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15: 6>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2008년부터 국립국어원의 발주로 추진되어 왔다.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운영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현성 외(2008) 연구에 이어 윤소영 외(2011)의 연구에서 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조현성 외, 2008)과 더불어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의 교과목 지정 및 자동취득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둘째, 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뿐 아니라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와 취득자 활동 현황 등의 조사 연구(최정순 외, 2012)와 국내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기관 현황 조사 연구(이정란 외, 2017)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실습 기관 현황 조사도 이루어졌다.

셋째, 앞선 연구에 이어 지정제(가칭) 및 자동취득제 등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강승혜 외(2014)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II -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국립국어원 발주)에 관한 연구

년도	연구자	과제명	연구 내용
2008	조현성 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이주민 대상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에 대한 한국어 준교원 자격증 제도의 도입 제안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제(가칭)도 도입 제안 - 한국어교원 경력 산정 및 승급 제도 개선 등을 제안
2011	윤소영 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2)	- 학위과정에서의 교과목 지정 및 자동취득 방안 도입 제안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 방안 도입 제안 - 전문학사를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도입 및 자격 요건 마련 제안
2012	최정순 외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 조사 및 교원 지원 방안 제시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재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제시
2014	강승혜 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방안 연구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지표, 평가 준거 및 평가 척도 개발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이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시
2017	이정란 외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	- 국내외 한국어교원 기관 현황 조사 - 해외 거주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수요 조사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크게 교육과정과 교원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경우 강승혜(2011)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위 교과목 구성에 대한 필수 과목 선정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송향근(2015)은 교과목 적합 판정 시 지정 과목과 인정 과목만을 적합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현 방안보다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교과목의 적합 여부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3영역은 연구방법론 과목이 영역별 필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과목명들이 예시되어 있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박기표·김정남, 2012; 조태린, 2012). 또한 실습 과목의 경우 시수 및 학점 수가 적고, 실습 과목에 대한 운영이 통일되지 않아 각 기관마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태뿐만 아니라 원거리 학습자 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습 기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최정순, 2012; 안주호, 2015; 황용주, 2015).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의 각 교과목명이나 그 내용적 차이에 대한 재고와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 영역 추가 및 필수 이수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정숙, 2011; 최정순, 2012; 김민수, 2015). 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송향근(2011)은 타 기

관의 협조로 한국어 수업 참관, 모의 수업 등을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진정란(2014)은 면대면 수업을 일정 비율로 높이고 실습 내용에 맞는 숙달도를 보유한 외국인 학습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강승혜(2015)는 협력기관 지정 및 실습 전담 센터 개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향근(2011)은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한 최소 한 명 이상의 전임 강사와 총 다섯 명 이상의 강사가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국어국문학과를 한국어교육학과로 개편한 학부 및 대학원에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하였다. 이는 온라인 과정도 마찬가지로 교수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주호(2015)는 교수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전임교수가 확보된 한국어교육기관만을 실습 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교육과정·교과목 및 이수 학점 중심의 심사로 교과목 운영 수준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현장 평가를 통한 점검이 불가능하며 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자격증 취득자를 양산하고 있는 온라인 자격취득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기관 인증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해 인증 방안 도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조현성 외, 2008; 최용기, 2009; 윤소영 외, 2011; 강승혜 외, 2014; 김민수, 2015). 문제는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에 최용기(2009)는 대학 교육협회의와 같이 단기 양성 과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 및 별도의 인증 주체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고 개발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 및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수정·보완된 인증 평가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의 타당성 점검 및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사 평가 인증 제도²⁾

본 절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유사한 타 평가 인증 제도인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³⁾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수준에서 요구하는 간호교육의 질 보증 체제를 확보하고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2.1.1. 평가 내용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영역은 간호교육 운영과 지원을 위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내용을 구분한 것이다. 2017년 3주기를 기준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6개의 평가 영역과 14개 평가부문, 28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 평가 영역은 학과의 비전과 운영을 위한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평가 영역의 하위 구성인 평가 부문은 각 평가 영역별 평가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영역별로 2~3개의 평가부문이 구성되어 있다. 평가 항목은 평가 인증에서 평가할 주요 요소로서 평가 항목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별로 제시한 인

2) 본 절의 내용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유사한 타 자격제도 등을 간단히 요약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 내용은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의 내용을 정리했음을 밝힌다.

증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인증기준은 해당 항목에 대해 프로그램이 달성해야할 목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별로는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을 정성 및 정량적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영역, 부문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6]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영역 및 부문별 평가 항목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 항목
I. 비전 및 운영체계	1.1. 비전과 교육목표	1.1.1. 교육목적과 목표
		1.1.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
		1.1.3.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1.2. 행정과 재정	1.2.1. 운영 체계와 지원
		1.2.2. 재정 확보와 운용
	1.3. 운영 개선	1.3.1. 운영 개선 노력
II. 교육과정	2.1. 성과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
		2.1.2.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 학점
	2.2.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학업성취 평가	2.2.1. 이론 교육
		2.2.2. 실습실 교육
		2.2.3. 임상실습 교육
		2.2.4. 임상실습 지도
2.3. 교육과정 개선	2.3.1. 교육과정 개선 노력	
III. 학생	3.1. 학생 지도	3.1.1. 학생 지도 체계
		3.1.2. 학생 지도 프로그램
	3.2. 학생 지원과 안전 관리	3.2.1. 학생 지원
		3.2.2. 임상실습 안전 관리
IV. 교수	4.1. 교수 확보	4.1.1. 전임교원 확보
		4.1.2. 전임교원 수업시수와 전공교과목 담당
		4.1.3.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확보
4.2. 교수 업적과 개발	4.2.1. 교수업적과 역량 개발 지원	
V. 시설 및 설비	5.1. 교육 시설 설비	5.1.1. 교육기본시설과 편의시설 확보
	5.2. 실습 시설과 설비	5.2.1. 실습실과 실습기자재 확보
		5.2.2. 임상실습 기관 확보
VI. 교육성과	6.1. 재학생 역량	6.1.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6.1.2.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6.1.3. 간호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6.2. 졸업생 역량	6.2.1. 졸업생 역량 및 만족도 평가

2.1.2. 평정방법 및 평정기준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바람직한 교육운영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성이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 항목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평가 항목별로 평가요소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과 ‘보완’, ‘미충족’으로 구분된다.
- 평가·인증에서 평정 및 판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1단계는 ‘항목 평정’, 2단계는 ‘영역 평정’, 3단계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 여부에 따른 ‘판정’으로 구분된다.



[도표 II-3] ‘간호교육인증평가’ 평가 항목의 평정 단계

- 1단계에서는 항목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평정한다. 항목 평정 기준으로 ‘항목 평정 공통 루브릭’([표 II-7] 참조)을 활용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영역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평정한다. 영역 평정에는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항목별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영역의 양호도를 고려한다. 영역 평정 기준으로 ‘영역 평정 공통 루브릭’([표 II-8] 참조)을 활용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때는 항목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와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 전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영역에 대한 평정은 해당 영역을 담당하는 평가위원의 합의와 평가단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평가단 내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목 평정을 위한 기준으로 항목 공통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표 II -7]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항목 평정 공통 루브릭

평정척도	평정기준
충족	항목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과 같이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경우 ▶ 학교 내에서 서로 공유할 만한 구체적인 좋은 관련 증거가 다수 발견됨 ▶ 관련 활동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냄
보완	항목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의 요소들을 대체로 충족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하며 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 ▶ 제한적(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좋은 관련 증거 있음 ▶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활동과의 연계 미흡
미충족	항목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의 요소들을 충족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적절히 확인할 수 없어 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관련 증거가 일부 있기는 하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

영역 평정을 위한 기준으로 영역 공통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표 II -8]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영역 평정 공통 루브릭

평정척도	평정기준
충족	영역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영역 내 각 항목의 인증기준 역시 대체로 충족하여 영역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경우를 말한다. ▶ 인증기준을 충족하며 서로 공유할 만한 구체적인 좋은 증거들이 다수 있음 ▶ 관련 활동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냄 ▶ 핵심적인 평가 내용 포함 70% 이상의 항목이 충족하며 미충족 항목 없음
보완	영역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하며 해당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중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 ▶ 제한적 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좋은 관련 증거 있음 ▶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나, 다른 활동과의 연계 다소 미흡함 ▶ 미충족 항목 없으며, 핵심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50% 이상의 항목을 충족함 ▶ 영역 내 미충족 항목이 1항목 있고, 보완 항목이 30% 이하
미충족	영역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적절히 확인할 수 없어 해당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주요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관련 증거가 있기는 하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함 ▶ 영역 내 항목의 충족률이 50% 미만이거나 미충족 항목이 2항목 이상 ▶ 영역 내 미충족 항목이 1항목 있으며, 보완 항목이 30% 초과

[표 II -9]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판정 유형별 판정 기준

판정 유형	판정 기준	인증기간
인증(5년)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5년 (졸업생 배출 전: 1년)
인증(3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3년 (졸업생 배출 전: 1년)
한시적 인증 (1년)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연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음)	1년
인증불가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

*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증기간 만료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 연도 보완평가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또는 3년'의 잔여기간으로 함(「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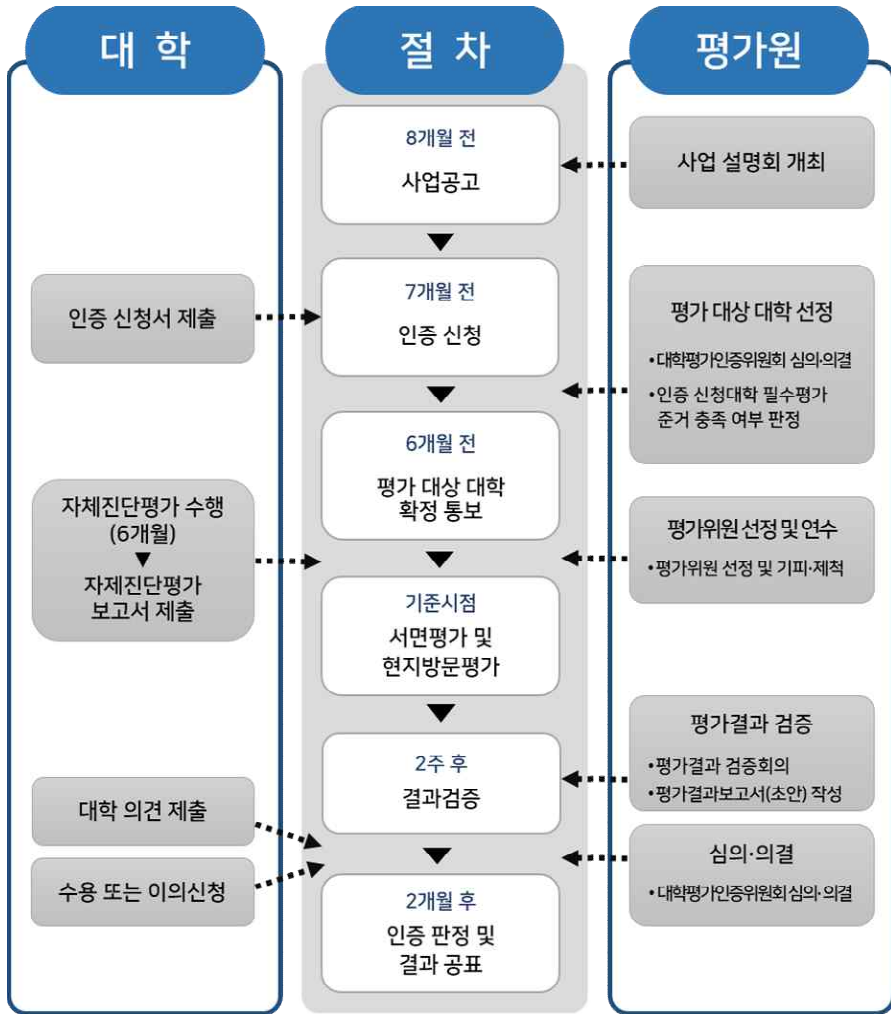


[도표 II -4]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판정 유형별 인증기간

2.2.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⁴⁾

- ‘대학기관평가인증(University accreditation)’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은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다음 [도표 II-5]의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4)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내용은 ‘2017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ER 2017-1-29 93)’의 내용을 정리했음을 밝힌다.



[도표 II -5]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절차

2.2.1. 판정 유형 및 판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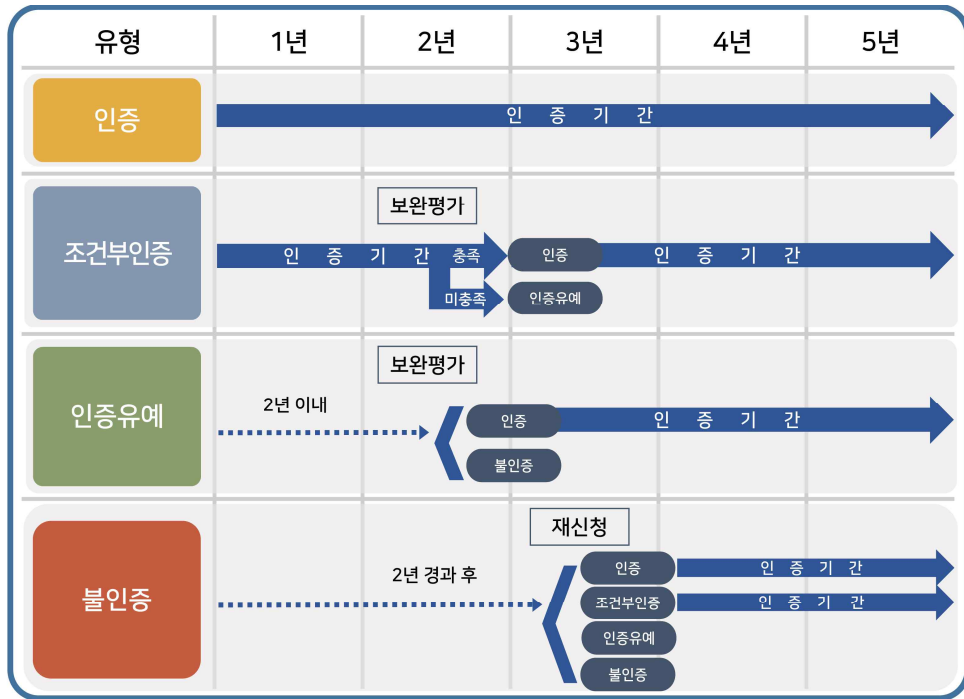
- 대학평가 인증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인증여부를 판정한다. 기관평가 인증 판정 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판정 유형은 [도표 II -6]과 같으며, 판정 유형에 따른 판정 기준은 [표 II -10]과 같다.



[도표 II -6]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

[표 II -10]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별 판정 기준

유형	판정 기준
인증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에서 인증기준을 만족함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5개 평가 영역 모두 충족(P)
조건부인증	기본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고 있고,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영역 중 한 영역이 미흡하나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함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4개 평가 영역 충족(P) 및 1개 평가 영역 미흡(W)
인증유예	기본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개선 노력이 요구되어 인증 판정을 유보함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4개 평가 영역 충족(P) 및 1개 평가 영역 미충족(F)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3개 평가 영역 충족(P) 및 2개 평가 영역 미흡(W)
불인증	기본교육여건 미흡하고,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시급하여 교육의 질보증 어려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의 어떤 판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함



[도표 II -7]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별 인증기간

2.2.2. 평가 내용

- 평가의 내용은 '평가 영역 및 평가부문(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과 '평가준거(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 기관평가 인증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과 교육목적, 교육프로그램, 인적·물적 인프라, 행·재정지원 등 대학운영의 주요 영역을 우선 고려하고, 주요 영역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의 비중을 고려하였다. 즉, 대학운영의 주요 영역을 인증의 '평가 영역'으로, 주요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평가부문'으로 분류하여 기관평가 인증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 영역과 평가부문의 2단계로 설정하였다. 평가 영역과 평가부문의 인증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평가부문별로 평가준거를 제시하였다. 이때의 평가준거는 필수평가준거(대학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교육기본여건 6개)와 일반평가준거(평가 영역 및 부문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각 평가부문별 3개의 구체적인 점검사항)로 구성하였다.

- 인증기준은 최상위 단계인 평가 영역별로 제시한 한편, 평가 영역 하위 구성 요소로 평가부문을 설정하여 평가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인증기준의 달성 여부는 평가준거의 충족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표 II-11]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의 구성 체제

구분	필수평가준거 구성	비고
필수평가준거	▶ 교육여건, 교육만족도, 재정건전성, 학생지원에서 대학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요구수준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개 준거

구분	평가 내용 구성 체계	비고
평가 영역 (1단위)	▶ 대학운영 및 교육 활동 구성 요소에 대한 대분류	5개 영역
평가부문 (2단위)	▶ 대학운영 및 교육 활동 구성 요소에 대한 중분류 ▶ 평가 영역 하위 구성 요소	10개 부문
일반평가준거 (3단위)	▶ 평가부문별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분류 ▶ 평가부문 하위 구성 요소	30개 준거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 내용은 6개의 필수평가준거와 5개 평가 영역, 10개의 평가부문, 30개의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필수평가준거와 평가 영역 및 평가부문별 평가준거는 [표 II-12]와 같다.

[표 II-12] 필수평가준거 및 평가 영역·부문·준거의 구성

필수평가 지표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학생 지원	장학금 비율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일반평가 지표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3. 대학 자체평가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 확보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감사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2.2. 교수·학습	2.2.1. 수업
		2.2.2. 성적관리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3. 교직원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3.2.3. 직원 전문성 개발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1. 교육시설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4.1.2. 학생 복지시설
		4.1.3. 도서관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대학성과	5.1.1. 연구성과
		5.1.2. 교육성과
		5.1.3. 교육만족도
	5.2.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5.2.2. 사회봉사 실적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III.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타당성 점검을 위한 기초

1. 201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 검토: 내부 연구진

강승혜 외(2014)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의 구성은 다음 [표 III-1] 과 같다. 4개의 평가 영역, 10개의 평가 항목, 32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강승혜 외(2014)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 교육시설 및 설비 (5)	1.1. 전용 강의실 및 시설 확보 여부 (4)	1.1.1. 전용 강의실 및 시설 확보 여부(오프라인 과정)(4)
		1.1.2. 전용 스튜디오 확보 여부(온라인 과정)(4)
	1.2.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 (1)	1.2.1. 행정 지원실 확보 여부(1)
2. 교육과정 (50)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5)	2.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5)
		2.1.2.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시간) 개설 여부(5)
		2.1.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12)
		2.1.4. 수료 기준 관리의 엄정성(3)
	2.2. 수업 운영의 충실성 (10)	2.2.1.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4)
		2.2.2. 강의계획서 제공 여부(3)
		2.2.3. 강의평가 실시율(3)
		2.2.4.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적절성 (온라인 과정)(+3)
		2.2.5. 교수설계자 인력 확보율 (온라인 과정)(+3)
	2.3. 강의참관 운영의 충실성 (8)	2.3.1. 강의참관 현장 확보 여부 및 적합성(2)
		2.3.2. 강의참관 시수 및 참관율(2)
		2.3.3. 강의참관 지도(2)
		2.3.4. 강의참관보고서 작성 여부(2)
	2.4. 강의실습 운영의 충실성 (7)	2.4.1. 강의실습 현장 확보 여부 및 적합성(2)
		2.4.2. 강의실습 시수 및 참여율(3)
		2.4.3. 강의 교안작성 지도(2)
3. 교원·강사 (35)	3.1. 전임교원/강사 확보 (15)	3.1.1. 전임교원 확보율(10)
		3.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15)
		3.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 시수 비율(2)
		3.1.4. 한국어교육기관 또는 전공 관련기관 근무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비율(학위과정)(3)
	3.2. 영역별 전문성 확보 20)	3.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10)
		3.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10)
		3.2.3. 강의참관 대상 교수자 및 강의실습 담당 교수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한국어교육 경력(10)
4. 학습자 지원 관리 체제 (10)	4.1. 학습자 지원 (4)	4.1.1. 진로 정보 지원 여부(2)
		4.1.2. 학습자 상담 지원율(2)
		4.1.3. 수업 조교 확보율(온라인과정)(+4)
	4.2. 행정 지원 (6)	4.2.1.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담당율(2)
		4.2.2. 행정 서비스 제공 여부(2)
		4.2.3. 전용 홈페이지 지원 및 관리 여부(2)

* ()의 숫자는 점수를 나타낸다.

1.1. 평가 영역별 검토

1.1.1. 1영역: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육시설 및 설비’ 영역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예비 한국어교원들의 수업 능력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음.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예비 한국어교원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및 설비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이를 위해 오프라인 과정의 경우, 전용 강의실 및 컴퓨터, 빔 프로젝터, 전자교탁과 같은 수업 기자재, 냉난방 시설 확보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는 첫째, 오프라인 과정의 경우, 수업이 이루어지는 전용 강의실과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 기자재가 설비되어 있는가 둘째, 온라인 과정의 경우, 전용 스튜디오가 확보되어 있는가로 구성하였음.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학과(전공),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실을 확보하여야 함. 이를 위해 평가 대상 기관이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 의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교육시설 및 설비’ 영역의 경우는 향후 지정제(가칭) 시행 이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1.1.2. 2영역: 교육과정

-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필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2.1.2.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시간) 개설 여부’는 지정제(가칭) 시행 첫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이므로 1단계 심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함.
- ‘2.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2.1.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2.1.4. 수료 기준 관리의 엄정성’ 등의 평가 지표는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의 평가 지표로 유지하기로 함.

1.1.3. 3영역: 교원·강사

- 두 개의 평가 항목, ‘전임교원/강사 확보’와 ‘3/5영역 전문성 확보’로 구성함.
- ‘3.1.4. 한국어교육기관 또는 전공 관련 기관 근무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비율 (학위과정)’ 지표는 전임교원의 정의와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고 본 연구의 시범 적용을 위한 평가 도구의 수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3.2. 영역별 전문성 확보’ 평가 항목은 ‘3.2.3. 강의참관 대상 교수자 및 강의실습 담당 교수자의 한국어교육 경력’ 평가 지표를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지표로 지표명을 수정하고 교수자의 전문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1.1.4. 4영역: 학습자 지원관리 체제

- ‘학습자 지원 관리 체제’ 영역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학습자들에게 진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음.
- 온라인 과정의 경우, 수업 조교를 확보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첫째, 학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학점은행제와 온라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의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학습자 지원 관리 체제’ 영역은 향후 지정제(가칭) 시행 이후 해당되는 유형에만 적용하여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1.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수정 방향

1.2.1.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의 단순화

- 핵심 평가 영역에 집중
 - 시범 적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핵심 평가 지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검토하고 최소한의 지표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과정’ 영역 및 ‘교원·강사’ 영역의 두 가지 핵심 영역으로 평가 영역을 구성하기로 함.
- 평가 영역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단순화
 - ‘교육과정’ 영역의 경우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과 ‘2.2. 수업 운영의 충실성’ 평가 항목을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으로 구성함.
 - ‘2.3. 강의참관 운영의 충실성’과 ‘2.4. 강의실습 운영의 충실성’ 평가 항목을 통합하여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으로 통합함.

1.2.2. ‘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중점 평가

- 국립국어원에서 공포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른 실습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교육실습’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을 포함하는 ‘현장 경험’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향하고자 함.

1.3.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 수정(안)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영역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1.3.1. 교육과정 영역

[표 III-2] <수정 전> 교육과정 영역: 4개 평가 항목 16개 평가 지표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점검 내용
1.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유지
		2.1.2.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시간) 개설 여부	(필수 점검 항목으로 1단계 심사)
		2.1.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유지
		2.1.4. 수료 기준 관리의 엄정성	유지
	2.2. 수업 운영의 충실성	2.2.1.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유지
		2.2.2. 강의계획서 제공 여부	삭제
		2.2.3. 강의평가 실시율	삭제
		2.2.4.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적절성 (온라인 과정)	삭제
		2.2.5. 교수설계자 인력 확보율 (온라인 과정)	삭제
	2.3. 강의참관 운영의 충실성	2.3.1. 강의참관 현장 확보 여부 및 적합성	통합 후 재구성
		2.3.2. 강의참관 시수 및 참관율	
		2.3.3. 강의참관 지도	
		2.3.4. 강의참관보고서 작성 여부	
	2.4. 강의실습 운영의 충실성	2.4.1. 강의실습 현장 확보 여부 및 적합성	
2.4.2. 강의실습 시수 및 참여율			
2.4.3. 강의 교안작성 지도			

[표 III-3] <수정 후> 교육과정 영역: 2개 평가 항목 9개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1.3.2. 교원·강사 영역

[표 III-4] <수정 전> 교원·강사 영역: 2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점검 내용
3. 교원 · 강사	3.1 전임교원/ 강사 확보	3.1.1. 전임교원 확보율	유지
		3.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유지
		3.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유지
		3.1.4. 한국어교육기관 또는 전공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비율 (학위과정)	삭제
	3.2 영역별 전문성 확보	3.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유지
		3.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유지
		3.2.3. 강의참관 대상 교수자 및 강의실습 담당 교수자의 한국어교육 경력	삭제

[표 III-5] <수정 후> 교원·강사 영역: 2개 평가 항목 6개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2. 교원 · 강사	2.1. 전임교원/ 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확보율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별 검토: 외부 자문위원

2.1. 학부

2.1.1. 평가 지표별 검토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필수이수 기준 미충족자의 정의에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부 과정에서 과목별로 일정 비율의 수강생에게 환산 점수 60~69%에 해당하는 D학점을 주는 것을 의무화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환산 점수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연구진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의 충족 여부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는 것도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필수 소양이라고 보고 해당 기준을 유지하고 시범적용 단계에서 현황 파악과 함께 실시하기로 함.
- 필수이수 기준 미충족자율의 모수가 되는 한국어교원 취득자 수를 해당 학과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현행 자격제도상에서는 자격증을 졸업 후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후에 취득하므로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를 취득 예정자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그러나 연구진은 국립국어원에서 학과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득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자율의 모수를 취득자 수로 유지하고 시범적용을 실시하기로 함.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교수자의 학위 기준을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고 5영역 담당 교수자에 한해 박사수로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지나친 기준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수료자를 교수자로 섭외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임.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필수로 하지 않고 척도를 통해 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실습 협력 체결 기관과의 협력 체결 일자를 명시하고 해당 시기가 실습 이전 시기인지를 확인한다는 '평가의 주안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강의실습'을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지도가 없는 자원 봉사나 인턴제는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해외 실습이나 해외 인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강의실습 시수의 경우 실제 강의를 50분 1회 수업인데 50분 수업을 집약한 15~30분의 1회 수업을 1시수로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해외를 비롯한 많은 실습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 차시 수업이 50분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50분 1회 등을 명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됨.
- 현장 경험 참여율을 구성하는 '강의참관 참여율'과 '강의실습 참여율'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강의참관 또는 강의실습 어느 하나만으로 현장경험 참여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강의참관과 강의실습 두 가지를 모두 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됨.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비치 자료로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차시별 지도 자료와 피드백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피드백 자료를 지도 자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비치 자료에서 전임교원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그러나 자문회의에서는 각 학교기관마다 전임교원의 자격 기준이 달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함.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의 기준 중 하나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에서 전공과목을 최근 2년 사이에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자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이 많기 때문임. 그러나 자문회의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그러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연구진도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여 시범적용 단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함.

- 전공과목 강사의 또 다른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으로 수정하여 시간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됨.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평가의 주안점에서는 많은 수의 전공과목을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1인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전공과목 수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나 많은 대학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1명의 전임교원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전공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그러나 연구진은 전공과목을 담당할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면 전임교원을 충원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원안을 유지하면서 시범적용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 2.2. 평가 항목의 명칭이 ‘영역별 전문성 확보’였으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지 않고 3영역과 5영역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됨.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2.2. 영역의 명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인정 기준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논문 및 저술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최근 5년간 100%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자문회의에서는 원래의 조건이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연구진도 원안을 유지하면서 시범적용을 실시하기로 함.

2.1.2. 자문의견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교수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교수자의 기본 조건으로 하되, 3영역 담당 교수자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지닌 박사수료자로, 5영역 담당 교수자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지닌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학위 조건을 완화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협력 체결 시기가 실습 이전 시기여야 체계적인 실습과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함.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해외 실습이나 해외 인턴제의 경우에도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강의실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의실습’에 대한 정의 조항에 명시함.
 - 강의실습 시수에서 1시수의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기관별로 정한 1시수를 그대로 인정함.
 - 자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평가의 주안점에 ‘강의참관과 강의실습 모두 시행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시함.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비치 자료로 피드백 자료를 지도 자료에 포함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비치 자료에서 전임교원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의 확인 필요성에 동의하되 증빙서류의 구체적 예시를 하지 않고 무엇이든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함.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의 또 다른 기준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한 조건을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으로 수정하여 시간을 명시함.

-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 2.2. 영역의 명칭을 기존 ‘영역별 전문성 확보’에서 ‘3/5영역 전문성 확보’로 수정함.

2.2. 대학원

2.2.1. 평가 지표별 검토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주로 교수자의 전공 일치 기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됨.
 - (3)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 분야와 동일한 경우’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읽기 과목을 가르치려면 읽기 전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에서도 교수자 전공 일치를 세부 전공 수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유지함.
 - (3)-③ 해외 논문 산정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3)-⑤ ‘5영역 담당 교수자는 박사수로 이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의 경우 전공일치로 판단한다.’와 2017년 개정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의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음.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5) ‘실습’ 현장의 범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에서 ‘등’이 2회 반복되어 있음.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실습 대상 학생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 있는 교원인 경우에 실습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러나 현직 교원이라고 해도 현장실습 지도자가 없으므로 국립국어원에서 실습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별도 조항이 추가 가능한 사항임. 이는 개정된 실습 운영 지침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시범 평가 단계의 평가 편람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작성 요령 (1)에서 대학원의 산출 공식이 '당해 연도 포함 2개 학년도 입학 정원'으로 교육대학원의 경우, 4학기 편성교는 일반대학원과 동일하게, 5학기 편성교는 '(당해 연도 포함 2개 학년도 입학정원)+(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의 1/2)', 6학기 편성교는 '당해 연도 포함 3개 학년도 입학정원'으로 다소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음. 그런데 학부와 달리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전공별 편제정원이 아닌 대학원 전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제정원은 그 해의 입학 정원이나 해마다 정원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 용어의 정의 (2)-①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 학과(전공)에서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최근 2년 사이에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하거나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 박사수료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의 기술이 '모두 포함'으로 인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전공과목 강사'와 '전공과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별함.
 - (2)-①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 학과(전공)에서 전공과목을 최근 2년 사이에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하거나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 박사수료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 (3) '전공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에서 실습 교과목은 실습 교과목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적합성에 대해 별도의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개정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서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2.3.에서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하기 때문임.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평가의 주안점 (2)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전공과목 수의 기준 제한과 관련하여, 기관 유형별로 한 과목씩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범평가를 통해 현황을 살펴본 후에 재검토하기로 함.

2.2.2. 자문의견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용어의 정의 (3)-㉓에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해외 논문 산정식을 추가함.
 - 용어의 정의 (3)-㉕ ‘5영역 담당 교수자는 박사수료 이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의 경우 전공일치로 판단한다.’는 개정된 운영 지침에 따라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일치 판단 기준을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로 수정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5)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에서 ‘등’을 삭제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작성 요령 (1)에서 대학원의 산출 방식을 ‘해당 학기 혹은 해당 연도에 입학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함. 이는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로 수정됨.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에서 ‘5영역 제외’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함.

2.3. 비학위과정

2.3.1. 평가 지표별 검토

-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용어의 정의에서 ‘강의계획안’을 대신하는 ‘안내책자’에 모든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용어의 정의 (3)에서 ‘미충족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 용어의 정의 (5)에 제시된 ‘통과점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비치 자료 (2)에서 ‘기준표’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3)의 ‘인턴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용어의 정의 (5)의 ‘실습 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법령의 내용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예시로 제시된 기관들의 표기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평가의 주안점 ‘(1)현장 경험 시간이 8시간 이상’이 잘못된 기술임을 지적함.

-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작성 양식의 <부록표 1-2-4>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 현황’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사후지도의 지도자가 사전지도의 지도자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부록표 1-2-4>에는 한 명의 담당 교수자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지적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용어의 정의 (4) ‘전일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용어의 정의 (5) 비학위과정 전임교원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작성 요령 (5) 내용은 비학위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
 - 비치 자료 (3) ‘전공과목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작성 양식의 <부록표 2-1-3>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수 및 강의시수’에 비학위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작성 양식의 <부록표 2-2-1> ‘최근 3년간 직접 강의한 3영역 과목 수’에서 과목의 수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3.2. 자문 의견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용어의 정의 (3)의 내용을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교과목별 강의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안, 교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수정함.
 - 비치 자료 부분에서 비학위과정의 경우 '안내책자'라는 용어 대신 교과목별 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강의안, 교재 등 강의 내용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로 수정함.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용어의 정의 (3)에서 '미충족자'는 필수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므로 현재의 지표는 그대로 하되 여기에 출결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함.
 - 용어의 정의 (5)의 '통과점수'라는 용어를 '최저 커트라인의 의미'로 변경함.
 - 작성 요령 (2)에서 '취득자 수'는 비학위과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료자 수(영역별 필수 이수 기준 충족)'임을 밝히도록 수정하고 (4)의 '미통과자 명단'이라는 용어도 '미충족자'로 수정함.
 - 비치 자료 (2)에서 '기준표'라는 용어를 채점 기준표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석 기준, 종합 시험 합격 불합격 기준' 등과 같이 의미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수정함.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용어의 정의 (3)에서 '교과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교과서'에 교사 양성과정 교재는 포함되지 않지만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교과서로 포함이 되며 단 시리즈로 출간된 교과서일 경우에 권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3)의 '인턴제'를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없는 자원봉사나 인턴제는 강의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함.
 - 용어의 정의 (5)의 '실습 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습' 현장의 범위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로 수정함.
 - 용어의 정의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

관'의 예시로 제시된 기관들의 표기는 그대로 하되 층위를 고려한 차별적 방식으로 수정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함.

- 비치 자료 (1)의 '타 기관과 협력 시 실습 협력 기관 체결 양해 각서' 부분에서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실습계획표 등의 자료도 함께 비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평가의 주안점 부분에서 '(1) 현장 경험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된 부분을 '실습 교과목 전체 시간의 5분의 1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으며, '(2) 강의실습 유형별 비율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은 삭제함.

○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작성 양식의 <부록표 1-2-4>에서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 현황'을 '현장 실습 지도자 현황'으로 수정함.
- <부록표 1-2-4>에 사후지도 담당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수정함.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1)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이란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에서의 모의수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모의수업이란 실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수업하는 것'이라고 상술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용어의 정의 (4) '전일제'의 의미를 '전일제(full-time)'로 수정함.
- 용어의 정의 (5) 비학위과정 전임교원의 요건을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서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 또는 해당 대학 총장 발령의 전일제(full-time) 근무자'로 수정함.
- 작성 요령 (5)의 내용은 비학위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명시함.
- 비치 자료 (3)의 '전공과목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학위과정에서 전공과목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수정함.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작성 양식에서 <부록표 2-1-3>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수 및 강의시수’에 비학위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교사 연수소 등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별도 구성함. 이에 따라 작성 요령 (5) <부록표 2-1-3>의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및 강의시수 작성 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과(전공)’은 해당 기관을 기입하며 ‘전공과목 수’, ‘전공과목 강의시수’는 그 기관에서 강의한 과목과 강의시수를 기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작성 양식의 <부록표 2-2-1>에서 ‘최근 3년간 직접 강의한 3영역 과목 수’를 과목 수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단’에 과목명 기입란을 추가함.

2.4. 학점은행제

2.4.1. 학점은행제 전반적인 특징

1) 운영 방식의 측면

- 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우 과목 단위 운영
 - 학점은행제 기관은 전공과목 한 과목만 운영해도 인정이 되므로 실습 과목을 인정받지 못해도 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함.
 - 정원조정은 규제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문체부에 요청해야 가능함.
 - 과정 이수형이 아닌 시험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관리함.

- 학점은행제 기관 학점 취득 인정 후 국어원 인증 절차 필수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별도의 기관에서 학점 이수를 하여 문제가 없다면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인증해 주게 되는데 이를 국어원에서 인증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국가평생진흥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문체부 고시 등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함.

- 최종 자격 검증 장치 마련 필요
 - 학점은행제 220과목에 일괄 적용해야 하므로 졸업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 실습시간 확대 문제는 실습 기관 협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며 문체부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정원조정, 운영제한 등은 불가능함.

○ 실습참관 및 모의수업 등의 관리 실태

- 실습일지(시간 및 내용 등)를 통해 허위 실습을 시행하는 경우를 적발하되 현장방문으로 적발 가능함.
- 실습 주차별로 실습 기관장 및 지도자와 함께 찍은 사진 및 명함 첨부 등으로 관리 가능함.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며 그 외 자료는 학기단위로 보고하도록 함.

2) 평가 지표별 검토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성적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며 기관 신청 시 성적평가 기준 자료를 제출함. 따라서 70%이상 취득한 자의 비율을 같이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미충족자'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자격증을 부여한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0으로 나와야 하는 지표이며 자동취득이 가능한 기관이 있어야 가능한 지표이므로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평가가 불가함.
- <부록표 1-1-3>에서 학위취득자 중 졸업은 가능하지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격증을 못 받는 명단(인원) 및 성적을 기재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경우 학기는 있으나 시기가 달라 1년 5학기도 가능함. 1년에 두 개 학기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운영할 수 있는 총 정원만 제한함.
- 학점은행제의 경우 졸업시기 때문에 종강일 기준으로 하므로 '종강일 2월, 8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개설한 과목을 모두 작성한다.'로 변경이 필요함. 학기는 2016-1, 2016-2, 2016-3 등으로 기술하도록 함.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경우 전임에 대한 정의에서 '전임교원은 다른 기관에 소속되거나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것이 더 명료함.
- 전임교원 확보 기준에서 학점은행제는 편제정원의 개념이 없으므로 교과목

별 평가인정 총 정원의 합계로 표현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대학처럼 판단 내리기가 어려움이 있음. 즉, 전임교원은 전공별 1명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타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을 인정하므로 이를 작성 요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전체 학점은행제 기관의 강의시수를 4과목(18시간)으로 제한함.

○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강사 확보율이 비율 평균이므로 강사 수의 합계를 내서 합계 평균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총평

○ 학점은행제 심사 시기는 신청서 접수(5~6월) → 서면 평가(7~8월) → 현장 평가(9~10월)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차 되는 해에 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1년차에는 새로운 과목 심사 및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진행함.

○ 온라인 수업은 새로 제작하였는지, 얼마나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 등을 평가하며 온라인 콘텐츠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함.

○ 평가위원 섭외는 평가위원 풀(pool)이 있으며 신규 전공은 추천 등을 통해 평가위원 풀(pool)을 확보함.

○ 과목 수 확대는 합의가 되면 변경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 다른 연구가 필요함. 학점은행제의 경우 비용 및 시기가 늘어가는 문제로 인해 일정 인원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됨.

2.4.2. 자문의견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 인증 평가의 목표인 자격자의 질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어원에 있으며 국가평생진흥원에서는 교육과정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보통 국립국어원 관련 교수, 정부 부처 등에서 만들어서 제출함.

- 학점은행제에 압력이 될 만한 평가 항목은 실습 과목 운영 관련 항목으로 실습 시간을 늘리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면 자극을 촉구할 수 있음. 실습 기관 운영 유형을 규제하는 것은 실습 기관의 문제이며 학점은행제의 문제가 아니므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임. 또한 인증 받은 학점은행제 기관이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학점은행제 기관의 협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임.
-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평가 도구로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단, 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증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차후 다른 형태의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행 관련 외부 자문위원 검토

3.1. 지표 내용 관련

- 기관 유형별 동일 지표 적용
 - 학점은행제는 기존의 평가 도구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적용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자 함. 추후에 이를 보완하고 제안할 예정임.
-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지표
 -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지표는 이미 국어원에서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학위과정의 지표 충족 어려움
 - 학위과정의 경우 외부강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2.1.1. 전임교원 확보율’,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과 같은 지표를 실제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 취업 연계 지표
 - 현실적인 지표이나 실제 평가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요원한 일임.

- 교사의 인·적성 및 업무 능력에 관한 평가의 필요성
 -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핵심 지표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교사의 인·적성 검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지표별 배점 설정 필요성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의 목적 및 목표를 고려하여 각 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의 내용적 측면 검토
 - 교육과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함.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의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 설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음.
 - 본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강의계획서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관 규모 편차 고려의 필요성
 - 정량 지표가 많아지면 큰 기관이 작은 기관에 비해 유리해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규모 편차를 고려한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3.2. 평가 준비 및 진행 관련

- 평가의 목적 및 목표 검토
 -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평가의 1주기 평가는 실질적인 평가이기 보다 현황 파악에 가까웠음. 130여개의 지표를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음.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목적과 달리 전문성 향상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가 방식과 결과의 활용 등도 달라질 것임.
- 평가 지표의 사전 공개
 - 시범평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속적인 수준 관리 목적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평가 지표 공개 시기는 평가하고자 하는 실적 기간에 비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음. 예컨대 2년 실적을 보고 싶다면 평가하기 최소 2년 전에, 3년 실적을 보고 싶다면 최소 3년 전에 평가 지표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 척도 공개
 -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척도를 제시하는 것이 좋음. 그런데 척도를 공개할 경우 기관들이 정보를 조작하는 위험이 있음. 또한 척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교육부의 경우 후속 제재조치를 목표로 하므로 척도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음.

- 평가 주기
 -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려고 함. 만약 평가를 2~3년에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큰 기관이나 대표적인 기관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음.

- 피평가 기관의 자료 축적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시범평가 기간이 끝나고 실제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 DB(Database system) 구축이 필요함. 이는 예산과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임.

- 평가 진행 과정
 - 피평가 기관 확정 → 검증 → 최종 피평가 기관 통보 → DB구축 → 평가위원 모집 → 평가단 구성 → 평가단 연수(1박 2일) → 다음 주기 연구 및 편람 계획 → 현장 실사 → 검증(대학 확인서, 상호간 내용 검토) → 1차 내용 검토 → 교육부 검토 → 가결과 대학 통보 → 이의 제기 → 내부적 검토 → 각계 전문가 검토 → 대학기관 최종통보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인의 평가 후 최저, 최고점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평균으로 평가
 - 정량평가: 1인 1평가

- 시범평가 기관 구성
 - 시범평가 시, 피평가 기관을 규모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는 규모가 큰 교육기관은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기관은 지표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임.

- 피평가 기관에 모범 사례 제시
 - 피평가 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기관을 제시해주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이며 실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표별 모범 사례들의 제시도 바람직함.

3.3. 평가 후 관련 및 기타 내용

○ 평가 후 조치

- 평가 후 조치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필요함.
- 1안은 A, B, C, D등급을 매기고 대중에게 결과를 공개하는 것임. 이는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아니지만 입학하려는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
- 2안은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방법으로 절대평가로 진행됨. 다만, 불합격 받은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평가의 의미가 유명 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음.
-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평가의 경우 1, 2주기 평가(1998~2009년)는 시범운영으로 진행되었으며 3주기 평가부터 C등급 이하 기관에 대해 후속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후속 제재조치를 취하는 첫 해에는 C등급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1년 후 재평가 제도를 마련했음.

○ 기존 인증기관의 합불 처리 방식

- 인증과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의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목적이 있음.

○ 충분한 시범 기간의 필요

- 시범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시범 기간을 통해 피평가 기관의 반발을 약화시켜야 함. 평가 1주기부터 지나친 목표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IV.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⁵⁾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에 대한 내부 연구진 검토와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승혜 외(2014)의 평가 도구를 수정하였다. 이후 도구의 타당성 검증에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유형별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⁶⁾ 이 설문조사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현황 파악과 평가 도구의 실제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더불어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평가 지표별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에 응해준 기관은 모두 13개 기관이며 교육기관 유형별로는 학부 유형 4개 기관, 대학원 유형 5개 기관(일반 대학원 2개 기관, 특수 대학원 3개 기관), 비학위과정 유형 3개 기관, 학점은행제 유형 1개 기관이었다. 학부와 대학원 유형은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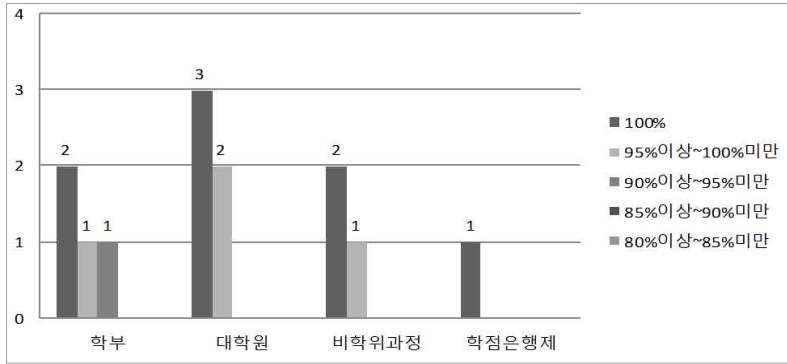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은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강의 계획서 내용 적합성',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의 네 개 하위 지표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1)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실제 개설한 교과목 중 적합 교과목으로 판정된 과목의 비율을 질문하였다. 학부 유형은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100%라고 응답하였고 '95%이상~100%미만', '90%이상~95%미만'으로 응답한 기관은 각각 1개였다. 대학원 유형은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100%라고 응답하였고 2개 기관이 '95%이상~100%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비학위과정 유형의 경우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100%, 나머지 1개 기관은 '95%이상~100%미만'으로 응답하였다. 학점은행제 유형에 해당하는 1개 기관은 100%로 응답하였다.

5) 본 설문조사에 응해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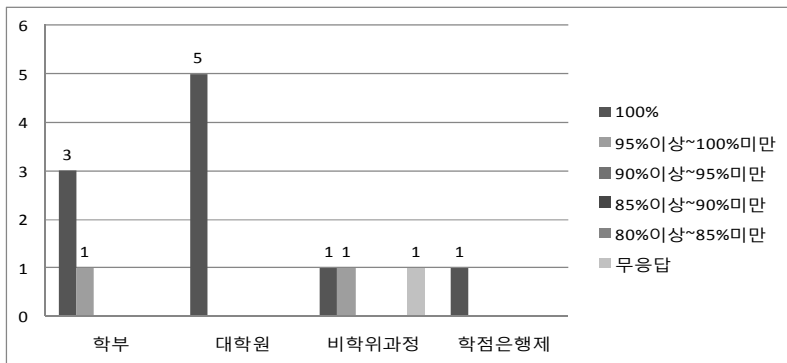
6) 실제 사용한 설문조사지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도표 IV-1] 기관 유형별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

2) '1.1.2.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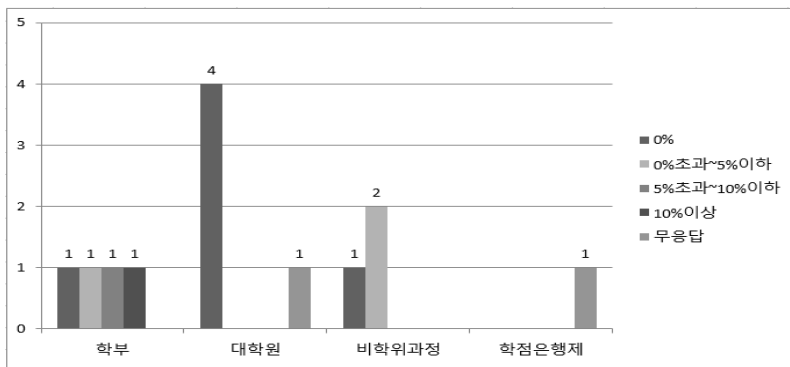
-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안 등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의 비중을 묻는 문항이다.
- 학부 유형의 경우, 적합 비율을 '95%이상~100%미만'으로 답한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기관이 100%로 응답하였다. 대학원 유형과 학점은행제 유형은 모든 기관이 적합 비율 100%라고 대답하였으며 비학위과정 유형은 '100%'로 응답한 기관이 1곳, '95%이상~100%미만'이 1곳, 무응답 1곳이었다.



[도표 IV-2] 기관 유형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 비율'

3)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미충족자 기준 중 하나인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미만에 해당되는 교원 자격 취득자 또는 수료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문항이다. 단, 비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통해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비중에도 해당한다.
- 이 질문에 대해 학부 유형은 '0%', '0%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이상'으로 응답한 기관이 각각 1개씩으로 가장 다양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반면 대학원 유형은 응답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이 '0%'로 응답하였다. 비학위과정 유형은 3곳 중 2곳이 '0%초과~5%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미충족자 비율이 '0%'로 대답하였다. 학점은행제 유형의 경우 집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점은행제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학생을 어느 기관 소속으로 판단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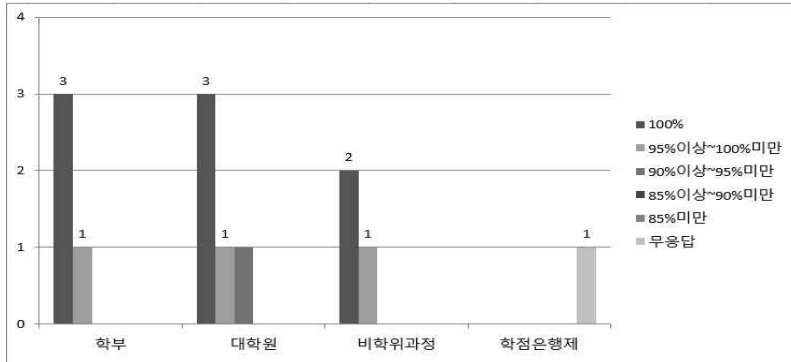


[도표 IV-3] 기관 유형별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4)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지표

- 개설 교과목 중 교수자의 전공이 일치하는 교과목의 비율을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지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학부 유형의 응답 분포는 '1.1.2.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지표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와 같이 '100%' 응답 기관 3곳, '95%이상~100%미만' 응답 기관이 1곳이었다. 대학원 유형은 '100%' 응답 기관이 3곳, '95%이상~100%미만' 응답 기관이 1곳, '90%이상~95%미만' 응답 기관이 1곳이었다. 비학위

과정 유형도 ‘100%’ 응답이 2곳, ‘95%이상~100%미만’ 응답이 1곳으로 학부나 대학원 유형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학점은행제 유형의 경우에는 ‘85%미만’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공 일치 파악이 어려운 교수자를 전공 불일치로 판단하여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IV-4] 기관 유형별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은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의 다섯 개 하위 지표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1)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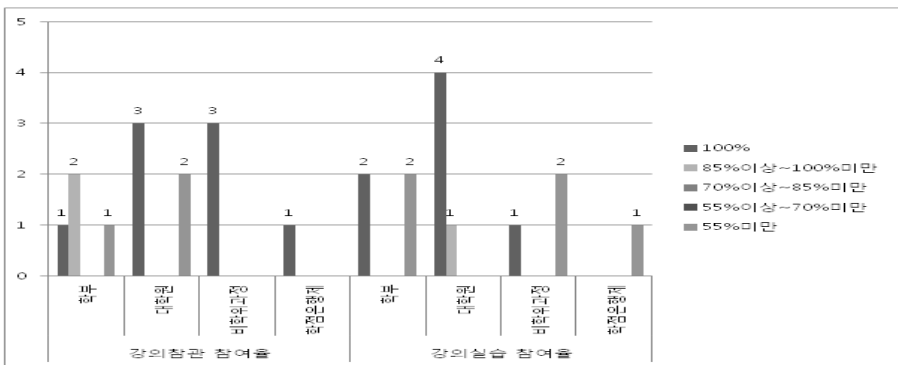
- 각 기관의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한국어교육 실습 현장 범위에 부합하는지와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한국어교육경력인증 기관인지에 대해 물었다.
- 비학위과정 유형의 1개 기관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실습 현장 범위에 부합하며 한국어교육경력인증 기관에 해당한다고 답하였다.

2)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지표

-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참여율과 1인당 평균 강의참관 또는 강의실습 시수를 질문하였다.
- 강의참관 참여율에 대해서는 학부 유형 기관 4곳 중 1곳만 ‘100%’로 응답했

으며 2곳은 '85%이상~100%미만', 1곳은 '55%미만'이라고 답하였다. 대학원 유형에서는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55%미만'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3개 기관은 '100%'의 강의참관 참여율을 보였다. 비학위과정 유형과 학점은행제 유형에서는 모든 기관이 '100%'의 강의참관 참여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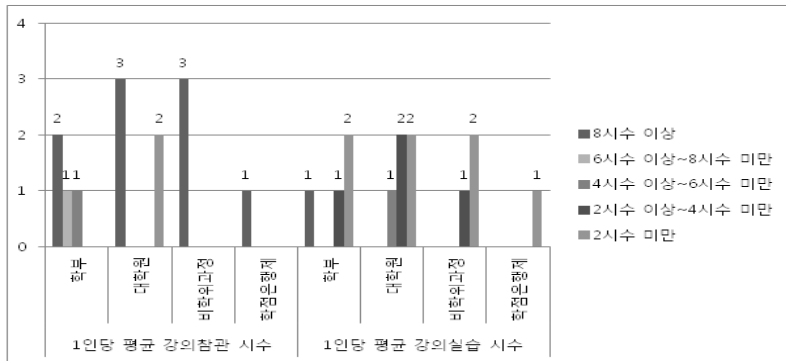
- 강의실습 참여율에 있어서는 학부 유형은 강의참관 참여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2개 기관이 '100%'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55%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1개 기관은 강의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었다. 대학원 유형의 강의실습 참여율 분포는 '100%' 4개 기관, '85%이상~100%미만' 1개 기관으로 학부 유형보다 조금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비학위과정 유형의 경우, 3개 기관 중 1곳은 '100%'로 응답했으나 나머지 2개 기관은 '55%미만'으로 응답하였으며 학점은행제 유형 또한 '55%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도표 IV-5]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강의참관 참여율 및 강의실습 참여율)

- 1인당 평균 강의참관 시수는 학부 유형에서 '8시수 이상'이 두 기관, '6시수 이상~8시수 미만'이 한 기관, '4시수 이상~6시수 미만'이 한 기관으로 응답하였고 대학원 유형에서는 '8시수 이상' 두 기관, '6시수 이상~8시수 미만' 한 기관, '2시수 미만' 두 기관으로 나타났다. 비학위과정 유형과 학점은행제 유형은 모든 기관이 1인당 평균 '8시수 이상'의 강의참관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 1인당 평균 강의실습 시수는 대부분 4시수 미만으로 유형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부 유형의 경우 '8시수 이상'인 기관이 1곳, '2시수 이상~4시수 미만'으로 응답한 기관이 1곳, '2시수 미만' 응답 기관이 2곳이었다. 대학원 유형은 '4시수 이상~6시수 미만'이 1곳, '2시수 이상~4시수 미만'이 2곳, '2시수 미만'인 기관이 2곳이었고 비학위과정 유형의 경우는 '2시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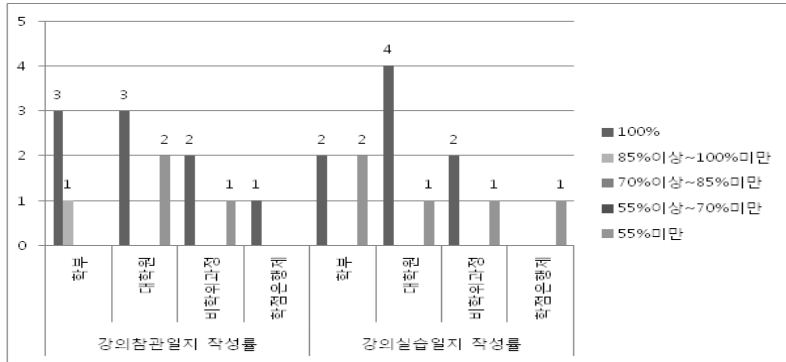
상~4시수 미만'인 기관이 1곳, '2시수 미만'으로 응답한 기관이 2곳이었다. 학점은행제 유형 또한 '2시수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도표 IV-6]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1인당 평균 강의참관 시수 및 1인당 평균 강의실습 시수)

3)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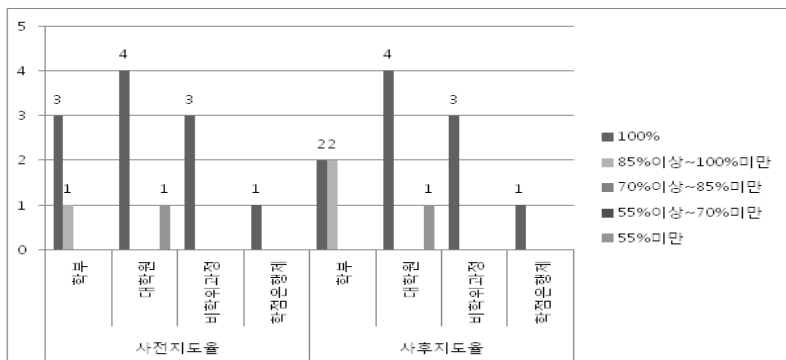
-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에서는 강의참관일지와 강의실습일지 작성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강의참관일지 작성률의 경우 학부 유형은 '100%'라고 응답한 곳이 세 기관, '85%이상~100%미만'으로 응답한 곳이 한 기관이었다. 대학원 유형은 세 기관은 '100%'로 응답한 반면 나머지 두 기관은 '55%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비학위과정 유형 또한 '100%'로 응답한 기관이 2곳, '55%미만'으로 응답한 기관이 1곳으로 대학원 유형과 유사한 분포를 띤다. 학점은행제 유형은 강의참관일지 작성률이 '100%'라고 응답하였다.
- 강의실습일지 작성률에 대해서 학부 유형은 두 기관은 '100%', 다른 두 기관은 '55%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원 유형의 경우에는 '55%미만'으로 응답한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100%'의 작성률을 보였다. 비학위과정 유형에서는 '100%'로 응답한 기관이 2곳, '55%미만'으로 답한 기관이 1곳 있었다. 학점은행제 유형은 '55%미만'으로 대답하였다.



[도표 IV-7]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강의참관일지 작성률 및 강의실습일지 작성률)

4)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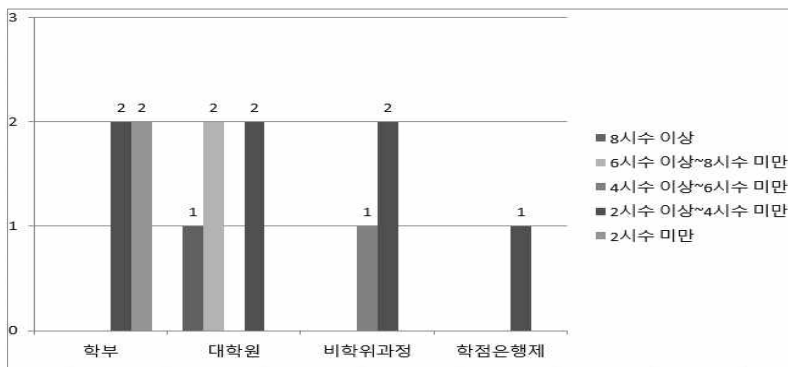
-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에서는 현장 경험 사전지도율과 사후지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학부 유형에서는 2개 기관이 사전, 사후지도율 모두 ‘100%’로 응답하였고 1개 기관은 사전, 사후지도율 모두 ‘85%이상~100%미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사전지도율은 ‘100%’, 사후지도율은 ‘85%이상~100%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원 유형의 경우 ‘55%미만’으로 응답한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남은 4개 기관이 사전, 사후지도율 모두 ‘100%’라고 응답하였다. 비학위과정 유형과 학점은행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모두 ‘100%’의 사전, 사후지도율을 보였다.



[도표 IV-8] 기관 유형별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사전지도율 및 사후지도율)

5)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지표

-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은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학부 유형에서 '2시수 이상~4시수 미만', '2시수 미만'으로 응답한 기관이 각각 2기관이었다. 대학원 유형에서는 '8시수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이 1기관이었고 '6시수 이상~8시수 미만'으로 응답한 곳이 2기관, '2시수 이상~4시수 미만'에 해당하는 기관은 2곳으로 나타났다. 비학위과정 유형은 2기관이 '2시수 이상~4시수 미만'에 해당하였으며 1기관이 '4시수 이상~6시수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학점은행제 유형은 '2시수 이상 ~ 4시수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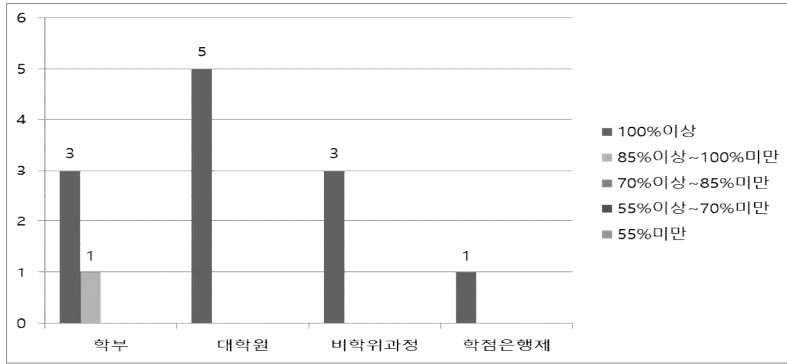
[도표 IV-9] 기관 유형별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1.3. '전임교원/강사 확보'

'교원·강사' 영역 중 '전임교원/강사 확보'에서는 '2.1.1. 전임교원 확보율',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의 세 가지 하위 지표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1) '2.1.1. 전임교원 확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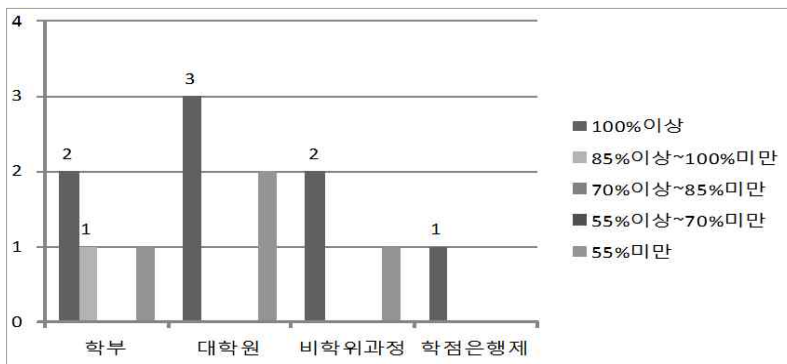
- 각 기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학부,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 모두 '100%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대학원 유형의 경우 '85%이상~100%미만'을 선택한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4곳은 '100%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도표 IV-10] 기관 유형별 '전임교원 확보율'

2)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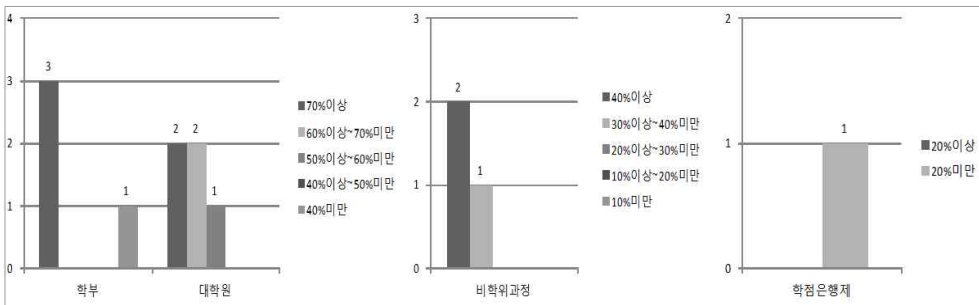
- 학부 유형은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이 '100%이상' 두 기관, '85%이상~100% 미만' 한 기관, '55% 미만'이 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유형에서는 '100%이상'이 3곳, '55%미만'이 2곳이었는데 '55%미만'에 해당하는 까닭이 전임교원만 전공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학위과정 유형은 2곳이 '100%이상' 1곳은 '55%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이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도표 IV-11] 기관 유형별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3)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지표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에 대한 척도를 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제시했다. 학부와 대학원 유형의 경우에는 '70%이상',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40%미만' 5개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며 비학위과정은 '40%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의 5개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20%이상'과 '20%미만' 두 가지로 나누었다.
- 학부 유형에서는 4곳 중 3곳이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1곳만 '40%미만'으로 답하였다. 대학원 유형의 경우 '70%이상', '60%이상~70%미만'이 각각 2곳, '50%이상~60%미만'이 1곳이었다. 비학위과정 유형에서는 2곳이 '40%이상'으로 응답했고 나머지 1곳은 '30% 이상~40%미만'으로 답하였다. 학점은행제 유형은 '20%미만'으로 나타났다.



[도표 IV-12] 기관 유형별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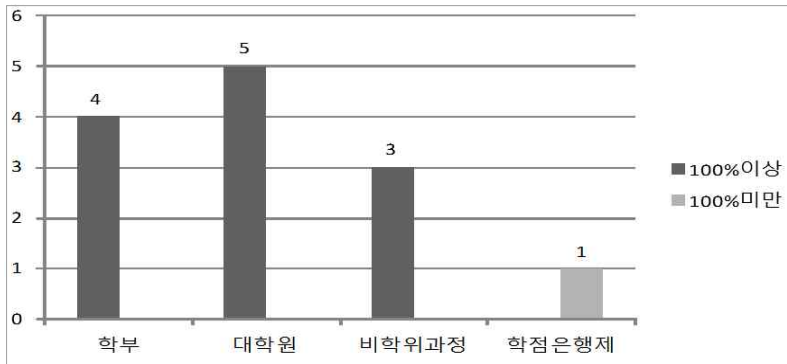
1.4. '3/5영역 전문성 확보'

'3/5영역 전문성 확보' 항목은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등 세 가지 하위 지표로 구성하였다.

1)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 교원 확보율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부, 대학원, 비학위과정 유형은 모두 '10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학점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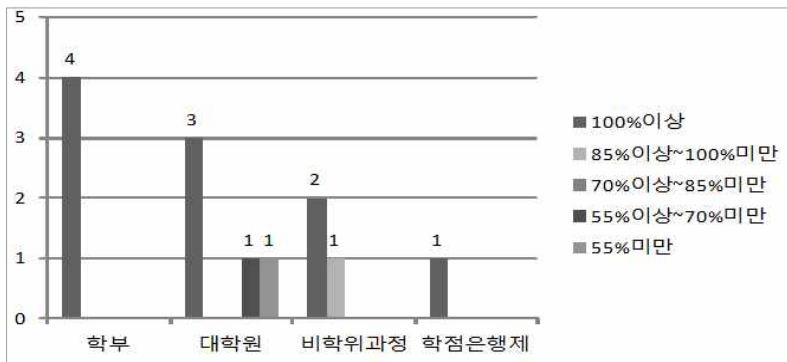
제 유형만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도표 IV-13] 기관 유형별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2)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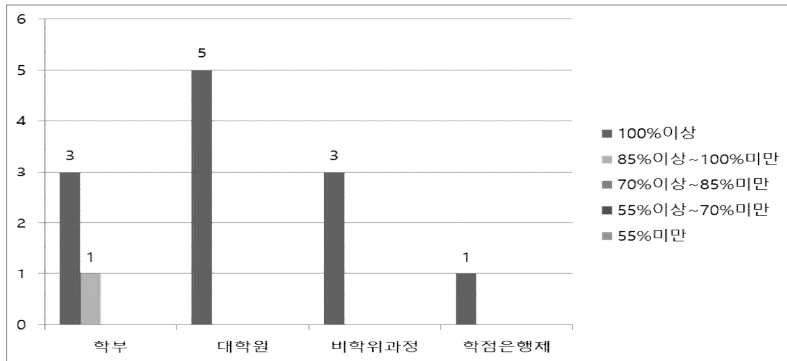
- 학부 유형과 학점은행제 유형의 경우 모든 기관이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유형은 세 기관이 '100% 이상', 한 기관이 '55% 이상~70% 미만', 한 기관이 '55%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비학위과정 유형에서는 '85% 이상~100% 미만'으로 응답한 기관이 1곳이었고 나머지 두 기관은 '100% 이상'으로 대답하였다.



[도표 IV-14] 기관 유형별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3)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을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학부 유형에서는 세 기관이 '100%이상'이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한 기관은 '85%이상~100%미만'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대학원,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유형의 경우 모든 기관들이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이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도표 IV-15] 기관 유형별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2. 종합적 논의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영역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지표의 평가척도 설정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적합 판정 '10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교과목을 개설하고 각 영역에 부합하는 교과목 구성 및 해당 교과목에 타당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은 반드시 100%의 적합비율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범평가 시 '100%'를 A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지표의 평가척도 설정과 학점은행제 유형 적용에의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 미충족자 비율 분포가 '0%', '0%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10%초과' 선택지를 '10%초과~15%이하', '15%초과'로 세분하여 5개의 척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는 학점은행제 유형만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한 학습자가 세 개 기관에서 동시에 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어느 기관 소속으로 볼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강이 끝난 후 학위 및 자격증 취득여부를 교육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증 취득자 수 집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지표의 평가척도 설정
 -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이 '100%', '95%이상~100%미만', '90%이상~95%미만', '85%미만'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므로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영역

- 설문조사 결과에서 기관 간 다양한 분포가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설문조사지에서 사용한 척도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지표의 평가척도 설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지표의 평가척도 설정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기관들이 '2회 이상~4회 미만' 교안 지도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회 이상 교안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A등급에 해당하는 평가척도 수준을 '8회 이상'에서 '5회 이상'으로 낮추고 B등급을 '4회', C등급을 '3회', D등급을 '2회', F등급을 '1회 이하'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2.3. '전임교원/강사 확보' 영역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지표 평가척도 설정
 - 설문조사지 작성 시 선택지를 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제공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부와 대학원 유형의 경우에는 '70%이상',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40%미만'의 5개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며 비학위과정은 '40%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의 5개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20%이상'과 '20%미만' 두 가지로 나누었다.
 - 이 중 학점은행제 유형의 척도를 다른 기관 유형과 동일하게 5개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유형에 적용할 척도를 '30%이상', '25%이상~30%미만', '20%이상~25%미만', '15%이상~20%미만', '15%미만'으로 설정하였다.

2.3.1. '3/5영역 전문성 확보' 영역

-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학점은행제 유형 적용 한계
 -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우 3영역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또한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는 '2.1.1.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서 학점은행제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1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V.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타당성 점검: 시범 적용

1. 평가 인증 도구의 타당성 점검 목적

-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2005. 7. 28.)된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꾸준히 요구되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서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승인을 강의계획서와 같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한다. 사후 중간 평가 및 점검 절차가 부재하고 취소 기준이 없어 교육의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해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양성되었고 개별 교육기관에서 예비 교원들을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교육 품질적 측면의 점검도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통한 지정제(가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 대해 현행의 강의계획서를 심사하는 제한적인 방식에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질적인 평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여 수강생들의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책임지고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받을 필요성도 요구된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를 추진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전에 연구된 강승혜 외(2014)의 평가 지표가 실제 적용 가능한 지표인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였다.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평가 척도 개발도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가 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평가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한데 평가단 시범 운영을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틀을 잡는 것도 현장 적합성 검토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위 내용을 요약한 평가 인증 도구의 타당성 점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장 평가 적용을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지표의 타당성 점검 및 평가 척도 개발
- 평가단 시범 운영을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 운영 체계 및 세부 운영 절차의 기틀 마련

2.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는 '피평가 기관 선정/평가위원 선정 → 피평가 기관 교육/평가위원 교육 → 서면 평가 → 현장 방문 평가 → 평가 결과 검증 → 평가 결과 확정·통보'로 진행된다.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운영 절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은 아래 [표 V-1]과 같다.

[표 V-1] 평가 절차 및 방법

단계	구분	주요 내용
1	▶ 시범 적용 피평가 기관 및 평가위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적용 참여 피평가 기관 모집 ○ 시범 적용 참여 평가위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분야 관련 대학 및 학회의 추천 - 누리집 공고를 통한 개별 신청
2	▶ 시범 적용 피평가 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기관 선정: 기관 유형별로 2곳 내외 ○ 평가위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기관 대상과 겹치지 않도록 선정
3	▶ 피평가 기관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자료집 작성 방법 설명 - 기관 유형별로 설명회 진행
4	▶ 평가위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설명 ○ 평가 시 주의점 안내 등
5	▶ 서면 평가 자료집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지표에 맞추어 서면 평가 자료집 작성 후 제출
6	▶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수행 ○ 평가 영역별, 평가단별 서면 평가 결과 논의 ○ 현장 방문 평가 시 면담자와 추가 요청 자료 확정 ○ 대학시설 방문 및 세부 평가 일정 계획 수립 ○ 현장 확인 자료 및 추가 요청 자료 확인 ○ 교육기관 측 관계자 면담
7	▶ 평가 결과 검증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준거별 평가 결과 확인 ○ 평가기준 재검토 및 판정 조정 ○ 기관 추가 제출 자료 목록 작성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회의
8	▶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결과 확정 ○ 피평가 기관에 결과 통보 및 보완점 제시

- 위 [표 V-1]의 평가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된 평가 단계별 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다.
 - 피평가 기관 및 평가위원 모집('17. 6. 19. ~ 7. 31.)
 - 피평가 기관 대상 시범 적용 관련 설명회 개최('17. 8. 17.)
 - 시범 적용 관련 평가위원 설명회 개최('17. 9. 22.)
 - 피평가 기관 자체 평가 보고서 및 평가 인증도구 제출('17. 9. 30.)
 - 자체 평가 보고서 서면 평가 실시('17. 10. 12. 예정)
 - 현장 평가 실시('17. 10. 18. ~ 11. 3.)

- 시범 평가의 '피평가 기관'과 '평가위원'은 국립국어원에서 각 기관에 모집 공고문을 보내고, 국어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 모집하였다. 신청·접수된 기관 중에서 각 유형별의 주요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8개 기관을 피평가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3.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단 운영

3.1. 평가위원 선정

3.1.1. 평가위원의 역할 및 자격 요건

- 본 연구에서 평가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하지만, 실제 평가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평가 편람 및 기준 개발 자문위원
 -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등에 참여
 - 기관 평가 지정제(가칭) 평가보고서 작성 등

- 평가위원은 개인 추천 및 기관 추천을 통해 폭넓은 인력풀을 구축하고, 그 중에서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 안에서, 국립국어원과 연구진이 검토한 후, 해당 시기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시범 평가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평가위원 후보자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하였다.

3.1.2. 평가위원 선정 절차

- 평가 인증 타당성 점검을 위한 시범 평가의 평가위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과(전공)’ 재직 교수 중 전임 교원 경력 5년 이상,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전임급 교원으로 한국어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는 다소 높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도 하였으나, 처음 적용되는 시범 평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였기에 가능한 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표를 정교화하고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위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필수 기준]

-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과(전공) 재직 교수 중 전임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급 교원으로 한국어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 ③ 1~2주간 평가위원 연수 및 현장 방문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우대 기준]

- *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평가위원 인력풀에 들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 및 관련 한국어교육 학회의 추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식 제출이 요구되었다.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 평가위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 평가위원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사진)
	휴대전화		소 속	기관명/학과명		
	전자우편			직위		
	주소	(우)				

학 위 정 보	최종학위	전공영역	전공명	세부전공명	비고
		예) 인문사회, 이공계, 기타			

주 요 경 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YY.MM ~ YYYY.MM.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인: (서명/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자료 V-1] 평가위원 신청서 서식

3.2. 평가단 운영

- 평가위원은 피평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위원으로 총 16명이 선정되었다. 유형별로 4명의 위원이 배치되었고, ‘교육과정 영역’과 ‘교원·강사 영역’을 2명씩 담당하여 평가하였다. 서로 교차 검토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4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평가단장을 선정하였고, 평가단장은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였다. 평가단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과 역할]	
-	평가단장 1명과 평가위원 3명으로 총 네 명을 1개 팀으로 구성
-	각 영역별로 2인씩 배정하여 평가 내용 교차 검토
-	현장 추가 확인 서류 목록 작성
-	평가가 끝난 후, 평가단장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서 및 종합의견서를 최종 수합하여 서류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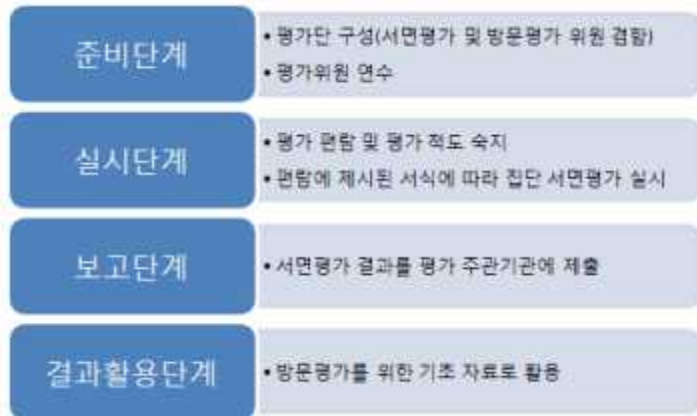
평가단의 단계별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1	-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 구성 * 기관장 추천, 학회장 추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 구성
2	- 평가위원 신청서 접수
3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참여 신청자 중 심의과정을 거쳐 해당 시기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위원 선정
4	- 평가위원 대상 연수 실시
5	- 평가위원에 대한 대학의 기피·제척 의견 수렴 - 평가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위원의 기피·제척 의견 수렴
6	- 대학별 평가단 구성 및 배치

[도표 V-1] 단계별 평가단 운영 사항

4.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였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도표 V-2] 서면 평가 절차

- 서면 평가는 평가위원이 자신이 맡은 지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숙독하여 서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서면 평가는 처음 진행된 것이기에 16인의 평가위원이 국립국어원에 모여 연구진과 함께 자체평가보고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 서면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평가위원 교육(자신이 맡은 평가 항목 및 지표 숙독)
 - 2단계: 평가 항목별 평가편람에 제시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숙지
 - 3단계: 자체평가보고서 내용 숙독
 - 4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별 평가기준(척도) 이해
 - 5단계: 서면 평가 서식에 서면 평가 결과를 기재
 - 6단계: 서면 평가 서식에 방문 평가 시 보충, 확인할 사항 기록
 - 7단계: 서면 평가 서식은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현장 방문 평가 시 활용하고 방문평가가 종료되면 서면 평가 서식에 자필 서명하여 평가주관기관에 제출

- 서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평가 실시하여 실제 운영 사항을 점검하였다. 현장 방문 평가는 국립국어원 담당자 1인 혹은 2인이 함께 동행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관계 기관 담당자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평가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고 비치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가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현장 평가를 진행하면서 지표와 증빙 서류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국어원 직원을 통해 혹은 평가 단장이 연구진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관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략 반나절 정도의 시간으로 현장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가 완료한 후에는 평가결과보고서는 동행한 국립국어원 직원이 일체 수합하였고 동봉한 상태로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5.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교육기관 유형별 평가위원 검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시범 적용의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시행하여 각 교육기관 유형별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시범 적용 과정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내부 연구진들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5.1. 학부

5.1.1. 지표별 검토 의견

1) 교육과정 영역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비치용 강의계획서는 평가에 필요한 것만 비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체 강의계획서 제출 시 필요한 강의계획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국립국어원 승인 시 제출한 강의계획서를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의계획서 평가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평가 대상 학부기관 중 한 곳에 미충족자 수가 많았던 이유가 미충족자의 개념을 미취득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 있었음. ‘자발적 미취득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미충족자로 구분하였기 때문임.
 - 졸업 이후 바로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혹은 몇 년 뒤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등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사후 관리가 불가하므로 ‘자격취득자 수’는 국어원에서 일괄 산정한 후 미충족자만 해당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음.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3영역 담당 교수자 관련 조건이 타 영역 담당 교수자 조건보다 완화된 면이 있음. 특히 ‘3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조항에서 완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기를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함.
 -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관련 경력증빙서류 제출 시 교육 경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어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를 요청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평가 시 기관의 적합성과 협력체결 일자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그런데 기관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기관의 위상 변화에 따라 적합성 여부가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표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작성 요령 (6)에 ‘해당 평가 기간 중 강의실습 협력 체결 기관에 변동이 없을 경우 학기/기수를 2014-2016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는 서술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실습 협력 기관 체결 양해 각서’ 등의 비치 자료에 ‘실습’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관명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증빙자료로는 현장 경험 시수가 몇 시간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음. 증빙자료에 시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의 모수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모수가 '강의참관대상 학생 수'로 되어 있음. 이 모수는 대체로 학기 초 수강신청자로 파악될 것임. 그러나 강의를 진행되면서 중도 탈락한 미이수자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모수를 '교육실습 이수자'로 하여 한국어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 경험의 시수와 참여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모의수업을 하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모의수업과 강의실습의 중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최대한 실제 한국어 강의와 비슷한 환경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도 원래의 목적은 교수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수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모수를 '교육실습 이수자'로 해야 함. 지금의 상태에서는 중도 탈락한 학생이 사전지도 학생 수에 포함되어서 100%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지정제(가칭) 실시를 앞두고 증빙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해 둘 것을 기관들에 유의시켜야 할 것이며 실제 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지침에서는 교안작성지도에 '오프라인 지도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강의를 통한 전체 학생 대상의 교안 작성 방법 지도 1회와 과제방을 통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 3회 또는 2회는 제외되어 총 1회의 지도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오프라인 지도로 5회의 지도를 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교안 작성 지도가 이메일이나 과제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오프라인 제도로만 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교안 작성 지도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를 구분하기보다는 학생과 교수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

2) 교원 · 강사 영역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에 대한 개념 및 범위에서 일시적 겸직 처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협동과정 개설 학부 전공의 경우 전임교원 수가 '0'이 될 경우가 생김. 또한 학부와 대학원 모두 소속된 전임교원의 경우 현실 상황(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에만 소속된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두 기관에 대한 중복 소속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음.
- 보통 학과의 전임교수라 함은 특정한 교과목에 상관없이 학과 발령 기준이 되어야 함. 그런데 현장에서 제시한 바로는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 타 학과와 '겸직'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학과와 대학원의 교원 수를 분리한다면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개설된 대학이 매우 불리하고 학부 없이 대학원에서 협동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평가 기관에서 제시하였음. 협동과정은 학과 교수가 없어도 겸직 발령을 통해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검토가 필요함.
- 언어권별로 특화된 글로벌 해외 우수 교육자를 초빙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를 인정받을 수 없음. 개선책으로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하거나 가산점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듯함.
- 언어권별로 특화된 글로벌 해외 우수 교육자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 교수자의 전공과목 강사 확보 요건에 있어서 유연성을 적용하여 현재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대학교, 특히 지방의 대학교에서는 출강하는 강사를 대부분 박사수료생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자격의 범위를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박사수료자'로 넓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전공과목 강사 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로만 제한하는 것이 너무 강화된 기준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 부분은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두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음.
- <표 2-1-2> 전공과목 강사 명단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와 전공과목의 강사 수는 평가 시점 직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은 2학기로 나누어 개설하고 있으므로 개설 과목 수도 직전 2개 학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임.

-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평가 시점 직전학기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함. ① 평가 시점 직전 학기 3영역 과목을 맡은 전임교원 중에서 3영역 전공과 일치하는 교원 수를 의미하는지 ② 평가 시점 직전 학기 전공과목을 맡은 전임교원 중에서 3영역 전공과 일치하는 교원 수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해야 함. 3영역 과목의 편성이 학기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직전 학기’보다는 ‘평가 시점 전년도 두 학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가 동일인일 경우가 있는데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를 ‘현장 실습 지도자’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현재 5영역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부 교수는 많은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과거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구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담당 교수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 5영역 관련 전공과목 강의 경력 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5.1.2. 기타 검토 의견

- 질적 평가를 위한 정성 평가 필요
 - 특성화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적 내용들이 평가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대부분의 평가 내용이 양적 평가로 이루어짐으로써 특성화 부분을 평가할 수 없음. 각 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나 인적 구성에 대한 질적 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함.

- 평가의 목적 및 초점 정립 필요
 - 평가의 초점이 분산되어 있어서 평가기관이나 피평가 기관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다시 말해, 평가가 기관 인증을 위한 것인지 기관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5.2. 대학원

5.2.1. 지표별 검토 의견

1) 교육과정 영역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평가위원용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매뉴얼을 통해 ‘과목명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적합 판정 교과목 예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적합 판정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의 주안점을 제시하였으나 평가위원이 적합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요구됨.

○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현재 국립국어원의 과목 심사에서는 교과목의 내용이 영역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평가위원들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기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과목 중에서도 강의 내용 구성에서 1영역, 3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미만이 거의 없으므로 이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다만, ‘미충족자’에 대한 정의, 졸업 증빙 서류의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미충족자’에 대하여 석사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박사과정에서는 자발적 미충족자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졸업생이 해당 연도에 개인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신청 후 자격을 취득하면 졸업연도의 미충족자로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평가 편람에서 ‘취득자 수’를 ‘해당 연도의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졸업자 수’로 기술함에 따라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의 평가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기준의 적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발급 받은) 졸업자 중에서 미충족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취득자 수는 해당 연도의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졸업자 수’라는 기술 대신에 ‘발급자 수(또는 자격증 취득자 수)는 해당 연도에 한국어교원자격을 발급 받은 졸업자

수로 기입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비치 자료로 ‘최근 3년간 교원자격 취득자의 이수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함. 아울러, 졸업생의 졸업 증명 서류 필요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2017년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12-13쪽에는 실습의 운영 절차로서 실습 기관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현장 실습 협약은 협약서 외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 실습 협약 내용이 포함된 공문 등 공식적인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실습 기관의 적합성 평가에서는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을 모수로 하여 적합 판정 기관의 비율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인 실습 협약 체결 없이 실습이 진행된 기관에 대한 적합성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는 피평가 기관, 평가위원 모두 <표 1-2-1> ‘실습 협력 체결 기관’ 의미를 현장 실습 협약이 이루어진 곳으로 한정하여 해석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로 보임.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자체가 협약서 외 실질적인 실습 협약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적인 문서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을 ‘실습 협력 기관’으로 수정하고 ‘협력 체결 양해 각서’ 외에 실습 협력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 증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실습이 동일 대학의 외국인 교양과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실습 기관 협약 체결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습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해당 교양과목의 실습 현장 적합성 여부는 반드시 논의가 필요함.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1인당 수업 참관 시수에 대한 증빙 자료가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학생의 경우 실습을 실제로 진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번 시범 평가에서는 2017년 개정된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 지표가 마련되었으나 실제로는 실습 교과목이 운영된 2014-2016년 기간을 평가하고 있기에 제기된 문제점으로 판단됨. 앞으로는 강의 참관 및 실습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 등을 증빙 서류로 구비하게 해야 할 것임.

○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 2017년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9쪽에서는 대학원 실습 교과목의 수강 자격을 한국어학 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중 합하여 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실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실습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습생의 교육 기술 향상과 관련된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이 강조되어야 함.
- 평가 척도로 교안 작성 지도 횟수가 제시되었기에 ‘교안 작성 안내 자료’가 실습생의 교안 지도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매뉴얼에서 평가의 주안점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안 작성 지도는 횟수에 상관없이 1회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 척도에서 5회 이상을 A로 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

2) 교원·강사 영역

○ 2.1.1. 전임교원 확보율 관련

- 평가 편람에서 ‘동일한 전임교원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중복 계산할 수 없다.’는 항목을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동시에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의 필요가 제기되었음. 전임교원의 산정 방식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관련하여 민감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인증 평가 초기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안내해야 함.
- 비치 자료에 학생 수를 증빙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평가 편람에서 학생 수의 산출 기준을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비치 자료에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가 없기에 제기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학교 본부의 교육부 제출 통계 자료 또는 학생 명부 등의 증빙 자료 보완이 필요함.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2.1.2.와 2.1.3.의 기간 통일이 필요함. 전자는 ‘직전 1학기’, 후자는 ‘1년’으로 되어 있음.
- 전공과목 강사, 강의시수 등의 증빙자료 검토 시 ‘전공과목’이 전체 과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명시해야 평가자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가 0인 경우에는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의 산정이 불가능함.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해야 함.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강의 시수', '강좌 수 혹은 과목 수' 등의 혼란이 예상됨. 평가 목적이 '강의 시수' 비율이므로 한 학기에 분반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마다 동일명의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 이를 강의시수에 각각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에 대해 평가 편람에 상세한 지침이 필요함.
- 전임교원 전공과목 강의시수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전공 관련 전임교수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교환교수, 타 학과 소속의 전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임교원, 강사 확보와 관련된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 개설 교과목이 제시되고 개설 교과목 중에서 한국어교육 전공 교과목을 표시한 자료가 필요함. 대학원에서는 1~5명역 외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개설 교과목 증빙서류에 '비고'란을 두어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2.3. 5명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5명역의 경우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5.2.2. 기타 검토 의견

○ 피평가 기관의 증빙 자료 관련

-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되어야 함. 이를 위해 피평가 기관에 심사 준비 자료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 각 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준비한 자료 중 자체 정리한 목록은 신뢰도가 떨어짐. 평가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해 피평가 기관에 심사 준비 자료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요구됨.

○ 평가 시점 및 기간의 통일 필요

- 학생 수, 전임교원 수, 강사 수, 교과목 개설 수 등의 평가 시점의 통일이 필요함. 어떤 경우는 3년간, 어떤 경우는 직전 학기 등으로 되어 있어 기간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봄.

○ 국립국어원에 대한 요청 사항

- 피평가 기관의 제공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예) 교과목 인증 목록, 자격증 취득자 명단
- 새로운 '실습 운영 지침'은 현행 대학원 기관이 따르기에는 매우 어려움. 기관 협약, 실습지도 등 협약기관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수강생이 별도로 실습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실습 과목의 세세한 운영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의 준비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5.3. 비학위과정

5.3.1. 지표별 검토 의견

1) 교육과정 영역

○ 1.1.4. 교수자 전공일치 교과목 비율

- 본 지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종합 의견으로는 3영역 교수자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므로 좀 더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 (3) 교수자의 전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①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경우
 - ② 교과목 교수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판단은 교육 내용을 전공하였더라도 박사학위논문은 해당 전공 주제로 작성하였다면 해당 전공으로 판단함.
 - ③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3년간 교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연구실적 200%에는 연구논문(100%), 전문서적(100%), 교과서(50%), 번역서(30%), 연구보고서(50%) 등이 포함됨. '전문서적'은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 학술저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강의용 교재나 한국어 교재 등을 포함함.
 - ④ 3영역 담당 교수자의 경우 위 ①, ②, ③ 기준 외에 박사학위소지자로서 3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중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도 포함함.
 - ⑤ 5영역 담당 교수자는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이거나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를 전공 일치로 판단함.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실습 기관을 갖추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적합성 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판정을 하게 됨. 그러나 만약 피평가 기관이 실습 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타 기관과 실습 협력 체결을 할 경우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여부’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평가 양식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함.
- 실습 기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비학위과정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실습 지침 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현장 실습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보고 있음.

○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 이번에 평가가 이루어진 피평가 기관의 경우 관련 자료 보관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자료 확보가 안 되어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이후에는 사전에 평가와 관련한 지침이 피평가 기관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가 필요하며 모든 평가 지표들이 피평가 기관들에 공유되어 평가자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 경험 보고서가 사전과 사후 지도로 나누어지는데 평가 양식에는 이 두 지표를 종합할 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2) 교원 · 강사 영역

○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 피평가 기관의 비학위과정 중 ‘2.1.1.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의 여건상 앞으로도 개선이 되기 어려운 지표임. 많은 비학위과정들이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교원 확보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는 비학위과정 운영을 축소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제기됨.

○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현장실습 지도자와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현장실습 지도자와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가 일치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5.4. 학점은행제

5.4.1. 지표별 검토 의견

1) 교육과정 영역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학점은행제는 필수적 상대 평가제를 실시하므로 70점 이하 규정 재고가 필요함.
- 1.1.4. 교수자 전공일치 교과목 비율
 - 강사 자격 중 연속 강의자는 자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강의 경력 여부는 실제 평가 시 원점에서의 출발이 바람직함.
 - 학점은행제(전임교수)의 자격 범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일반 학위과정의 전임과 동등한 요구를 하기 어려움.
 - 학점은행제의 경우 현장실습 기관의 타당성(협약서) 확보가 가장 중요함.
 - 현장 실습 기관 적합성(개별 학습자의 실습 기관)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지정기관 외 개별 학생들이 선택한 기관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적합 기관에 대한 지정에 의무화가 요망됨.
 - 해외 학습자들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시간이 1/5(15시간)이 다소 현실적 기준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으며 10시간 정도가 합당함.
-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현장실습보고서의 사전, 사후 지도에 대한 실제자료 요구는 지나치게 문서 작업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 사전지도 및 사후지도에 관한 개별 자료 비치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2) 교원·강사 영역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학생 인원 수 대비 전임교원 확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 수 대비 전임 비율 조항을 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임교원 가운데 1/4명이 3영역 과목 전공 불일치로 나타남.
- 학점은행제 교원 확보 기준은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학습자 수에 비해 적절하지 않으며 인원 충원이 필요함.
- 학점은행제(전임교수)의 자격 범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일반 학위과정의 전임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기 어려움.
- [기관 소속]과 [개인별] 학점은행제의 평가 기준을 달리 설계해야 함. [기관 학위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기관 평가에 준하되, 약화된 전임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 시 운영교수는 학기당 200명 정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와 운영교수의 자격 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 현장실습지도자와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자가 동일할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현장실습지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차별화한다면 불인정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실습 현장 지도자의 강의 경력 시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추가 요청을 하였으나 타 기관 경력은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음.

5.4.2. 기타 검토 의견

○ 증빙 자료 요청을 통한 확인 과정 필요

- 서면 평가 시 요구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 항목 당 평가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서면 평가 후 현장에서는 확인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교수자 자격요건 인증 서류
- 교과목 인정 판정표 증빙

- 미취득 학생 관련 자료(학점표)
 - 협약서(현장실습)사본
 - 교육실습관련 보고서 sample 등
- 향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가의 효율화 지향
- 향후 기관 평가에 참여한 교강사의 DB를 정리하여 자동적 자격요건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통합 Website를 구축하여 실제로 운영된 교과목(강의계획서 포함)에 대한 실물 입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강의 이후 온라인 강의계획서 실물 증명본 제출 필요)

6.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 검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행과 관련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에 외부 자문위원들의 현장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후 평가위원들의 종합의견을 수합하여 내부 연구진과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를 의뢰하여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1. 현장 평가 종합의견에 대한 평가 지표별 검토

-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일부 기관의 경우 미충족자 수가 많았던 이유가 미충족자의 개념을 미취득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 있었음. ‘자발적 미취득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미충족자로 구분하였기 때문임.
 - 취득자 수를 발급자 수 혹은 자격증 취득자 수로 변경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이 경우 ‘자발적 미취득자’와 같은 용어는 불필요함.
- 1.1.4. 교수자 전공일치 교과목 비율
- 3영역 담당 교수자 관련 조건이 오히려 타 영역 담당 교수자 조건보다 완화된 면이 있음. 특히 ‘3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력’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검토함.
 - 교수자 전공일치 교과목 비율의 전공일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전공 일치 기준에 대한 명확히 할 것임.

- 1.2.2. 현장경험 시수 및 참여율
 -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의 모수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모수가 '강의참관대상 학생 수'로 되어 있는데 이 모수는 대체로 학기 초 수강신청자로 파악될 것임. 그러나 강의가 진행되면서 중도 탈락한 미이수자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모수를 '교육실습 이수자'로 변경하여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 경험의 시수와 참여율을 따지는 것으로 할 예정임.

- 1.2.5. 교안작성 지도의 충실성
 - '교안 작성 안내 자료' 역시 학생 지도로 인정하여 교안 작성 지도 횟수를 척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교안 지도 후 지도한 교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경우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1.1. 전임교원 확보율
 - 학과와 대학원의 교원 수를 분리한다면 학부를 가진 대학이 매우 불리하고 학부가 없고 대학원에서 협동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함. 협동과정은 학과 교수가 없어도 겸직 발령을 통해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려할만함.
 - 겸직일 경우 1/N명으로 계산함. 또한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더 기술하도록 할 예정임.

6.2. 현장 평가 종합의견 및 기타 논의사항

-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 한국어교육 관련자가 아닌 다른 분야의 관련자(예. 평가 등)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음.
 - 실제 평가 단계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전문가 이외에 평가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1.1.1.과 1.1.2. 지표만 1단계 심사로 진행하고 그 외 지표는 모두 2단계에서 심사함. 1단계 심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 및 학과 명칭, 교과목 심사 등의 지표는 필수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1단계 심사로 반드시 충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인증 심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라도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시키고 평가받은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함.
 - 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는 현 개별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과 도기 방안을 논의함.

- 지정제(가칭) 시행을 위한 인증 1주기 평가는 국어원에서 주도를 해야 하며 그 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1주기 평가의 주체로 국어원의 역할이 불가피하며 전 과정을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 자격제도 운영의 일부 예를 들면, 교과목 심사에서 개설 교과목 변경 시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설 기관의 경우 3년 후에 3년 간 운영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신설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의 경우는 현 자격제도의 과정을 거 치도록 하여 3년 간 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평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평가위원이 먼저 평가를 하고 피평가 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국어원 이 개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맡기는 경우 1단계, 2단계 심사가 필요하지 않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심사 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평가받은 등급에 따라 심사 주기를 달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피평가 기관의 시범 적용 결과 개요)

7.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1.1.3. 필수이수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지표의 경우 반드시 적합비율 100%를 만족해야 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있었음.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지표의 경우 A, C, D, F등급을 받은 기관이 각각 2기관이었음.

7.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지표에서는 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C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1개, F등급을 받은 기관이 2개였음.
-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지표의 경우 100%를 만족할 경우 A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강의 참관과 강의실습 참여율이 모두 A등급인 기관이 1개, 강의 참관 참여율만 A등급인 기관이 3개, 강의실습 참여율만 A등급인 기관이 1개로 나타남.
-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지표에서는 강의 참관 보고서와 강의실습 보고서 작성률 모두 100%로 A등급인 기관이 1개, 강의 참관 보고서 작성률만 A등급인 기관이 4개, 강의실습 보고서 작성률만 A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로 나타남.
-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지표에 대하여 사전지도율의 경우 7개 기관, 사후지도율의 경우에는 5개 기관이 A등급(100%)을 받았음. 사전지도율과 관련하여 F등급(55% 미만)을 받은 기관은 1개, 사후지도율에 대하여 F등급(55% 미만)을 받은 기관은 3개였음.

7) 본 분석 결과는 피평가 기관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함을 밝힌다.

-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지표에서 A등급(교안 지도 4회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개였으며 B등급(교안 지도 3회)을 받은 기관은 3개, C, D, F 등급에 속하는 기관은 각각 1개임.

7.3. '전임교원/강사 확보'

- '2.1.1.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서는 A등급(100%)과 F등급(55% 미만)을 받은 기관이 각각 3개, C등급(70% 이상~85% 미만)과 D등급(55% 이상~70% 미만)을 받은 기관이 각각 1개임.
-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지표의 경우 A등급(100%) 기관이 4개, B등급(85% 이상~100%미만) 기관은 1개, F등급(55% 미만) 기관은 3개로 나타남.
-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지표에서 A와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1개였으며 C등급과 F등급의 기관은 각각 3개로 확인됨.

7.4. '3/5영역 전문성 확보'

-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경우 2개 기관이 100% 미만으로 F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모두 A등급(100% 이상)이었음.
-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지표는 A등급(100%)과 F등급(55% 미만)에 해당하는 기관이 각각 3개였으며 B등급(85% 이상~100% 미만)과 C등급(70% 이상~85% 미만)을 받은 기관이 각각 1개로 나타남.
-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지표에서는 5개 기관이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비율'과 '현장 실습 지도자 비율' 모두에서 A등급(100%)을 받았으며 나머지 3개 기관은 두 비율 모두 F등급(55% 미만)을 받았음.

VI.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도구 수정안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편람

본 장에서는 강승혜 외(2014)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연구원 및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시범 적용 후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된 최종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 도구의 구성은 크게 두 개의 평가 영역 즉, ‘교육과정 영역’과 ‘교원 강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교육과정 영역’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한국어교원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실습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하는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서는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등의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에서는 국어원에서 공표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실습 기관의 적합성’,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등의 지표를 통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충실하게 실습 교과목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원 강사 영역’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평가 영역으로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원 강사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하였다. ‘교원 강사 영역’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교원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전임교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한국어교육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3/5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강사를 확보했는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전임교원/강사 확보’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등의 지표로 해당 전임교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3/5영역 전문성 확보’에서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위한 지정제(가칭) 시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편람과 함께 각 지표별 배점 및 척도를 첨부하였다.

※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영역	항목	지표	배점
1. 교육 과정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00)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차 심사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1차 심사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100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100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300)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60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60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60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60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60
2. 교원 강사	2.1. 전임교원 /강사 확보 (200)	2.1.1. 전임교원 확보율	100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50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50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300)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100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100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100

1. 교육과정 영역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양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
 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교과목을 개설하고 각 영역에 부합하는
 교과목 구성 및 해당 교과목에 타당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이란 평가 대상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역
 별 교과목들이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군
 (群)에 부합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었는가를 말한다.
- (2) ‘개설 교과목’이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해 개
 설한 1~5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목이
 아니라 해당 학기에 폐강되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을 말한다.

◎ 작성 양식

<표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유형		영역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 수 (A)	적합 과목 수 (B)	영역별 개설 교과목 비율 C=(B/A)x100	적합 비율 (전체) C/5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1			
			2			
			3			
			4			
			5			
	3) 특수대학원	1				
		2				
		3				
		4				
		5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수 (A)	적합 과목 수 (B)	영역별 개설택 교과목 비율 C=(B/A)x100	적합 비율 (전체) C/5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1년간 개설 교과목수 (A)	적합 과목 수 (B)	영역별 개설택 교과목 비율 C=(B/A)x100	적합 비율 (전체) C/5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1				
		2				
		3				
		4				
		5				

*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개설한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개설 교과목 수'는 학위과정의 경우(학점은행제 제외), 최근 3년간 실제로 개설된 교과목 수를 영역별로 기입하고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 수를 기입하고 동일 교과목의 경우 한 과목으로 산정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개설된 과목이 있는 경우만 작성한다.
- (2) '적합 과목 수'는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명칭으로 개설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여 산정한다. 다음 '영역별 필수 교과목 예시'에서 제시된 교과목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다음 예시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자모학습법'은 1영역 과목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관련된 3영역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 계절학기에 개설한 교과목도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적합 판정 교과목 예시 (자료: 국립국어원) (2017년 7월 현재)

영역	과목명
1	<p>한국어학의 이해, 한국어형태론연구, 한국어통사론연구, 한국어어휘론연구, 한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의미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문법론, 한국문법의 이해, 한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문법,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음운론연구, 국어학개론, 한국어사, 한국어음성학과 발음, 중세한국어강독(학부 과목만 인정), 중세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어문규범연구, 한국어화용론연구, 한국어화용론, 한국어변천사, 한국어형태음운론, 한국어문법정론, 한국어학연구,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의미론과 화용론, 한국어형태론과 통사론, 한국어음성학과 음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사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화용론연구, 한국어정서법연구, 한국어문자 및 표기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특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화용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사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미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음운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형태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세미나1, 한국어단어구조론연구, 한국어문장구조론연구, 한국어학일반론, 한국어표기법연구, 한국어교사를 위한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교사를 위한 문법 및 어문규범, 한국어문장연구, 한국어학원론, 한국어표기론특강, 한국어통사론연습, 한국어음운론특강/연구, 한국어사연습, 한국어사특강, 한국어통사론특강, 한국어정서법연습, 한국어의 담화와 화용, 한국어문자론, 한국어어문규범과 글쓰기, 한국어어휘구조론, 한국어연구입문, 한국어문법의 이해, 한국어발음의 이해, 한글과 정서법, 현대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기원과 발달, 한국어말소리의 이해, 한국어구조의 이해, 한국어의 발음, 한국어문장론, 한국어화법과 의사소통, 한국어규범과 언어예절, 한국어방언학, 한국어의 뿌리와 역사, 한국어단어의 이해, 한글과 정서법의 이해, 한국어담화분석세미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 입문</p>
2	<p>일 반 언 어 학 및 응 용 언 어 학</p> <p>언어의 이해, 언어이론연구, 언어유형론연구, 외국어습득론, 응용언어학, 대조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 언어학개론,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연구, 제2언어학습이론, 응용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특강, 대조언어학연구 I (동양어권), 대조언어학연구 II (서양어권), 언어학세미나, 언어습득론, 제2언어 및 외국어습득론, 언어학특강, 담화분석, 제2언어학습이론, 언어정보학연구, 담화텍스트이론연구, 현지외국어습득의 이해, 현지어와 한국어의 대조, 대조분석론, 이중언어학연구, 대조언어학이론과 실제, 언어와 정보, 대조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의 이해,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 오류분석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이중언어교육심화연구, 이중언어교육론, 한국어정보학, 한국어학습자언어자료연구, 말뭉치기반대조언어학, 대화분석연구,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언어와 사회문화적맥락, 인간과 언어, 외국어습득과 오류분석, 대조오류분석론, 인지언어학연구, 한국어정보학연구</p>
3	<p>외 국 어 로 서 의 한 국 어 교 육 론</p> <p>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읽기/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수법, 한국어매체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재 및 교수법연구,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어휘교육론연구, 한국어이해교수법연구, 한국어표현교수법연구, 한국어교육세미나,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교안작성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교육과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기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수요목, 한국어한자 및 어휘교육, 한국어말하기듣기교수법, 한국어읽기쓰기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발음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 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세미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개론연구,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한국문화교육론</p>

	<p>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개론, 한국어이해교육론연구, 한국어표현교육론연구,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수학습이론, 한국어교수방법, 한국문학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법, 한국어듣기읽기교육법, 한국어담화교육론, 한국어교재 및 교구활용론, 한국어교육학세미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교수방법론연구, 한국어화법교육론, 외국어를 사용한 한국어교수법, 한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읽기와 쓰기교육법, 한국어교재연구,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문학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과 평가연구, 한국어어휘교육연구, 한국어교재교구연구, 한국어표현교육연구, 한국어발음교육연구, 한국어이해교육연구, 한국어교육학특수연구, 특수목적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문법교육세미나, 한국어교수법특강, 한국어교수자료연구, 한국어평가연구, 한국어교육과정연구, 한국어독해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능력평가, 한국어교육과정설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2, 한국어교육세미나 I, II, 한국어어휘교육세미나, 한국어발음교육세미나, 한국어능력평가연구, 한국어독해교육연구, 한국어말하기교육연구, 한국어듣기교육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어지도론1(말하기,듣기), 한국어지도론2(읽기,쓰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한국어교육평가 도구의 개발과 평가, 기술별한국어교육 II: 읽기,쓰기, 한국어교육연구의 비판적이해, 의사소통,내용,과제 중심한국어교육, 영역별한국어교육 I: 문법, 영역별한국어교육 II: 발음, 영역별한국어교육 III: 어휘, 영역별한국어교육IV: 화용, 영역별한국어교육V: 문화,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 I: 학업,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 II: 직업,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 I:아동,청소년,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 II:이주노동자,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III:결혼이주여성,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IV:다문화가정자녀,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V:재외동포, 기술별한국어교육 I:듣기,말하기, 한국어평가연구, 한국어기능교육론, 한국어교육과 통계, 한국어말하기지도법, 한국어읽기지도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 및 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문화교육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교육콘텐츠용발음교육, 한국어교육콘텐츠용어휘교육, 한국어교육콘텐츠용문법교육, 한국문화교육콘텐츠의이해, 한국문화텍스트번역연구, 한국어교육매체론,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수법, 한국고전문학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방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소설교육, 한국고전문교육, 한국어발음지도법, 한국어수행능력평가연구, 한국어교재개발연구, 한국어교육자료개발세미나, 한국어교육자료개발론, 한국어수업지도안작성법, 한국어초급수업지도안작성, 한국어중급수업지도안작성, 한국어교안작성과 수업운영, 다문화가정대상한국어교수법,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론, 한국어문어교육론, 한국어번역론, 한국어음운교육연구, 한국어음성언어교육론, 한국어구어교육론,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수법, 한국어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매체활용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연구와 지도방법론, 한국어교재분석론</p>
4	<p>한국문화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연구, 한국문화연구, 한국문학과 문화,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고전문학특강, 한국현대문학특강,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민속학연구, 한국문학사연구,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화기초연구, 한국대중문화의 이해, 한국문화론, 전통문화현장실습,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한국민속론, 한국현대문화비평론, 한국고전시가론, 한국고전문학사, 한국고전소설론, 한국문학비평론, 한국한문학론, 한국현대문학강독, 한국현대문학사, 한국현대소설론, 한국현대시론, 한국현대문화연구, 현대한국사회연구, 한국문학의 이해와 연구, 한국학개론,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문학, 한국문화, 한국사회,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현대문화체험실습, 한국역사와 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실습, 한국작가분석, 한국소설과 영상, 한국민속문화, 한국문학입문, 한국고전시가, 한국현대문학입문, 한국현대예술, 한국여성문화, 한국사상사, 한국문화유산탐방, 한국전통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한국문화론특강, 한국문화와 다문화사회의 이해, 한국문화와 사상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문화사상특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국제사회와 한국현대문화의 이해, 한국종교문화연구, 한국문학개론(고전), 한국지역문화연구, 한국문화예술과 한류,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연구, 옛이야기와 한국문화, 세계속의 한국문화재연구, 한국문화와 생태학, 한국인의 해외활동연구, 한국의 종교와 사상, 한국문화교</p>

	<p>류사연구, 한국문학갈래론, 한국영화와 현대사회, 한국영화와 한국인, 한국공연예술의 이해, 현지문화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문화산업, 한국학일반론, 한국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문학사심화연구, 한국희곡연구, 한국의 지리와 문화, 한국매체정보론, 한국민요연구, 한국현대문화론연구, 한국사개론, 한국예술사상과 무용, 한국문화와 예술, 한국학의 이해, 한국인의 생활사, 한국학특수연구 I,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현대문학원론, 한국고전문학원론, 한국문화론특강, 샤머니즘과 한국문화, 해외한국문화재의 이해, 한국의선사와 고대문화, 한국문화원류탐구, 한국신화와 상징체계,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 한국노래문학의 이해와 감상, 한국현대작가와 문학현장, 한국고전작가와 문학현장,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한국의 사회와 법, 한국시의 이해, 한국문학의 재조명,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비교,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의 복식문화, 한국의 대중음악사, 한국의 건축문화, 한국미술의 이해, 한국언어문화연구, 한국언어문화특강, 외국문학으로서의 한국현대문학, 해외한민족의 이해, 해외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한국대중문화와 미디어, 한국문학과 사회, 한국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한류와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흐름, 한국사의 탐구,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한국대표문학작품감상, 현대한국사회의 쟁점, 한국근현대사의 쟁점세미나, 한국고전작가론, 한국고전시가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학과 콘텐츠, 한국노래문학의 이해,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개론</p>
5	<p>한국어 교육실습</p> <p>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참관 및 모의수업, 한국어수업참관 및 현장실습, 한국어수업참관 및 교육실습, 모의수업, 한국어강의참관 및 실습, 강의실습, 한국어교육실습과 참관, 한국어교육모의수업, 한국어교육강의실습, 외국인을 위한 국내 한국어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국내 한국어 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한국어교육단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장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단기인턴십 I, II(국외)</p> <p>한국어교육장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수업심화실습, 한국어교육실습과 교실운영, 한국어교육실습워크숍, 한국어교육실습 및 현장연구</p>

- (3)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은 적합으로 판정한 교과목 수를 각 영역별로 개설된 교과목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로 기입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1영역으로 개설된 교과목이 다섯 과목인데 ‘적합’으로 판정한 과목이 네 과목일 경우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의 1영역란에는 [‘적합’으로 판정한 과목 수(4)/최근 개설된 1영역 과목 수(5)]x100=[4/5]X100=80(%)을 기입한다.
- (4) ‘적합 비율(전체)’은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을 5로 나눈 값을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혹은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자료, 학점은행제의 경우 1년간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영역별 필수 교과목 예시’에 제시한 각 영역별 과목 예시에 준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였는지 평가한다.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이란 각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지를 말한다.
- (2)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의 판단은 평가단의 내용 적합성 판정에 따른다.
- (3)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교과목별 강의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안, 교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작성 양식

<표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유형	영역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	판정		비고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1			
			2			
			3			
			4			
			5			
	3) 특수대학원	1				
		2				
		3				
		4				
		5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	판정		비고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1년간 개설 교과목	판정		비고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1			
		2			
		3			

		4				
		5				

*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개설한 기관만 기재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자료, 학점은행제의 경우 1년간 자료)
- (2) 비학위과정은 교과목별 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안, 교재 등 강의 내용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
- (3)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제 강의계획서 비치

◎ 평가의 주안점

- (1) 내용 적합성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내용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판정 결과로 평가한다.
- (3) 해당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적합/부적합 등으로 판정한다. 평가단(전문가 집단)은 이에 대한 판정 사유를 기술한다.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용어의 정의

- (1)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이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기준의 적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지를 말한다.
- (2) ‘필수이수 기준’은 학위과정(학점은행제 포함)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충족 여부와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이상 취득 여부를 말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 시간 충족 여부와 종합시험 시행 및 통과 여부를 말한다.
- (3) ‘미충족자’란 ① 학위과정의 경우(학점은행제 포함)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② 학점을 충족하고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이상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①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시간(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②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4)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충족 여부는 1.1.1.에서 제시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에 해당하는 학점 취득 여부로 판단

한다.

- (5) 비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시행 여부 및 통과 여부는 종합시험을 시행하고 종합시험 통과 기준 점수를 통해 이수 기준 관리를 하는지 판단한다.
- (6) 학점은행제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 과목 전체를 개설한 경우만 평가하며 성적 70% 미만 부여 이수자 비율로 판단한다.

◎ 작성 양식

<표 1-1-3> 필수이수 기준 미충족자율

유형			2014		2015		2016		계		
			취득자 수(a1)	미충족자 수(b1)	취득자 수(a2)	미충족자 수(b2)	취득자 수(a3)	미충족자 수(b3)	취득자계 A=(a1+a2+a3)	미충족자계 B=(b1+b2+b3)	미충족자 비율 (B/A)X100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유형			2015		2016		계			
			취득자 수 (a1)	미충족자 수 (b1)	취득자 수 (a2)	미충족자 수 (b2)	취득자계 A=(a1+a2)	미충족자계 B=(b1+b2)	미충족자 비율 (B/A)X100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계		
		수료자수 (a1)	미충족자수 (b1)	수료자수 (a2)	미충족자수 (b2)	수료자계 A=(a1+a2)	미충족자계 B=(b1+b2)	미충족자 비율 (B/A)X100
비 학 위 과 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계		
		수료자수 (a1)	미충족자수 (b1)	수료자계 A=(a1)	미충족자계 B=(b1)	미충족자 비율 (B/A)X100
학 점 은 행 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실적 현황

유형			2014			2015			2016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 사유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 사유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 사유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유형			2014			2015			2016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 사유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 사유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 사유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종합시험 실시 여부	통과 기준점수	미충족자 명단	종합시험 실시 여부	통과 기준점수	미충족자 명단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 작성 요령

- (1) 각 기관은 유형별로 작성하되 학위과정의 학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3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비학위과정은 2년간, 학점은행제는 1년간의 실적을 기입한다.
- (2) 취득자수는 해당 연도에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의 수를 기입하고 미충족자 수는 취득자 중에서 영역별 필수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숫자를 기입한다. 비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수료자 수를 기입한다. (단, 시범 적용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는 제외한다.)
- (3) 미충족자 비율=(미충족자 수 계/취득자 수 계)X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 (4) <부록표 1-1-3>의 경우, 학위과정은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미충족자 수를 기입하고 미충족자의 명단을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은 필수이수 시간 외에 종합시험 시행 여부, 통과 기준 점수, 미충족자 명단을 기입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연계전공)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	한국어학	6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18학점	120시간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교원자격 취득자의 이수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 (2) 비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2년간 종합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를 들면, 검사지 및 시험지, 응시자 명단, 합격자 명단, 출석 기준표, 종합시험 합격/불합격 기준표 등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필수이수 기준(필수이수 학점 혹은 필수이수시간)을 엄격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용어의 정의

- (1)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이란 개설된 교과목 중 교수자의 전공이 일치하는 교과목의 비율을 말한다.
- (2) 전공 일치 정도는 교수자(교수, 강사)가 받은 박사학위가 교과목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교수자의 전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①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경우
- ② 교과목 교수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판단은 교육 내용을 전공하였더라도 박사 학위논문을 해당 전공 주제로 작성하였다면 해당 전공으로 판단함.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 경우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판단함.
- ③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3년간 교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연구실적 200%에는 연구논문(100%), 전문서적(100%), 교과서(50%), 번역서(30%), 연구보고서(50%) 등이 포함됨. '전문서적'은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출판된 강의용 교재나 한국어 교재 등을 포함함.
- ④ 3명역 담당 교수자의 경우 위 ①, ②, ③ 기준 외에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도 포함함.
- ⑤ 5명역 담당 교수자는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이거나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를 전공 일치로 판단함.

※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

-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 ② 국제 SCI급/SCOPUS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이공계-SCI, SCIE, 사회과학-SSCI, 인문예술-A&HCI, SCOPUS 등)에 게재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 ③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지: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SCI급/SCOPUS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 ④ 저·역서: ISBN에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편저), 초·중·고 교과서 집필 등은 제외됨.
- ⑤ 논문게재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주저자=2/(n+2), 교신저자=2/(n+2), 공동저자=1/(n+2),
총저자수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⑥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1/n
- 총저자수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적용 지침은 평가시행년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 작성 양식

<표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전공 일치 과목수 (a1)	개설 과목수 (b1)	전공 일치 과목수 (a2)	개설 과목수 (b2)	전공 일치 과목수 (a3)	개설 과목수 (b3)	전공 일치 교과목 계 A=(a1+a2+a3)	개설과목 교과목 계 B=(b1+b2+b3)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A/B)x100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년		2016년		계		
		전공 일치 과목수 (a1)	개설 과목수 (b1)	전공 일치 과목수 (a2)	개설 과목수 (b2)	전공 일치 교과목 계 A=(a1+a2)	개설과목 교과목 계 B=(b1+b2)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A/B)x100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년		계
		전공 일치 과목 수 (a)	개설 과목 수 (b)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a/b)x100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3년간 개설한 교과목 수와 교수자 전공 일치 과목수를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설한 교과목 수와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개설한 교과목 수를 기입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 (2) 전공 일치 과목 비율 = {(전공 일치 과목 계/총 개설 과목 수)}x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3) 한 과목을 여러 명이 담당할 경우는 담당할 총 교수자 대비 전공일치 교수자의 비율로 계산하여 기재한다. (예: 한 과목을 교수자 4명이 담당하고 이 중 전공일치 교수자가 3명일 경우 전공일치 과목수를 0.75로 계산한다.)
- (4) 같은 과목을 분반하여 서로 다른 교수자가 담당할 경우는 다른 과목으로 간주한다. (예: 동일 과목명으로 동일 학기에 2명의 전공일치 교수자가 각각 다른 분반을 개별 운영한 경우 전공일치과목 수를 2로 계산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학점은행제는 1년간) 과목개설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설과목 목록, 시간표 등
- (2) 개설과목별 교수자 전공 및 일치여부 목록 자료
- (3) 교수자의 세부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를 들면, 학위 증명서, 학위기,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자 확인 면, 박사학위 논문 초록, 논문 수록 학술지 목차 및 논문 중 분명히 전공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교수자 전공 일치도는 실제적인 전공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예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실습 교과목 운영에 적합한 한국어교육기관을 확보하고, 학생(수강생)들에게 일정 시간 이상 한국어 강의를 참관하고 실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장 경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학생(수강생)들에게 현장 경험 지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실습 기관의 적합성'이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구성 중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강의실습이나 현장 강의참관)이 가능한 한국어교육 실습 현장 범위에 부합하는가를 의미한다.
- (2) '실습 교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 (3) '강의실습'이란 실습생 모두가 담당 교수(실습 기관의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의 지도하에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강의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4) '강의참관'이란 실습 교과목 수강생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사 언어(지시적 언어와 비지시적 언어), 투입된 교수·학습 자료, 학생들의 활동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실습' 현장의 범위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를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1. 재단법인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작성 양식

<표 1-2-1> 실습 협력 체결 기관 현황

유형		학기/ 기수	실습 협력 체결 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체 학급 수	협력 체결 일자	강의 실습 일자	강의 참관 일자	한국어교육 경력인정 기관여부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2015-1										
		2015-2										
		2016-1										
		2016-2										
	7) 온라인	2015-1										
		2015-2										
		2016-1										
		2016-2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2016-1										
		2016-2										
	9) 온라인	2016-1										
		2016-2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교과목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계절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정규 학기 외에 '2017-여름계절'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종강일 2월 8월 기준으로 작성하되 개설한 과목을 모두 작성한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7-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7-봄'과 같이 쓸 수 있다. 단, 학기별 혹은 기수별로 강의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양식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2) '전체 학급 수'는 실습 협력 체결 기관에서 강의참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협력 체결 기관의 전체 학급 수를 기입한다.
- (3) '강의실습 일자'에는 강의실습을 한 날짜를 기입한다. 그룹별로 강의실습 일자가 다른 경우는 강의실습 일자 옆에 괄호를 넣고 그룹을 표시한다.
예) 2017.3.14.~2017.3.17.(1그룹), 2017.3.21.~2017.3.24.(2그룹)
- (4) '강의참관 일자'에는 강의참관을 한 날짜를 기입한다. 그룹별로 강의참관 일자가 다른 경우는 강의참관 일자 옆에 괄호를 넣고 그룹을 표시한다.
예) 2017.3.14.~2017.3.17.(1그룹), 2017.3.21.~2017.3.24.(2그룹)
- (5)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여부'에는 협력 체결 기관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해당되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타 기관과 협력 시 실습 협력 기관 체결 양해 각서 혹은 협조 공문(단, 양쪽 기관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습'과 관련한 협약 내용이 반드시 기술되어 있는 양해 각서여야 함)
- (2) 부속 기관과 협력 시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협조 공문
- (3) 협력 체결 기관장의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확인서
- (4) 협력 체결 기관이 용어의 정의(5)에 제시된 실습 현장 범위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국어원 현장 실습 협약서(예시) 자료 참고

◎ 평가의 주안점

- (1)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실습 현장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한다.
- (2) 실습 협력 체결 기관과의 협력 체결시기가 실습 이전 시기인지를 확인한다.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용어의 정의

- (1) ‘현장 경험’이란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말한다.
- (2) ‘강의참관’은 한국어교육이 일어나는 실제 현장에서 한국어 강의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강의참관 인원은 참관하는 한 교실에 5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강의참관 시수’는 관찰하는 데 참여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 한 차시 수업을 1시수로 간주한다.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는 강의참관 대상 인원 1인당 강의참관 시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3) ‘강의실습’이란 실습생이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강의실습 시수’는 실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한 차시 수업을 1시수로 간주한다.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의 지도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강생은 실습한 기관에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 실습, 해외 인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있어야만 실습으로 인정된다.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강의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현지의 현장 실습 지도자가 현장 경험만 제공하는 경우 국내 교수자로부터 사전, 사후지도가 있으면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4) ‘현장 경험 참여율’은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 참여율을 말한다.

◎ 작성 양식

1) 강의참관 시수 및 강의참관 참여율

<표 1-2-2a> 강의참관 시수 및 강의참관 참여율 현황

유형			2014-1			2016-2			강의참관 참여율 $\frac{(b1+\dots+b6)}{(a1+\dots+a6)}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dots+c6)/6$
			강의참관 이수자 수 (a1)	강의참관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	강의참관 이수자 수 (a6)	강의참관 학생 수 (b6)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6)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참관 참여율 $\frac{(b1+b2)}{(a1+a2)}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c2)/2$
			강의참관	강의참관	1인당	강의참관	강의참관	1인당		

		이수자 수 (a1)	학생 수 (b1)	강의참관 시수 (c1)	이수자 수 (a2)	학생 수 (b2)	강의참관 시수 (c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참관 참여율 $\{(b1)/(a1)\}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
		강의참관 이수자 수 (a1)	강의참관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2) 강의실습 시수 및 강의실습 참여율

<표 1-2-2b> 강의실습 시수 및 강의실습 참여율 현황

유형		2014-1			...	2016-2			강의실습 참여율 $\{(b1+\dots+b6)/(a1+\dots+a6)\}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dots+c6)/6$
		강의실습 이수자 수 (a1)	강의실습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	...	강의실습 이수자 수 (a6)	강의실습 학생 수 (b6)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6)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실습 참여율 $\{(b1+b2)/(a1+a2)\}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c2)/2$
		강의실습 이수자 수 (a1)	강의실습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	강의실습 이수자 수 (a2)	강의실습 학생 수 (b2)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실습 참여율 $\{(b1)/(a1)\}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실습 시수
		강의실습 이수자 수 (a1)	강의실습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실습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 기관이 다수일 경우 여러 개의 표로 작성할 수 있다.

- (2) '강의참관 이수자 수'란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을 이수한 자의 수를 기입하고, 비학위과정은 해당 기수 수강자 전체 수를 기입한다.
- (3) '강의참관 이수자 수'는 강의참관 기관별로 강의참관에 참여한 학생(이수자) 수를 기입한다.
- (4) '1인당 강의참관 시수'에는 해당 학기의 전체 강의참관 시수를 강의참관 이수자 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강의참관 시수가 400시간이고 강의참관 이수자 수가 50명인 경우 8로 기입한다.
- (5) '강의참관 참여율'은 강의참관 이수자 수의 합(a_1+a_2 혹은 $a_1+a_2+\dots+a_6$)을 강의참관 이수자 수의 합(b_1+b_2 혹은 $b_1+b_2+\dots+b_6$)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기입한다.
- (6)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는 1인당 강의참관 시수의 합(c_1+c_2 혹은 $c_1+c_2+\dots+c_6$)을 2(혹은 6)로 나눈 값을 기입한다.
- (7) '1인당 강의실습 시수'에는 해당 학기의 전체 강의실습 시수를 강의실습 이수자 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강의실습 시수가 100시간이고 강의실습 학생 수가 50명인 경우 2로 기입한다.
- (8) '전체 강의실습 이수자 수'에는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 이수자 수를 기입하고, 비학위과정은 해당 기수 수강자 전체 수를 기입한다.
- (9) '강의실습 참여율'은 '참여 학생 수(b)'를 '전체 강의실습 이수자 수(a)'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기입한다.
- (10) '강의실습 일자'에는 강의실습을 한 날짜를 기입한다. 그룹별로 강의실습 일자가 다른 경우는 강의실습 날짜 옆에 괄호를 넣고 그룹을 표시한다.
예) 2016.3.14.(1그룹), 2016.3.15.(2그룹)

◎ 비치 자료

- (1) 학기별(기수별)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참여자 명단
- (2) 학기별(기수별) 강의실습 계획서 및 시간표
- (3) 강의참관 및 실습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국립국어원 양식)' (단, 현장 경험 시수가 명기된 자료)
- (4) 현장실습 지도 관리부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 시간이 실습 교과목 전체 시간의 5분의 1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5주 3학점인 경우, 실습 과목의 현장 경험 시간은 9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여야 한다.
- (2) 강의참관과 강의실습 모두 시행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3) 강의참관 인원이 5명을 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율

◎ 용어의 정의

- (1) ‘현장 경험 보고서’란 학습자가 강의를 관찰(강의참관)하거나 강의실습을 하면서 기록한 ‘강의참관 일지(국립국어원 양식)’, ‘강의실습 일지(국립국어원 양식)’를 의미한다. 현장 경험 보고서 양식에는 장소, 기간, 횟수, 내용 및 평가, 소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장 경험 보고서로는 강의참관 일지(혹은 강의참관 보고서), 강의실습 일지(혹은 강의실습 보고서)가 해당된다.

◎ 작성 양식

<표 1-2-3a>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 현황 (강의참관)

유형		2014-1		...	2016-2		강의참관일지 작성율 $\frac{\{(b1+\dots+b6)\}}{(a1+\dots+a6)} \times 100$
		강의참관 이수자 수 (a1)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1)	...	강의참관 이수자 수 (a6)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6)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참관 일지 작성율 $\frac{\{(b1+b2)\}}{(a1+a2)} \times 100$
		강의참관 이수자 수 (a1)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1)	강의참관 이수자 수 (a2)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참관 일지 작성율 $\frac{\{(b1)\}}{(a1)} \times 100$
		강의참관 이수자 수 (a1)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표 1-2-3b>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 현황 (강의실습)

유형		2014-1		...	2016-2		강의실습 일지 작성율 $\frac{\{(b1+\dots+b6)\}}{(a1+\dots+a6)} \times 100$
		강의실습 이수자 수 (a1)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1)	...	강의실습 이수자 수 (a6)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6)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실습 일지 작성율 $\frac{\{(b1+b2)\}}{(a1+a2)} \times 100$
		강의실습 이수자 수 (a1)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1)	강의실습 이수자 수 (a2)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실습 일지 작성율 $\frac{\{(b1)\}}{(a1)} \times 100$
		강의실습 이수자 수 (a1)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
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
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 (2) '현장 경험 보고서' 양식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양식 5】,
【양식 6】을 활용한다.
- (3) '강의참관/강의실습 이수자 수'에는 해당 학기(기수)별로 강의참관/강의실습
에 참여한 총 학생 수를 기입한다.
- (4)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 제출 부수'에는 제출된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의
총 부수를 기입한다. 한 명이 낸 일지가 여러 개라도 한 부로 계산한다.

- (5)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 작성률’에는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 제출 부수 (b)’의 합을 ‘강의참관/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a)’의 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학기(기수)별 강의참관/강의실습 참여 명단
- (2) 학기(기수)별 제출된 현장 경험 보고서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 보고서가 없을 경우 F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실제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모의수업(한국 학생이 학생 역할을 하거나 외국인 학생이 학생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 수업이 아닌 수업)은 강의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용어의 정의

- (1)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이란 현장 경험 지도 내용이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충실성 판단은 현장 경험 지도율과 현장 경험 지도 현황에 따른다.
- (2) ‘현장 경험’이란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의미한다.
- (3) ‘현장 경험 지도’란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가 현장 경험 참가자에게 적절한 사전지도와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강의참관 사전지도’에는 강의참관의 목적, 사전준비, 강의참관에 대한 유의사항과 강의참관 일지 작성 방법, 참관 대상 강의 및 수강생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 ‘강의참관 사후지도’에는 강의참관 후 느낀 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참관한 강의에 대한 담당 강의 교수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이 포함된다.
- (5) ‘강의실습 사전지도’에는 강의실습을 교안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와 강의실습 참가자가 작성한 교안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고 ‘강의실습 사후지도’에는 강의실습 후 느낀 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강의실습 참가자에 대한 평가와 조언 등이 포함된다.

◎ 작성 양식

<표 1-2-4a> 현장 경험 지도율 (사전지도율)

유형		2014-1		2014-2		...		2016-2		사전지도율 $\{(b1+\dots+b61)/\}$ $(a1+\dots+a6)\times 100$
		총 현장 이수자 수 (a1)	사전지도 학생 수 (b1)	총 현장 이수자 수 (a2)	사전지도 학생 수 (b2)	...	총 현장 이수자 수 (a6)	사전지도 학생 수 (b6)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사전지도율 $\{(b1+b21)/\}$ $(a1+a2)\times 100$
		총 현장 이수자 수 (a1)	사전지도 학생 수 (b1)	총 현장 이수자 수 (a2)	사전지도 학생 수 (b2)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사전지도율 $\{(b1)/(a1)\}\times 100$
		총 현장 이수자 수 (a1)	사전지도 학생 수 (b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표 1-2-4b> 현장 경험 지도율 (사후지도율)

유형		2014-1		2014-2		...		2016-2		사후지도율 $\{(b12+\dots+b62)/\}$ $(a1+\dots+a6)\times 100$
		총 현장 이수자 수 (a1)	사후지도 학생 수 (b12)	총 현장 이수자 수 (a2)	사후지도 학생 수 (b22)	...	총 현장 이수자 수 (a6)	사후지도 학생 수 (b62)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사후지도율 $\{(b12+b22)/\}$ $(a1+a2)\times 100$
		총 현장 이수자 수 (a1)	사후지도 학생 수 (b12)	총 현장 이수자 수 (a2)	사후지도 학생 수 (b22)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사후지도율 {(b12)/(a1)}x100
	총 현장 경험 이수자 수 (a1)	사후지도 학생 수 (b12)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1-2-4>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 현황

유형	학기/ 기수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							
		사전지도				사후지도			
		담당 교수자	소속	직위	사전 지도 일자	담당 교수자	소속	직위	사후 지도 일자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2015						
2016									
7) 온라인		2015							
		2016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2016							
		2016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계절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정규 학기 외에 '2016-계절(여름)'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 (2) '표 1-2-4a' 현장 경험 지도율 (사전지도율)과 '표 1-2-4b' 현장 경험 지도율 (사후지도율)에는 강의참관에 참가한 학생 수와 강의실습에 참가한 학생 수를 합산하여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사전지도 학생 수 또는 사후지도

학생 수를 기입하고 사전지도율 또는 사후지도율을 계산하여 작성한다.

- (3)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직위, 사전지도 일자와 사후지도 일자를 기입한다. 사전지도 일자와 사후지도 일자가 특정일이 아닌 어떤 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기간을 기입한다.
- (4) '현장 경험 지도 시간'은 현장 경험 지도에 사용된 시간을 적되, 1시간 단위로 기입한다. 이 때 기본 50분 내외 수업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5) '현장 경험 참가자 1인당 지도 횟수'에는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가 학생(수강생)의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지도한 횟수를 적는다.

◎ 비치 자료

- (1) 해당 학기(기수)의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계획서
- (2) 학기(기수)별 현장 경험 사전지도를 실시한 실제 자료
- (3) 학기(기수)별 현장 경험 사후지도를 실시한 실제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에 대한 적절한 사전지도 및 사후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2) 사전 사후 지도가 별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용어의 정의

- (1)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이란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 담당 교수자가 교안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 참가자가 구성한 교안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하는가를 의미한다.
- (2) '교안 작성'이란 교수·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안에는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 학습 대상, 교수·학습 활동 단계별 내용과 소요 시간 및 지도상의 유의점, 강의 자료 등이 포함된다.

◎ 작성 양식

<표 1-2-5> 교안 작성 지도 현황

유형		2014-1		...	2016-2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 (a1+a2+...+a6)/6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1)		...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6)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6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 (a1+a2)/2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1)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 (a1+a2)/2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1)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2)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실습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1-2-5> 교안 작성 지도 담당 교수자 현황

유형		학기/기수	교안작성 지도 담당 교수자		
			담당 교수자	소속	직위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사이버 대학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2016			
	7) 온라인	2016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2016			
	9) 온라인	2016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실습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비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 도의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 (2)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에는 담당 교수자가 학생(수강생)의 교안 작성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지도한 횟수를 적는다.
- (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등의 교안 작성 지도는 1회에 한하여 인 정한다.

◎ 비치 자료

- (1)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안내자료
- (2)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차시별 지도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교안 작성 지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2. 교원 · 강사 영역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전임교원/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기준 대비 확보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전임교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1년에 1과목 이상 맡고 있는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단, 연구년, 교환교수, 병가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외국의 대학 등에서 교환교수 또는 방문교수로 와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3) 전임교원은 '학위과정 전임교원', '비학위과정 전임교원', '학점은행제 전임교원'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전임교원은 다음 (4), (5), (6)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

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5) 비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 받은 교원 또는 해당 대학 총장 발령의 전일제 근무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각종 수당 외에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 받는 교원
- (6) 학점은행제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학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당해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양성 관련 학과(전공)의 강의와 운영만을 담당하고 당해 기관 내 타 학과(전공) 또는 타 기관의 강의와 운영을 겸임(겸직)하지 않는 교원

◎ 작성 양식

<표 2-1-1> 전임교원 확보율

유형		학생 수 (A)	전임교원 확보 기준 (B)	전임교원 수 (C)	전임교원 확보율 [(C/B)×100]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B=A/30)		
		2) 대학원	(B=A/30)		
		3) 특수대학원	(B=A/40)		
	사이버 대학	4) 학부	(B=A/200)		
		5) 특수대학원	(B=A/40)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B=A/100)		
		7) 온라인	(B=A/200)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B=1인)		
	9) 온라인		(B=1인)		

<부록표 2-1-1> 전임교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학과(전공)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기관 유형별 전임교원 수(휴직교원 포함)는 평가 시점 직전 학기(회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학생 수는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정원 외 입학자 제외),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회기 포함 8개 회기(2년간) 입학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별 총 정원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학생 수 산출 기준

구분		산출공식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특수대학원의 경우 야간제와 계절제 특수대학원의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2) 전임교원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전임교원을 모두 포함한다.
- (3)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학과(전공) 및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달리 한다.
 - 일반대학 학부 및 대학원: 학생 30명당 전임교원 1인
 - 특수대학원: 학생 40명당 전임교원 1인
 - 사이버대학: (학부)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인
(대학원) 학생 40명당 전임교원 1인
 - 비학위과정: (오프라인) 학생 100명당 전임교원 1인
(온라인)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인
 -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전공) 당 1인
(온라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전공) 당 1인
 - 전임교원 확보기준 = 학생 수/n, 소수점 이하는 모두 올림하여 00명으로 기입한다(예, 4.01은 5명)
- (4)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전임교원 확보기준)×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5) 한국어교원 양성 관련 학과(전공)가 동일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모두 운영되는 경우에 동일한 전임교원을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중복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중 하나에서만 계산하거나 1/n로 계산한다.

◎ 비치 자료

- (1) 전임교원 명부
- (2) 재직증명서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3)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4) 학위과정에서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5) 재학생 명부 등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 평가의 주안점

- (1) 산정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전임교원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1-4영역(5영역 제외)의 전공과목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강사 중에서 전공과목 강사로 간주할 수 있는 강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전공과목 강사'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① 전공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단, 팀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의 경우에는 책임 강사가, 온라인 운영 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강의 개발자와 관리교수(강의 운영 책임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교수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전공과목 강사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전공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을 말한다.

◎ 작성 양식

<표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유형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 (A)	전공과목 강사 수 (B)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B/A)×100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4) 학부		

	대학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2-1-2> 전공과목 강사 명단

		유형	이름	소속 및 학과(전공)	직위	학력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타 기관에서 직접 강의한 전공과목의 수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 작성 요령

- (1)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와 '전공과목 강사 수'는 평가 시점 전년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1년간) 개설된 과목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부록표 2-1-2> 전공과목 강사 명단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 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1-4영역(5영역 제외) 전공과목 강사를 모두 기

입한다.

- (3)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 수/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전공과목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2) 전공과목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평가의 주안점

- (1) 전공과목 강사 인정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강사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2) 타 기관 재직증명서류도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용어의 정의

- (1)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이란, 학과(전공) 및 기관별로 개설된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중 대학이나 기관 내 전공과목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시수 비율을 의미한다.
- (2) 강의시수에는 계절학기에 개설한 강의도 포함한다.
- (3) ‘전공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을 말한다.

◎ 작성 양식

<표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유형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A)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B)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B/A)×100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2-1-3>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수 및 강의시수

유형		이름	소속	학과(전공)	전공과목 수	전공과목 강의시수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총 강의시수는 평가 시점 직전 2학기(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1년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수는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개수를 작성한다.
- (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는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중 전공과목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시수를 작성한다.
- (4)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

한다.

- (5) <부록표 2-1-3>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및 강의시수 작성 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과(전공)'은 해당 기관을 기입하며 '전공과목 수', '전공과목 강의시수'는 그 기관에서 강의한 과목과 강의시수를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평가 시점 직전 2학기(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1년간))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

◎ 평가의 주안점

- (1)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를 확인하여 강좌 개설 시기와 종료 시기의 담당 교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2)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전공과목 수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부적절함은 척도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부: 학기당 4과목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학기당 2과목
 - 비학위과정: 기수당 3과목
 - 학점은행제: 학기당 4과목(18시간)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3영역 과목을 타당한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강사와 5영역 과목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와 현장 실습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의 3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중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영역) 과목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 (3) 전임교원은 '학위과정 전임교원', '비학위과정 전임교원', '학점은행제 전임교원'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전임교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5) 비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 받은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각종 수당 외에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 받는 교원
- (6) 학점은행제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학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당해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양성 관련 학과(전공)의 강의와 운영만을 담당하는 교원

◎ 작성 양식

<표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유형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 (A)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A)×100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학과(전공)	최근 3년간 직접 강의한 3영역 과목명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휴직교원 포함)는 평가 시점 직전 2학기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1년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원칙적으로 학과(전공) 및 기관 별 1인으로 한다.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인정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 박사학위를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경우

-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및 저술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인 경우
- ③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경우
- ※ 연구실적은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1건을 100%로 산정한다.

※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

-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 ② 국제 SCI급/SCOPUS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이공계-SCI, SCIE, 사회과학-SSCI, 인문예술-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 ③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지: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SCI급/SCOPUS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 ④ 저·역서: ISBN에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편저), 초·중·고 교과서 집필 등은 제외됨.
- ⑤ 논문게재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주저자=2/(n+2), 교신저자=2/(n+2), 공동저자=1/(n+2),
 - 총저자수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 ⑥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1/n
 - 총저자수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적용 지침은 평가시행년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 (4) 3영역 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에서 명시한 대로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한국어사, 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자면,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등이 있다.

- (5)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100)
- (6) 한국어교원 양성 관련 학과(전공)가 동일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모두 운영되는 경우에 동일한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을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중복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중 하나에서만 계산한다.

◎ 비치 자료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부
- (2) 재직증명서 등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4) 연구실적 200%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관련 서류
- (5)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경력 증명서

◎ 평가의 주안점

- (1) 전공과목 전임교원 중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으로 산정된 전임교원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강사 중에서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로 간주할 수 있는 강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 작성 양식

<표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유형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 (A)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 (B)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B/A)×100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3영역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명단

유형		이름	소속 및 학과(전공)	직위	학력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3영역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와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는 평가 직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부록표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명단에는 3영역 과목 전공 일

치 강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를 모두 기입한다.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전임 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평가의 주안점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인정 기준에 따라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이란,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 5영역을 담당하기에 적합한가를 의미한다.
 (2)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란, 실습 교과목 담당 교·강사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을 의미한다.
 (3)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수강생을 관리하는 교·강사를 의미한다.
 (4) '현장 실습 지도자'란,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교·강사 중 한국어교육 실습 수강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교·강사를 의미한다.

◎ 작성 양식

<표 2-2-3a>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

유형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수		자격과 경력 충족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비율 (B/A)×100
			총 교수자 수 (A)	자격과 경력 충족 교수자 수 (B)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4) 학부			

	대학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표 2-2-3b>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

유형			현장 실습 지도자 수		자격과 경력 충족 현장 실습 지도자 비율 (B/A)×100
			총 교수자 수 (A)	자격과 경력 충족 지도자 수 (B)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2-2-3a>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학력 (박사수료 /박사졸업)	한국어교육 경력 (연 및 시간 수)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2-2-3b> 현장 실습 지도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	한국어교육 경력(연 수)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4) 학부				

	대학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한국어교육 경력은 평가 시점 직전 학기 또는 가장 최근 1학기에 실시된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경력으로 산정한다.
- (2) 한국어교육 경력 연 수 및 시간 수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한 것을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 수 및 시간만을 기입한다.
- (3) 실습 교과목에서 담당 교수 및 강사 외에 한국어교육 경력이 많은 한국어교원이 협력수업(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교안 작성 및 수업 운영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협력수업을 하는 한국어교원도 추가하여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 (4)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인정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
 - ②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한다.
- (5)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②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③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 비치 자료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학위기 또는 학위 증명서
- (2)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3) 현장 실습 지도자의 한국어교원자격증
- (4) 현장 실습 지도자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5)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상의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관리부

◎ 평가의 주안점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 정확히 작성·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영역별 평가 지표 및 평가 척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척도	배점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00)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⁸⁾	1단계 심사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1단계 심사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100) ⁹⁾	A: 0%	100
				F: 0% 초과	0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100)	A: 100%	100
				B: 95% 이상 ~ 100% 미만	75
				C: 90% 이상 ~ 95% 미만	50
		D: 85% 이상 ~ 90% 미만		25	
		F: 85% 미만	0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300)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60)	A: 100%	60
				B: 85% 이상 ~ 100% 미만	45
				C: 70% 이상 ~ 85% 미만	30
				D: 55% 이상 ~ 70% 미만	15
				F: 55% 미만	0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60) ¹⁰⁾	<강의 참관 참여율>				
	A: 100%		60		
	F: 100% 미만		0		
	<강의실습 참여율>				
	A: 100%		60		
F: 100% 미만	0				
※ 강의 참관 또는 강의실습 둘 중 하나만 시행해도 인정한다.					

				※ 강의 참관 또는 강의실습 모두 실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해당 척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산정한다.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60)	<강의 참관 보고서 작성률>	
				A: 100%	60
				B: 85% 이상 ~ 100% 미만	45
				C: 70% 이상 ~ 85% 미만	30
				D: 55% 이상 ~ 70% 미만	15
				F: 55% 미만	0
				<강의실습 보고서 작성률>	
				A: 100%	60
				B: 85% 이상 ~ 100% 미만	45
				C: 70% 이상 ~ 85% 미만	30
				D: 55% 이상 ~ 70% 미만	15
				F: 55% 미만	0
				※ 강의 참관 또는 강의실습 둘 중 하나만 시행해도 인정한다. ※ 강의 참관 또는 강의실습 모두 실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해당 척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산정한다.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60)	<사전지도율>
			A: 100%		30
			B: 85% 이상 ~ 100% 미만		22.5
			C: 70% 이상 ~ 85% 미만		15
			D: 55% 이상 ~ 70% 미만		7.5
			F: 55% 미만		0
			<사후지도율>		
			A: 100%		30

2.	교원·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00)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60) ¹¹⁾	B: 85% 이상 ~ 100% 미만			22.5
						C: 70% 이상 ~ 85% 미만			15
						D: 55% 이상 ~ 70% 미만			7.5
						F: 55% 미만			0
						A: 4회 이상			60
						B: 3회			45
						C: 2회			30
						D: 1회			15
						F: 0회			0
				2.1.1.	전임교원 확보율 (100)	A: 100%			100
						B: 85% 이상 ~ 100% 미만			75
						C: 70% 이상 ~ 85% 미만			50
						D: 55% 이상 ~ 70% 미만			25
						F: 55% 미만			0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50)	A: 100%	
B: 85% 이상 ~ 100% 미만			37.5						
C: 70% 이상 ~ 85% 미만			25						
D: 55% 이상 ~ 70% 미만			12.5						
F: 55% 미만			0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50) ¹²⁾		학부/대학원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				
		A	70% 이상	40% 이상	30% 이상	50			
		B	60% 이상 ~ 7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25% 이상 ~ 30% 미만	37.5			
		C	5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25% 미만	25			

					D	4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20% 미만	12.5		
					F	40% 미만	10% 미만	15% 미만	0		
					※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전공과목 수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조정한다.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부: 학기당 4과목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학기당 2과목 - 비학위과정: 기수당 3과목 - 학점은행제: 학기당 4과목(18시간)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300)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100)	A: 100% 이상				100		
					F: 100% 미만				0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100)	A: 100%				100		
					B: 85% 이상 ~ 100% 미만				75		
					C: 70% 이상 ~ 85% 미만				50		
					D: 55% 이상 ~ 70% 미만				25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100)	F: 55% 미만				0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비율>						
					A: 100%				50		
					B: 85% 이상 ~ 100% 미만				37.5		
					C: 70% 이상 ~ 85% 미만				25		
					D: 55% 이상 ~ 70% 미만				12.5		
		F: 55% 미만				0					
		<현장 실습 지도자 비율>									
		A: 100%				50					
		B: 85% 이상 ~ 100% 미만				37.5					
		C: 70% 이상 ~ 85% 미만				25					

						D: 55% 이상 ~ 70% 미만	12.5
						F: 55% 미만	0

- 8)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지표는 현재 국립국어원 교과목 심사의 평가 항목으로서 반드시 '적합'한 교과목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1단계 심사' 항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지표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훈련된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립국어원 심사로 유지하거나 최소한 평가위원들 간의 불일치 판정이 있을 시 반드시 국어원의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9)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은 현재 국어원의 자격 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필수이수 학점(시간)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이 지표의 척도는 100% 충족 혹은 미충족 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 10)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에서 '강의 참관'과 '강의실습' 모두 시행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해당 척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산정한다. 또한 척도에서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는 필수 지표이므로 100% 충족하거나 미충족 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 11)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은 설문조사 시 'A: 8회 이상', 'B: 6-8회 미만', 'C: 4-6회 미만', 'D: 2-4회 미만', 'F: 2회 미만'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4회 미만으로 응답하여 척도를 조정하였다.
- 12)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은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 유형별로 척도를 달리하였다.

VII. 활용 방안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지정제(가칭) 시행을 위한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모형으로 평가의 주체를 중심으로 단계별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모형,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모형은 1단계 심사를 거쳐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로 구성함을 기본으로 한다. 평가 대상은 첫째,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단기 양성기관이다. 1단계 심사에서 평가 항목 담당 주체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 절차와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1. 평가 유형에 따른 평가 절차(안)

1) 1안: 1단계 심사 국어원과 평가위원 협업형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의 절차는 1단계 심사를 국어원과 평가위원단으로 구성하여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신규로 개설할 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국어원에서 하고 교육과정 운영 실적에 대한 심사는 평가위원단이 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증 평가 도구의 평가 지표 중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은 필수 평가 지표일 뿐 아니라 판단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 심사에 해당하는 단계를 필수 단계 심사로 1단계로 설정하였으나 이 지표에 대한 평가를 국어원과 평가위원의 협업 형태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내용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시행해온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운영에 관련된 평가로 교과목 심사는 지금까지 국어원 실무 담당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담당

자들이 부재할 경우 대체할 인력을 양성, 훈련할 필요성 측면에서 이 유형은 향후 교과목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 시행에 대비하여 국어원 실무 담당자들의 평가 체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분	1단계 심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 단기 양성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자료 제출 기관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예정 신규 교과목 및 교육과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 실습 교과목 운영의 적절성 ○ 전임교원/강사 확보 ○ 3/5영역 전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관련 증빙 자료 확인
평가 결과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¹³⁾	-	우수, 보통, 미흡
담당	국립국어원	평가위원단	평가위원단	국립국어원

[도표 VII-1] 평가 단계 (1안)

2) 2안: 1단계 심사 국어원 주도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지표일 뿐 아니라 정량 지표가 아닌 질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표에 해당한다. 이 지표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은 국어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넘어서기 힘들 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원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13) 1단계 평가위원단의 평가 결과 ‘적합/부적합’에서 불일치하거나 판단이 상충되는 경우 국어원측 심사단에 의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판단의 노하우를 갖춘 국어원 담당자들에 의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단,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통해 지정제(가칭)를 도입, 시행할 경우 국어원이 평가 체제 운영, 관리의 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도표 V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 심사의 주도는 국어원이 하는 유형이다.

구분	1단계 심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 단기 양성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자료 제출 기관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명 및 전공명 적합성 - 독립된 학과(전공) 개설 여부 포함 평가 ○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 실습 교과목 운영의 적절성 ○ 전임교원/강사 확보 ○ 3/5영역 전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관련 증빙 자료 확인
평가 결과	적합/부적합	-	우수, 보통, 미흡
담당	국립국어원	평가위원단	국립국어원

[도표 VII-2] 평가 진행 절차 (2안)

1.2. 평가 방식

-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각 지표별로 척도에 근거하여 A~F 등급을 부여함.
- 지표별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
- 총점을 기초로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판단함.
 - 최종 등급 판단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1) 절대 평가 유형(1안)

- 절대 평가 유형(1안)을 채택할 경우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최소한의 기준과 모범적인 최고 기준을 상정하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평가 지표에 대한 합의된 수준이 도출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 유형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추후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1주기에서 시도하기보다 평가 시행 이후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상대 평가 유형(2안)

- 각 지표별 등급 점수의 총 합산 점수에 따라 상위 30%, 상위 30%~ 70% 이상, 상위 70% 미만 등 세 개 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전체 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하는 방식임.
- 이 유형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1주기 평가 시 채택해야 할 적절한 유형이며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운영 현황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물론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함.

[표 VII-1] 평가 방식(안)

1안 (절대평가)		2안 (상대평가)	
등급	점수 기준(1,000점 만점)	등급	비율 기준
우수	800점 이상	우수	상위 30%
보통	800점 미만~600점 이상	보통	상위 30% 미만 ~ 70% 이상
미흡	600점 미만	미흡	상위 7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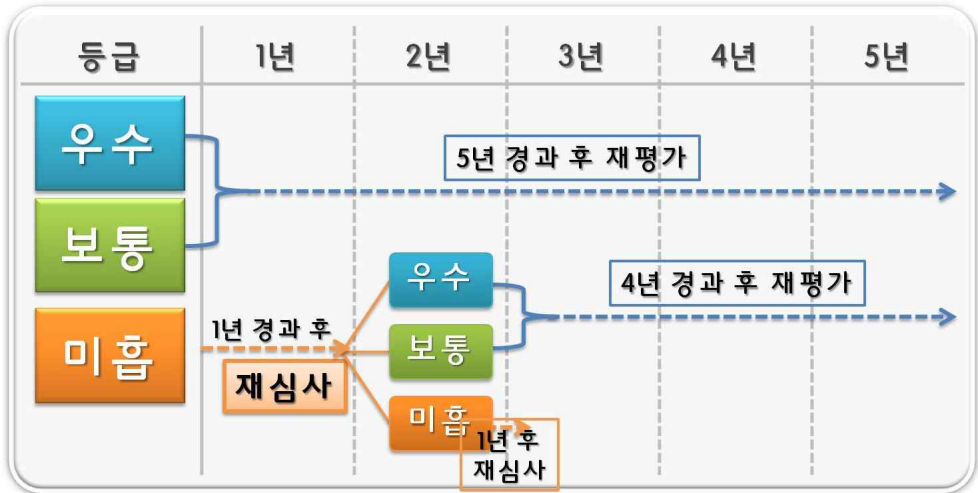
1.3. 평가 주기별 운영 모형(안) 및 평가 결과 활용

1.3.1. 평가 주기별 운영 모형(안)

1) 1안: 5년 주기형

-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기관 모두 5년 주기로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임.
-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1차년도, 비학위과정 및 학점은행제는 2차년도에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5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방식임.
- 해당 주기 1차년도와 2차년도 평가 결과에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1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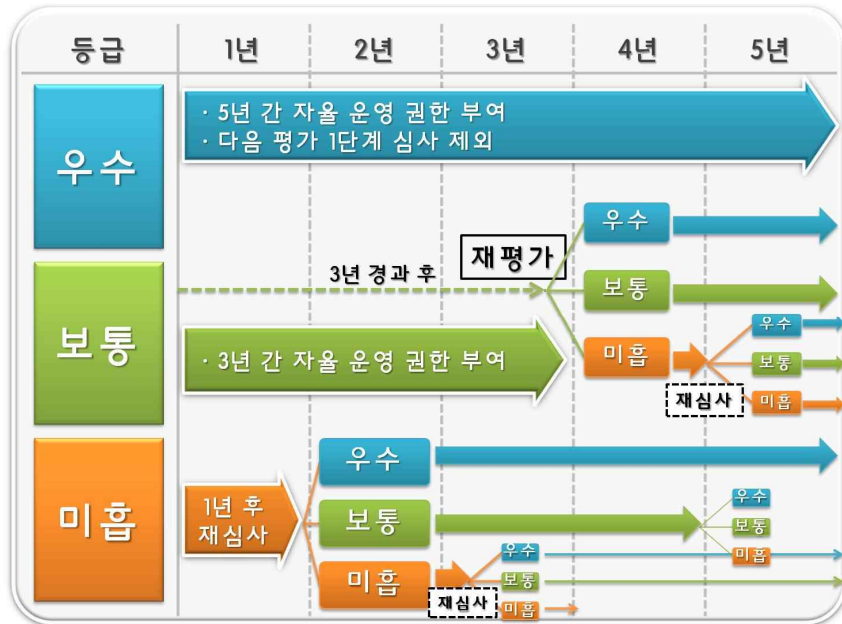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한 번 더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음.



[도표 VII-3] 5년 주기형 평가 진행 절차 (1안)

2) 2안: 5-3-1 유형(평가 결과 차등 적용형)

- 1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주기를 차별화하는 방식임.
-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는 5년 주기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판정을 받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고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1년 후 재심사를 거쳐 다시 '우수', '보통',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이 모형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1주기 평가 1차년도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부터 개별 적용이 되므로 매우 복잡한 주기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 이르러 고려할 만한 유형임.



[도표 VII-4] 5-3-1 유형 평가 진행 절차 (2안)

1.3.2. 평가 결과 활용

1) 1안

- ‘우수’ 등급의 기관은 다음 평가 시 1단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우수 평가 기관 증서와 누리집 내 우수 기관 소개를 제공함.
- ‘보통’ 등급의 기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함.
- ‘미흡’ 등급의 기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며 1년 후 재심사를 실시함.

[표 VII-2] 평가 결과 활용방안 (1안)

등급	평가주기	후속 조치(안)
우수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평가 시 1단계 심사 제외 ■ 우수 평가 기관 증서 수여 ■ 누리집에 우수 기관 소개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후 재심사

2) 2안

- ‘우수’ 등급의 기관은 5년간 자율 운영 권한을 부여하며 다음 평가 시 1단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함께 우수 평가 기관 증서와 누리집 내 우수 기관 소개를 제공함.
- ‘보통’ 등급의 기관은 3년 간 자율 운영 권한을 부여함.
- ‘미흡’ 등급의 기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며 1년 후 재 심사를 실시함.

[표 VII-3] 평가 결과 활용방안 (2안)

등급	평가주기	후속 조치(안)
우수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자율 운영 권한 부여 ■ 다음 평가 시 1단계 심사 제외 ■ 우수 평가 기관 증서 수여 ■ 누리집에 우수 기관 소개
보통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간 자율 운영 권한 부여
미흡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후 재심사

1.4. 현 교원자격제도와 연계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 평가 지표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과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1단계 평가 항목)은 현행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와 유사하고 정성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원에서 평가하되 장기적으로는 평가단의 외부 전문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 시범평가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평가하고 일부 교과목만 임의로 선정하여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을 판정하도록 함.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최근 3년 간 개설한 모든 교과목에 대한 내용 적합성 판정이 필요함.
 - 현행 제도에서는 교과목 심사 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심사 받을 필요가 없음. 이에 따라 강의 내용 변동 등을 우려하여 모든 교과목에 대한 내용 적합성 판정 필요.

- 현장 평가에서는 기관에서 국어원에 제출한 강의계획서와 기관 누리집에 게재된 강의계획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기존 운영 기관에서 최초 평가 시점 전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교과목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2) 개인 자격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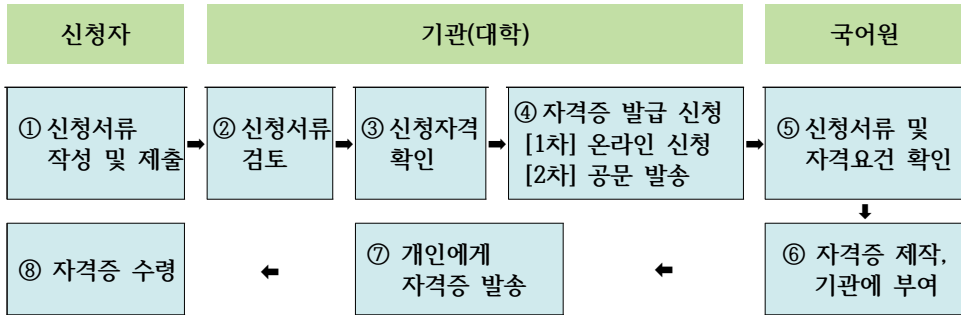
- 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과 마찬가지로 승급 대상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개인이 자격 심사 신청, 개인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야 함.
- 양성과정 이수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 후 개인이 자격 심사 신청을 하되 양성기관에 자격증 부여 후 기관에서 개인에게 자격증을 개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 학위과정 이수자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심사 신청하면 국어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인에게 자격증을 발송함.
-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교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에서 단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단체 접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 신청자가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
- 교육기관 담당자가 제출 서류 및 자격 취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
 - * 시스템 입력 정보
 - 기관 정보: 기관 유형(대학/대학원/학점은행제), 기관명, 학과명(전공명), 주소 등
 -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졸업일자), 신청 등급 및 유형 등
- 시스템 입력 후 자격 부여 신청 공문을 발송함.

* 공문 발송 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단체) 및 발급 신청자 명단 필수 첨부

- 국어원에서 신청 서류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함.
- 발급 대상자 자격증 제작, 기관에 일괄 발송함.
- 기관에서 개인에게 자격증을 개별 발송함.



[도표 VII-5] 단체 접수에 따른 자격증 발급 절차도

2. 평가 체제 운영의 기본 방향

2.1. '학점은행제 유형' 현행 심사체제 유지 필요

- 본 연구의 평가 도구에 구성된 평가 지표는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실제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한국어교원의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 향후 지정제(가칭) 도입을 통해 전문적인 한국어교원 양성 기능을 갖춘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자율적인 관리 운영 능력 등을 점검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하고자 함.
- 이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목단위 운영 방식인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지정제(가칭) 도입을 위한 평가 목적과 달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적인 관리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학점은행제 유형은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를 통한 개인 자격심사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2.2.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중심의 1주기 평가체제 운영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별 분포는 학부 60개, 대학원 115개, 학점은행제 30개, 양성과정 213개('17. 11. 기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제안한 주기별 평가 운영 모형 시행 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학점은행제의 경우 현행 자격심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비학위과정인 단기 양성과정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는 통과 관문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1주기에서는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 대상 기관의 점진적 확대

- 앞에서 제안한 평가 모형에서 '5년 주기 평가 모형(1안)'이나 '평가 주기 차등 적용형(2안)' 1주기 평가에서 모든 기관 유형별 평가 시행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 1주기 평가 1차년도에 학부와 함께 운영되는 대학원 기관 유형(특수대학원 포함)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대학원 유형(특수대학원 포함)을 평가한다면 2년간 총 175개(학부 60개, 대학원 115개) 기관을 평가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판단됨.
- 1주기 평가 시행 이후 실제 평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2주기 평가 시행에서 점진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3. 향후 과제 및 제언

3.1. 지정제(가칭) 도입 시 운영 관련 고려 사항

3.1.1. 기관 유형별 평가 운영 체제의 문제점

-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수 균형 유지 한계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유형별 분포는 학부 60개, 대학원 115개, 학점은행제 30개, 양성과정 213개('17. 11. 기준)로 구성된 기관 유형별 평가 시행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
 - 유형별 기관 수 편차가 크므로 매년 평가 대상 수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1안: 기관 유형별(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양성과정) 5년 주기 평가
 - 동일 유형별 평가 결과의 비교가 가능함.
 - 학부와 대학원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기관은 평가 항목 중 '전임교원/강사 확보율' 작성 시 타 기관보다 유리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달리 적용 시 동일 기관 유형별 평가는 불가함.

- 2안: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특정 기관 선별 평가
 - 한 기관에 다양한 유형으로 과정 개설 시 동일시기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주관 기관에서 평가 대상 수를 조절할 수 있음.
 - 학부와 대학원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기관도 타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임교원/강사 확보율' 평가 항목 적용이 가능함.
 - 기관 선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 동일 기관에 다양한 유형으로 과정을 개설한 기관 순
 - 수강생이 많이 배출되는 기관 순
 - 교육과정 개설 시기가 빠른 기관 순 등
 - 유형별로 평가 주기가 다르므로 그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1.2. 학점은행제 관련 사항

- 학위과정 중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는 1곳 이상의 기관에서 수강한

학점을 합산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일반대학(원)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움.

- 학점은행제는 별도의 교육기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점은행제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거나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국어원의 교과목 심사 및 개인 자격 심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3.1.3.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신설 기관 처리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에 대한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편제 완성 후 일정 기간¹⁴⁾이 지나지 않은 신설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비심사(1단계 심사에 한함)에 해당하는 교과목 심사 등을 국어원에서 실시해야 함.

3.1.4. 교육과정 폐지 기관 처리 방안

- 기관이 폐지될 경우 단체 접수 및 개인에게 자격증을 발송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개인이 심사를 신청하여 개인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양성과정의 경우 기관 또는 교육과정 폐지 시 이수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양성과정 이수 후, 수료증과 함께 이수증명서 발급
 - 기관 또는 교육과정 폐지 시 국어원에 공문 발송
 - 국어원에서는 수강생 이수증명서 발급 관련 회신 공문 발송 등

3.1.5. 기타 사항

- 시범 적용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실제 지정제(가칭) 도입 시 이의 신청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14) 1단계 심사 항목 중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의 작성 양식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은 3년, 비학위과정은 2년, 학점은행제는 1년으로 함.(대학원의 경우, 3년 이내에 졸업생 발생 가능. 학부 편입생의 경우, 3년 이내에 졸업생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

- 기관 및 개인에게 지정제(가칭) 도입 및 단체 접수 시행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예: 지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제작, 공문 발송 등)

3.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강승혜 외(2014)가 개발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평가 도구를 검토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여 타당성을 점검한 후 수정된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 도구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시범 적용 단계에서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대상 기관으로 기관 유형별 8곳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운영자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각 평가 지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지정제(가칭) 도입을 위한 평가 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절차 모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심사에서 ‘국어원과 평가위원 협업형’과 ‘국어원 주도형’ 두 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국어원 인력, 예산, 평가 체제 운영 관리 역량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주기 평가 단계부터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 대상 기관을 단계별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시범 적용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 인증 평가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전격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홍보하는 효과 또한 시범 적용 과정에서 얻게 되었다. 첫 단계부터 만족스러운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가위원들의 훈련, 기관의 관리 운영 수준의 기준에 대한 인식 등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평가 체제, 평가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하여 평가체제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관 평가 및 단체 접수 운영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평가 대상 기관의 다양한 운영 현황 등 자료 축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평가위원들의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수행을 위해 서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부록1.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운영 현황 조사 설문지(예)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운영현황 조사 - 학위과정(학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척도 개발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향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설문 문항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 과제팀

I-1. 다음은 귀하의 학과/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학과/전공에서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영역별 교과목을 몇 과목 개설 하였습니다습니까? (2014-1학기 ~ 2016-2학기 동안 개설한 과목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역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① 1영역						
② 2영역						
③ 3영역						
④ 4영역						
⑤ 5영역						

1-2. 귀 학과/전공에서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해 최근 3년간 개설한 교과목 중 '적합' 교과목으로 판정된 과목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 ① 적합 100%
- ② 적합 95% 이상 ~ 100% 미만
- ③ 적합 90% 이상 ~ 95% 미만
- ④ 적합 85% 이상 ~ 90% 미만
- ⑤ 적합 85% 미만

* 적합 판정 과목 비중 = (적합 과목수)/(최근 3년간 개설 과목수)×100

2-1. 영역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안 등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 ① 적합 100%
- ② 적합 95% 이상 ~ 100% 미만
- ③ 적합 90% 이상 ~ 95% 미만
- ④ 적합 85% 이상 ~ 90% 미만
- ⑤ 적합 85% 미만

3-1. 2014학년도 2월 ~ 2016년 8월 졸업생 중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는 몇 명입니까? (주전공자 수만 기입)

2014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5년 8월	2016년 2월	2016년 8월
명	명	명	명	명	명

3-2. 위의 자격 취득자 중에서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미만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 ① 0%
- ② 0% 이상 ~ 5% 미만
- ③ 5% 이상 ~ 10% 미만
- ④ 10% 이상

3-3.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해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70% 이상
- ② 65% 이상
- ③ 60% 이상
- ④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⑤ 기타: _____

4-1. 개설 교과목 중에서 교수자의 전공이 일치하는 교과목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
- ② 95% 이상 ~ 100% 미만
- ③ 90% 이상 ~ 95% 미만
- ④ 85% 이상 ~ 90% 미만
- ⑤ 85% 미만

*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전공 일치 과목 수 / 개설 과목 수) × 100

<p>* 전공 일치 판정 기준</p> <p>교수자의 전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영역의 경우 한국어교육 전공이거나 한국어교육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면 3영역 전공 일치라고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경우 ② 교과목 교수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판단은 교육 내용을 전공하였더라도 박사학위논문을 해당 전공 주제로 작성하였다면 해당 전공으로 판단함. ③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3년간 교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연구실적 200%에는 연구논문(100%), 전문서적(100%), 교과서(50%), 번역서(30%), 연구보고서(50%) 등이 포함됨. '전문서적'은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강의용 교재나 한국어 교재 등을 포함함. ④ 5영역 담당 교수자는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의 경우 전공 일치로 판단함.
--

2-2. 한 학기동안 귀 학과/전공의 1인당 평균 강의참관 시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8시수 이상
- ② 6시수 이상 ~ 8시수 미만
- ③ 4시수 이상 ~ 6시수 미만
- ④ 2시수 이상 ~ 4시수 미만
- ⑤ 2시수 미만

2-3. 귀 학과/전공의 강의실습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강의실습 참여율 = (최근 3년간 강의실습 학생수/최근 3년간 강의실습 대상 학생수)×100

2-4. 한 학기동안 귀 학과/전공의 1인당 평균 강의실습 시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8시수 이상
- ② 6시수 이상 ~ 8시수 미만
- ③ 4시수 이상 ~ 6시수 미만
- ④ 2시수 이상 ~ 4시수 미만
- ⑤ 2시수 미만

3-1. 귀 학과/전공의 강의참관일지 작성률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강의참관일지 작성률 = (최근 3년간 강의참관 참여 학생 수)/(최근 3년간 강의참관 일지 제출 부수)×100

3-2. 귀 학과/전공의 강의실습일지 작성률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강의실습일지 작성률 = (최근 3년간 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최근 3년간 강의실습 일지 제출 부수)×100

4-1. 귀 학과/전공의 현장 경험 사전지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현장 경험 사전지도율 = (최근 3년간 사전지도 학생 수)/(최근 3년간 총 현장 경험 학생 수)×100

- * '현장 경험 지도'란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가 현장 경험 참가자에게 적절한 사전지도와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의참관 사전지도'에는 강의참관의 목적, 사전준비, 강의참관에 대한 유의 사항과 강의참관 일지 작성 방법, 참관 대상 강의 및 수강생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
 - '강의실습 사전지도'에는 강의실습을 교안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와 강의실습 참가자가 작성한 교안에 대한 지도가 포함된다.

4-2. 귀 학과/전공의 현장 경험 사후지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현장 경험 사후지도율 = (최근 3년간 사후지도 학생 수)/(최근 3년간 총 현장 경험 학생 수)×100

- * '강의참관 사후지도'에는 강의참관 후 느낀 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참관한 강의에 대한 담당 강의 교수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이 포함된다. '강의실습 사후지도'에는 강의실습 후 느낀 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강의실습 참가자에 대한 평가와 조언 등이 포함된다.

5-1. 최근 3년간 귀 학과/전공의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는 한 학기에 얼마나 됩니까?

- ① 8회 이상
- ② 6회 이상 ~ 8회 미만
- ③ 4회 이상 ~ 6회 미만
- ④ 2회 이상 ~ 4회 미만
- ⑤ 2회 미만

II-1. 다음은 귀하 학과/전공의 전임교원 및 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학과/전공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전임교원 확보기준)×100

* 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 확보기준 및 학생 수 산출 기준

유형		전임교원 확보 기준	학생 수 산출 기준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학생 수/30
		2) 대학원	학생 수/30
		3) 특수대학원	학생 수/40
	사이버대학	4) 학부	학생 수/200
		5) 특수대학원	학생 수/40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

2-1. 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5% 이상 ~ 100% 미만
- ③ 70% 이상 ~ 85% 미만
- ④ 55% 이상 ~ 70% 미만
- ⑤ 55% 미만

*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 수/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100

* 전공과목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①전공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②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 학과(전공)에서 전공과목을 최근 2년 사이에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하거나 ③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단, 팀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의 경우에는 책임 강사가, 온라인 운영 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강의 개발자와 관리교수(강의 운영 책임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교수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전공과목 강사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3-1. 귀 학과/전공의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70% 이상
- ② 60% 이상 ~ 70% 미만
- ③ 50% 이상 ~ 60% 미만
- ④ 40% 이상 ~ 50% 미만
- ⑤ 40% 미만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총 전공과목 강의시수)×100

II-2. 다음은 귀하의 학과/전공에 재직 중인 3영역, 5영역 담당 전임교원 및 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학과/전공의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 교원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100% 미만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 × 100)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인정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 박사학위를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경우
 -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및 저술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우
- ③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경우

1-2. 귀 학과/전공의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0%이상 ~ 100%미만
- ③ 70%이상 ~ 85%미만
- ④ 55%이상 ~ 70%미만
- ⑤ 55%미만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 × 100

-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강사 중에서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로 간주할 수 있는 강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 ② 3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중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 ③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1-3. 귀 학과/전공의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또는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 이상
- ② 80%이상 ~ 100%미만
- ③ 70%이상 ~ 85%미만
- ④ 55%이상 ~ 70%미만
- ⑤ 55%미만

*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또는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
 = (자격과 경력 충족 교수자(지도자) 수 / 총 교수자(지도자) 수) × 100

- *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인정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
 - ②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한다.
- *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②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③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부록2. 서면 평가/현장 방문 평가 일정 및 점검 사항

□ 서면 평가/현장 방문 평가 일정 및 점검 사항

일시 및 장소	일정	상세 사항
10/12(목) 13:30	서면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소지 목록(평가편람 포함)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담당 기관 자체평가 보고서(서면 평가 자료집) ② 평가위원 매뉴얼 ③ 평가서(양식) ④ 현장 방문 평가 관련 <표> ⑤ 기타 - 평가위원의 담당 기관 유형별 매뉴얼을 숙지한다. - 기관 유형별 평가위원의 담당 영역별 비치 자료를 점검하고 확인사항 목록을 작성한다.
	현장 방문 평가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원 담당자가 피평가 기관 실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장 방문 평가단 도착 일정 등을 통지한다. 이를 평가위원들에게도 통지한다. (<표> ‘평가단 구성 및 현장 평가 예정일’ 참고) - 국어원 담당자가 피평가 기관에 평가위원 수, 평가 진행 시간 등을 사전에 통보한다. - 사전에 국어원 담당자 및 평가단장이 평가위원들과 피평가 기관까지의 교통편, 도착 시간 등을 논의한다.
10/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4 (대학원) - 기관 5 (학점은행제) - 기관 7 (비학위 과정) - 기관 8 (비학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원 담당자가 피평가 기관 실무 담당자와 도착 전 연락을 취하여 일정을 확인한다. - 평가위원은 각자 담당한 영역을 평가 매뉴얼에 따라 지표별로 확인하고 판정 내용을 평가 양식에 기재한다. - 담당 영역 2인의 평가위원이 교차 검토한다. 특히, 정성평가 지표 부분 등을 논의한다. - 평가서 끝부분의 평가위원 서명란에 확인 서명한다.
10/19(목)	- 기관 3 (대학원)	- 평가위원들은 평가에 대한 총평 혹은 의견을 종합의견서에 작성한다.
10/20(금)	- 기관 1 (학부)	- 평가 후 평가단장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서 및 종합의견서를 최종 수합하여 국어원 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11/02(목)	- 기관 6 (학점은행제)	- 평가에 사용된 자료 중 기관별 자체평가 보고서(서면자료집), 평가위원 매뉴얼도 수합하여 국어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1/03(금)	- 기관 2 (학부)	

부록3. 시범 평가용 편람(피평가 기관 설명회 및 평가위원
연수회 자료)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평가편람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와 반성 요구
 - 현행 국어기본법에서는 교육기관 승인이 서류(강의계획서) 심사로만 결정되며, 사후 중간 평가 및 점검 절차, 취소 기준이 없어 교육의 품질 관리가 미흡함.
-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가칭)(이하 지정제(가칭)) 도입 필요성 제기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적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정제(가칭) 법제화 진행(국회 발의, '17.5.18.)
- (3) 지정제(가칭) 적용을 위한 기 개발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토 및 실태를 반영한 보완 필요
 - * 강승혜 외(201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방안 연구』

1.2. 목적

- (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척도 개발
-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절차 마련 및 평가단 시범 운영을 통한 지정제(가칭) 운영 체계 마련

2. 주요 내용

2.1. 시범 적용 기관의 유형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범 적용 기관 유형 분류

기관 유형 구분		내용	
학위과정	대학	기관 지정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지정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지정	
비학위과정	단기 양성기관		

2.2. 평가 내용(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 (1) 평가 영역: 교육과정 및 교원·강사 등 2개 영역
(2) 평가 항목: 각 영역 2개 항목 구성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 교육 과정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2. 교원 ·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2.3. 평가 방식

- (1)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평가 실시
(2) 서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운영 사항 점검

3. 시범 적용 절차 및 일정

※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일정	주요 내용
피평가 기관 설명회	8.17(목) 10:00	○ 서면 평가 자료 작성 방법 설명
평가위원 연수회(1차)	9.22(금) 14:00	○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설명 ○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일정 조율
서면 평가 자료집 제출	9월 말	○ 평가 지표에 맞추어 서면 평가 자료집 작성 후 제출
평가위원 연수회(2차)	현장 방문 평가 1주일 전	○ 서면 평가 실시 및 현장 평가 일정 공지
현장 방문 평가	10월 중순	○ 현장 확인 자료 및 추가 요청 자료 확인 ○ 교육기관 측 관계자 면담
평가 결과 검증	11월 초	○ 평가준거별 평가 결과 확인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11월 말	○ 평가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결과 확정 ○ 피평가 기관에 결과 안내 및 컨설팅(보완점 제시)

4. 시범 적용 결과 활용

- (1) 시범 적용 평가 결과에 기초한 평가 지표 수정 및 평가 척도 조정
- (2) 기관별 시범 적용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발전 방안(컨설팅) 제공
- (3) 지정제(가칭) 도입을 위한 평가 최종 모형(안) 제시

※ 피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

II. 평가 지표별 세부 내용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양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
 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교과목을 개설하고 각 영역에 부합하는
 교과목 구성 및 해당 교과목에 타당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이란 평가 대상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역
 별 교과목들이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군
 (群)에 부합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었는가를 말한다.
- (2) ‘개설 교과목’이란 평가 대상 기관에서 양성과정에 편성한 교과목이 아니라
 해당 학기에 폐강되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을 말한다.

◎ 작성 양식

<표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유형		영역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 수 (A)	적합 과목 수 (B)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 $C=(B/A) \times 100$	적합 비율 (전체) $C/5$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1			
			2			
			3			
			4			
			5			
	3) 특수대학원	1				
		2				
		3				
		4				
		5				

			5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수 (A)	적합 과목 수 (B)	영역별 개설편 교과목 비율 $C=(B/A)\times 100$	적합 비율 (전체) $C/5$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1년간 개설 교과목수 (A)	적합 과목 수 (B)	영역별 개설편 교과목 비율 $C=(B/A)\times 100$	적합 비율 (전체) $C/5$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1		
			2		
			3		
			4		
			5		

*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개설한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개설 교과목 수'는 학위과정의 경우(학점은행제 제외), 최근 3년간 실제로 개설된 교과목 수를 영역별로 기입하고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 수를 기입하고 동일 교과목의 경우 한 과목으로 산정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개설된 과목이 있는 경우만 작성한다.
- (2) '적합 과목 수'는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명으로 개설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여 산정한다. 다음 '영역별 필수 교과목 예시'에서 제시된 교과목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다음 예시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자모학습법'은 1영역 과목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관련된 3영역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적합 판정 교과목 예시 (자료: 국립국어원) (2017년 7월 현재)

영역	과목명	비
----	-----	---

		고
1	한국어학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어형태론연구, 한국어통사론연구, 한국어어휘론연구, 한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의미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문법론, 한국문법의 이해, 한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문규범,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음운론연구, 국어학개론, 한국어사, 한국어음성학과 발음, 중세한국어강독(학부 과목만 인정), 중세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어문규범연구, 한국어화용론연구, 한국어화용론, 한국어변천사, 한국어형태음운론, 한국어문규정론, 한국어학연구,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의미론과 화용론, 한국어형태론과 통사론, 한국어음성학과 음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사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화용론연구, 한국어정서법연구, 한국어문자 및 표기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특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화용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사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미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음운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형태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세미나1, 한국어단어구조론연구, 한국어문장구조론연구, 한국어학일반론, 한국어표기법연구, 한국어교사를 위한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교사를 위한 문법 및 어문규범, 한국어문장연구, 한국어학원론, 한국어표기론특강, 한국어통사론연습, 한국어음운론특강/연구, 한국어사연습, 한국어사특강, 한국어통사론특강, 한국어정서법연습, 한국어의 담화와 화용, 한국어문자론, 한국어어문규범과 글쓰기, 한국어어휘구조론, 한국어연구입문, 한국어문법의 이해, 한국어발음의 이해, 한글과 정서법, 현대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기원과 발달, 한국어말소리의 이해, 한국어구조의 이해, 한국어의 발음, 한국어문장론, 한국어화법과 의사소통, 한국어규범과 언어예절, 한국어방언학, 한국어의 뿌리와 역사, 한국어단어의 이해, 한글과 정서법의 이해, 한국어담화분석세미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 입문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의 이해, 언어이론연구, 언어유형론연구, 외국어습득론, 응용언어학, 대조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 언어학개론,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연구, 제2언어학습이론, 응용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특강, 대조언어학연구 I (동양어권), 대조언어학연구 II (서양어권), 언어학세미나, 언어습득론, 제2언어 및 외국어습득론, 언어학특강, 담화분석, 제2언어학습이론, 언어정보학연구, 담화텍스트이론연구, 현지외국어습득의 이해, 현지어와 한국어의 대조, 대조분석론, 이중언어학연구, 대조언어학이론과 실제, 언어와 정보, 대조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의 이해,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 오류분석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이중언어교육심화연구, 이중언어교육론, 한국어정보학, 한국어학습자언어자료연구, 말뭉치기반대조언어학, 대화분석연구,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언어와 사회문화적맥락, 인간과 언어, 외국어습득과 오류분석, 대조오류분석론, 인지언어학연구, 한국어정보학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읽기/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수법, 한국어매체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재 및 교수법연구,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어휘교육론연구, 한국어이해교수법연구, 한국어표현교수법연구, 한국어교육세미나,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재

3	<p>론연구, 한국어교안작성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교육과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수요목, 한국어한자 및 어휘교육, 한국어말하기듣기교수법, 한국어읽기쓰기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발음교육법(듣기,읽기),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 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세미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개론연구,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한국문화교육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개론, 한국어이해교육론연구, 한국어표현교육론연구,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수학습이론, 한국어교수방법, 한국문학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법, 한국어듣기읽기교육법, 한국어담화교육론, 한국어교재 및 교구활용론, 한국어교육학세미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교수방법론연구, 한국어화법교육론, 외국어를 사용한 한국어교수법, 한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읽기와 쓰기교육법, 한국어교재연구,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문학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과 평가연구, 한국어어휘교육연구, 한국어교재교구연구, 한국어표현교육연구, 한국어발음교육연구, 한국어이해교육연구, 한국어교육학특수연구, 특수목적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문법교육세미나, 한국어교수법특강, 한국어교수자료연구, 한국어평가연구, 한국어교육과정연구, 한국어독해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능력평가, 한국어교육과정설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2, 한국어교육세미나 I, II, 한국어어휘교육세미나, 한국어발음교육세미나, 한국어능력평가연구, 한국어독해교육연구, 한국어말하기교육연구, 한국어듣기교육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어지도론1(말하기,듣기), 한국어지도론2(읽기,쓰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한국어교육평가 도구의 개발과 평가, 기술별한국어교육Ⅱ: 읽기,쓰기, 한국어교육연구의 비판적이해, 의사소통,내용,과제중심한국어교육, 영역별 한국어교육Ⅰ: 문법, 영역별한국어교육Ⅱ: 발음, 영역별한국어교육Ⅲ: 어휘, 영역별한국어교육Ⅳ: 화용, 영역별한국어교육Ⅴ: 문화,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Ⅰ: 학업,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Ⅱ: 직업,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Ⅰ:아동,청소년,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Ⅱ:이주노동자,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Ⅲ:결혼이주여성,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Ⅳ:다문화가정자녀,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Ⅴ:재외동포, 기술별한국어교육Ⅰ:듣기·말하기, 한국어평가연구, 한국어기능교육론, 한국어교육과 통계, 한국어말하기지도법, 한국어읽기지도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 및 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문화교육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교육콘텐츠용발음교육, 한국어교육콘텐츠용어휘교육, 한국어교육콘텐츠용문법교육, 한국문화교육콘텐츠의이해, 한국문화텍스트번역연구, 한국어교육매체론,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수법, 한국고전문학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교육론, 외국인</p>	한국어교육론
---	---	--------

	<p>을 위한 한국문학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방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소설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 한국어발음지도법, 한국어수행능력평가 연구, 한국어교재개발연구, 한국어교육자료개발세미나, 한국어교육자료개발론, 한국어수업지도안작성법, 한국어초급수업지도안작성, 한국어중급수업지도안작성, 한국어교안작성과 수업운영, 다문화가정대상한국어교수법,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론, 한국어문어교육론, 한국어번역론, 한국어음운교육연구, 한국어음성언어교육론, 한국어구어교육론,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수법, 한국어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매체활용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연구와 지도방법론, 한국어교재분석론</p>
4	<p>한국문화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연구, 한국문화연구, 한국문화와 문화,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고전문학특강, 한국현대문학특강,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민속학연구, 한국문학사연구,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화기초연구, 한국대중문화의 이해, 한국문화론, 전통문화현장실습,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한국민속론, 한국현대문화비평론, 한국고전시가론, 한국고전문학사, 한국고전소설론, 한국문학비평론, 한국한문학론, 한국현대문학강독, 한국현대문학사, 한국현대소설론, 한국현대시론, 한국현대문화연구, 현대한국사회연구, 한국문학의 이해와 연구, 한국학개론,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문학, 한국문화, 한국사회,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현대문화체험실습, 한국역사와 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실습, 한국작가분석, 한국소설과 영상, 한국민속문화, 한국문학입문, 한국고전시가, 한국현대문학입문, 한국현대예술, 한국여성문화, 한국사상사, 한국문화유산탐방, 한국전통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한국문화론특강, 한국문화와 다문화사회의 이해, 한국문화와 사상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문화사상특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국제사회와 한국현대문화의 이해, 한국종교문화연구, 한국문학개론(고전), 한국지역문화연구, 한국문화예술과 한류,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연구, 옛이야기와 한국문화, 세계속의 한국문화재연구, 한국문화와 생태학, 한국인의 해외활동연구, 한국의 종교와 사상, 한국문화교류사연구, 한국문학갈래론, 한국영화와 현대사회, 한국영화와 한국인, 한국공연예술의 이해, 현지문화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문화산업, 한국학일반론, 한국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문학사심화연구, 한국회교연구, 한국의 지리와 문화, 한국매체정보론, 한국민요연구, 한국현대문화론연구, 한국사개론, 한국예술사상과 무용, 한국문화와 예술, 한국학의 이해, 한국인의 생활사, 한국학특수연구 I,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현대문학원론, 한국고전문학원론, 한국문화론특강, 샤머니즘과 한국문화, 해외한국문화재의 이해, 한국의선사와 고대문화, 한국문화원류탐구, 한국신화와 상징체계,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 한국노래문학의 이해와 감상, 한국현대작가와 문학현장, 한국고전작가와 문학현장,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한국의 사회와 법, 한국시의 이해, 한국문학의 재조명,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비교,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의 복식문화, 한국의 대중음악사, 한국의 건축문화, 한국미술의 이해, 한국언어문화연구, 한국언어문화특강, 외국문학으로서의 한국현대문학, 해외한민족의 이해, 해외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한국대중문화와 미디어, 한국문학의 흐름, 한국사의 탐구,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한국대표문학작품감상, 현대한국사회의 쟁점, 한국근현대사의 쟁점세미나, 한국고전작가론, 한국고전시가와 문</p>

		화콘텐츠, 한국문학과 콘텐츠, 한국노래문학의 이해, 유학생을 위한 한국 문화개론	
5	한국어 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참관 및 모의수업, 한국어수업참관 및 현장실습, 한국어수업참관 및 교육실습, 모의수업, 한국어강의참관 및 실습, 강의실습, 한국어교육실습과 참관, 한국어교육모의수업, 한국어교육강의실습, 외국인을 위한 국내 한국어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국내 한국어 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한국어교육단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장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단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장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수업심화실습, 한국어교육실습과 교실운영, 한국어교육실습워크숍, 한국어교육실습 및 현장연구	

- (3)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은 적합으로 판정한 교과목 수를 각 영역별로 개설된 교과목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로 기입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1영역으로 개설된 교과목이 다섯 과목인데 '적합'으로 판정한 과목이 네 과목일 경우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의 1영역란에는 ['적합'으로 판정한 과목 수(4)/최근 개설된 1영역 과목 수(5)]x100=[4/5]X100=80 (%)을 기입한다.
- (4) '적합 비율(전체)'은 영역별 개설 교과목 적합 비율을 5로 나눈 값을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혹은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자료, 학점은행제의 경우 1년간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영역별 필수 교과목 예시'에 제시한 각 영역별 과목 예시에 준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였는지 평가한다.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이란 각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지를 말한다.

- (2)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의 판단은 평가단의 내용 적합성 판정에 따른다.
 (3)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교과목별 강의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안, 교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작성 양식

<표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유형			영역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	판정		비고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1				
			2				
			3				
			4				
			5				
		3) 특수대학원	1				
			2				
			3				
			4				
			5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1				
			2				
			3				
			4				
			5				

유형			영역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	판정		비고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1					
		2					
		3					
		4					
		5					
		5					

유형			영역	최근 1년간 개설 교과목	판정		비고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1					
		2					
		3					
		4					
		5					

*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개설한 기관만 기재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자료, 학

점은행제의 경우 1년간 자료)

- (2) 비학위과정은 교과목별 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안, 교재 등 강의 내용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
- (3)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제 강의계획서 비치

◎ 평가의 주안점

- (1) 내용 적합성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내용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판정 결과로 평가한다.
- (3) 해당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적합/부적합 등으로 판정한다. 평가단(전문가 집단)은 이에 대한 판정 사유를 기술한다.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용어의 정의

- (1)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이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기준의 적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지를 말한다.
- (2) '필수이수 기준'은 학위과정(학점은행제 포함)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충족 여부와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이상 취득 여부를 말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 시간 충족여부와 종합시험 시행 및 통과 여부를 말한다.
- (3) '미충족자'란 ① 학위과정의 경우(학점은행제 포함)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② 학점을 충족하고 학점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이상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4)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충족 여부는 1.1.1.에서 제시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에 해당하는 학점 취득 여부로 판단한다.
- (5) 비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시행 여부 및 통과 여부는 종합시험을 시행하고 종합시험 통과 점수를 통해 이수 기준 관리를 하는지 판단한다.
- (6) 학점은행제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 과목 전체를 개설한 경우만 평가하며 성적 70% 미만 부여 이수자 비율로 판단한다.

◎ 작성 양식

<표 1-1-3> 필수이수 기준 미충족자율

유형			2014		2015		2016		계		
			취득자수 (a1)	미충족자 수 (b1)	취득자수 (a2)	미충족자 수 (b2)	취득자수 (a3)	미충족자 수 (b3)	취득자계 A=(a1+a2+a3)	미충족자계 B=(b1+b2+b3)	미충족자 비율 (B/A)X100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유형			2015		2016		계			
			취득자수 (a1)	미충족자수 (b1)	취득자수 (a2)	미충족자수 (b2)	취득자계 A=(a1+a2)	미충족자계 B=(b1+b2)	미충족자 비율 (B/A)X100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계		
		수료자수 (a1)	미충족자수 (b1)	수료자수 (a2)	미충족자수 (b2)	수료자계 A=(a1+a2)	미충족자계 B=(b1+b2)	미충족자 비율 (B/A)X100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계		
		수료자수 (a1)	미충족자수 (b1)	수료자계 A=(a1)	미충족자계 B=(b1)	미충족자 비율 (B/A)X100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실적 현황

유형			2014		2015		2016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학 위 과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정	사이버 대학	4) 학부						
---	--------	-------	--	--	--	--	--	--

유형			2014		2015		2016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미충족자 수	미충족자 명단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종합시험 실시 여부	통과점수	미통과자 명단	종합시험 실시 여부	통과점수	미통과자 명단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 작성 요령

- (1) 각 기관은 유형별로 작성하되 학위과정의 학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3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비학위과정은 2년간, 학점은행제는 1년간의 실적을 기입한다.
- (2) 취득자수는 해당 연도의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졸업자 수를 기입하고 미충족자 수는 영역별 필수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숫자를 기입한다. 비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수료자 수를 기입한다. (단, 시범 적용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는 제외한다.)
- (3) 미충족자 비율=(미충족자 수 계/취득자 수 계)X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 (4) <부록표 1-1-3>의 경우, 학위과정은 평량 평균 환산 점수 70% 미충족자 수를 기입하고 미충족자의 명단을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은 필수이수 시간 외에 종합시험 시행 여부, 통과 점수, 미통과자 명단을 기입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연계전공)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일반	특수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18학점		120시간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교원자격 취득자의 이수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 (2) 비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2년간 종합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를 들면, 검사지 및 시험지, 응시자 명단, 합격자 명단, 기준표 등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필수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용어의 정의

- (1)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이란 개설된 교과목 중 교수자의 전공이 일치하는 교과목의 비율을 말한다.
- (2) 전공 일치 정도는 교수자(교수, 강사)가 받은 박사학위가 교과목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3) 교수자의 전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①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경우
 - ② 교과목 교수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판단은 교육 내용을 전공하였더라도 박사학위논문을 해당 전공 주제로 작성하였다면 해당 전공으로 판단함.

- ③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3년간 교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연구실적 200%에는 연구논문(100%), 전문서적(100%), 교과서(50%), 번역서(30%), 연구보고서(50%) 등이 포함됨. '전문서적'은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 학술저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강의용 교재나 한국어 교재 등을 포함함.
- ④ 3영역 담당 교수자의 경우 위 ①, ②, ③ 기준 외에 박사학위소지자로서 3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중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도 포함함.
- ⑤ 5영역 담당 교수자는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이거나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를 전공 일치로 판단함.

※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

-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 ② 국제 SCI급/SCOPUS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이공계-SCI, SCIE, 사회과학-SSCI, 인문예술-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 ③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지: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SCI급/SCOPUS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 ④ 저·역서: ISBN에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편저), 초·중·고 교과서 집필 등은 제외됨.
- ⑤ 논문게재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주저자=2/(n+2), 교신저자=2/(n+2), 공동저자=1/(n+2),
 - 총저자수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 ⑥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1/n
 - 총저자수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작성 양식

<표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전공 일치 과목수 (a1)	개설 과목수 (b1)	전공 일치 과목수 (a2)	개설 과목수 (b2)	전공 일치 과목수 (a3)	개설 과목수 (b3)	전공 일치 교과목 계 A=(a1+a2+a3)	개설과목 교과목 계 B=(b1+b2+b3)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A/B)x100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년		2016년		계		
		전공 일치 과목 수 (a1)	개설 과목 수 (b1)	전공 일치 과목 수 (a2)	개설 과목 수 (b2)	전공 일치 교과목 계 A=(a1+a2)	개설과목 교과목 계 B=(b1+b2)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A/B)x100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년		계
		전공 일치 과목 수 (a)	개설 과목 수 (b)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a/b)x100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3년간 개설한 교과목 수와 교수자 전공 일치 과목수를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설한 교과목 수와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개설한 교과목 수를 기입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 (2) 전공 일치 과목 비율 = {(전공 일치 과목 계/총 개설 과목 수)}x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학점은행제는 1년간) 과목개설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설과목 목록, 시간표 등
- (2) 개설과목별 교수자 전공 및 일치여부 목록 자료
- (3) 교수자의 세부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를 들면, 학위 증명서, 학

위기,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자 확인 면, 박사학위 논문 초록, 논문 수록 학술지 목차 및 논문 중 분명히 전공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교수자 전공 일치도는 실제적인 전공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예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실습 교과목 운영에 적합한 한국어교육기관을 확보하고, 학생(수강생)들에게 일정 시간 이상 한국어 강의를 참관하고 실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장 경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학생(수강생)들에게 현장 경험 지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실습 기관의 적합성’이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구성 중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강의실습이나 현장 강의참관)이 가능한 한국어교육 실습 현장 범위 내에 부합하는가를 의미한다.
- (2) ‘실습 교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 (3) ‘강의실습’이란 실습생 모두가 담당 교수(실습 기관의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의 지도하에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강의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4) ‘강의참관’이란 실습 교과목 수강생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사 언어(지시적 언어와 비지시적 언어), 투입된 교수·학습 자료, 학생들의 활동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실습’ 현장의 범위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를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1. 재단법인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작성 양식

<표 1-2-1> 실습 협력 체결 기관 현황

유형		학기/기수	실습 협력 체결 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체학급수	협력체결일자	강의실습일자	강의참관일자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여부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014-1								
			2014-2								
			2015-1								
	사이버대학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2015									
		2016									
	7) 온라인	2015									
		2016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2016									
	9) 온라인	2016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교과목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계절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정규 학기 외에

'2017-여름계절'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근 1년간 종강일 2월 8월 기준으로 작성하되 개설한 과목을 모두 작성한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7-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7-봄'과 같이 쓸 수 있다. 단, 학기별 혹은 기수별로 강의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양식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2) '전체 학급 수'는 실습 협력 체결 기관에서 강의참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협력 체결 기관의 전체 학급 수를 기입한다.
- (3) '강의실습 일자'에는 강의실습을 한 날짜를 기입한다. 그룹별로 강의실습 일자가 다른 경우는 강의실습 일자 옆에 괄호를 넣고 그룹을 표시한다.
예) 2017.3.14.~2017.3.17.(1그룹), 2017.3.21.~2017.3.24.(2그룹)
- (4) '강의참관 일자'에는 강의참관을 한 날짜를 기입한다. 그룹별로 강의참관 일자가 다른 경우는 강의참관 일자 옆에 괄호를 넣고 그룹을 표시한다.
예) 2017.3.14.~2017.3.17.(1그룹), 2017.3.21.~2017.3.24.(2그룹)
- (5)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여부'에는 협력 체결 기관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해당되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기입한다.
- (6) 해당 평가 기간 중 강의실습 협력 체결 기관에 변동이 없을 경우 학기/기수를 '2014-2016'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비치 자료

- (1) 타 기관과 협력 시 실습 협력 기관 체결 양해 각서
- (2) 부속 기관과 협력 시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협조 공문이나 업무 메일
- (3) 협력 체결 기관장의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확인서
- (4) 협력 체결 기관이 용어의 정의(5)에 제시된 실습 현장 범위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가의 주안점

- (1)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실습 현장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한다.
- (2) 실습 협력 체결 기관과의 협력 체결시기가 실습 이전 시기인지를 확인한다.
- (3) 실습 현장이 한국어교육경력인정 기관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용어의 정의

- (1) ‘현장 경험’이란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말한다.
- (2) ‘강의참관’은 한국어교육이 일어나는 실제 현장에서 한국어 강의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강의참관 인원은 참관하는 한 교실에 5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강의참관 시수’는 관찰하는 데 참여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 한 차시 수업을 1시수로 간주한다.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는 강의참관 대상 인원 1인당 강의참관 시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3) ‘강의실습’이란 실습생이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강의실습 시수’는 실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한 차시 수업을 1시수로 간주한다.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의 지도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강생은 실습한 기관에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 실습, 해외 인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있어야만 실습으로 인정된다. 담당 교수자의 지도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강의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현지의 현장 실습 지도자가 현장 경험만 제공하는 경우 국내 교수자로부터 사전, 사후지도가 있으면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4) ‘현장 경험 참여율’은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 참여율을 말한다.

◎ 작성 양식

1) 강의참관 시수 및 강의참관 참여율

<표 1-2-2a> 강의참관 시수 및 강의참관 참여율 현황

유형		2014-1			..	2016-2			강의참관 참여율 $\frac{(b1+\dots+b6)}{(a1+\dots+a6)}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dots+c6)/6$
		강의참관 대상 학생 수 (a1)	강의참관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	..	강의참관 대상 학생 수 (a6)	강의참관 학생 수 (b6)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6)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참관 참여율 $\frac{(b1+b2)}{(a1+a2)}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c2)/2$
		강의참관 대상	강의참관 학생 수	1인당 강의참관	강의참관 대상	강의참관 학생 수	1인당 강의참관		

		학생 수 (a1)	(b1)	시수 (c1)	학생 수 (a2)	(b2)	시수 (c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참관 참여율 $\{(b1)/(a1)\}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
	강의참관 대상 학생 수 (a1)	강의참관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참관 시수 (c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2) 강의실습 시수 및 강의실습 참여율

<표 1-2-2b> 강의실습 시수 및 강의실습 참여율 현황

유형	2014-1			...	2016-2			강의실습 참여율 $\{(b1+\dots+b6)/(a1+\dots+a6)\}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dots+c6)/6$
	강의실습 대상 학생 수 (a1)	강의실습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	...	강의실습 대상 학생 수 (a6)	강의실습 학생 수 (b6)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6)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실습 참여율 $\{(b1+b2)/(a1+a2)\}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c2)/2$
	강의실습 대상 학생 수 (a1)	강의실습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	강의실습 대상 학생 수 (a2)	강의실습 학생 수 (b2)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실습 참여율 $\{(b1)/(a1)\} \times 100$	평균 1인당 강의실습 시수
	강의실습 대상 학생 수 (a1)	강의실습 학생 수 (b1)	1인당 강의실습 시수 (c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실습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 기관이 다수일 경우 여러 개의 표로 작성할 수 있다.

- (2) '강의참관 대상 학생 수'란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 수강자 수를 기입하고, 비학위과정은 해당 기수 수강자 전체 수를 기입한다.
- (3) '강의참관 학생 수'는 강의참관 기관별로 강의참관에 참여한 학생(수강생) 수를 기입한다.
- (4) '1인당 강의참관 시수'에는 해당 학기의 전체 강의참관 시수를 강의참관 학생 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강의참관 시수가 400시간이고 강의참관 학생 수가 50명인 경우 8로 기입한다.
- (5) '강의참관 참여율'은 강의참관 대상 학생 수의 합(a_1+a_2 혹은 $a_1+a_2+\dots+a_6$)을 강의참관 학생 수의 합(b_1+b_2 혹은 $b_1+b_2+\dots+b_6$)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기입한다.
- (6) '평균 1인당 강의참관 시수'는 1인당 강의참관 시수의 합(c_1+c_2 혹은 $c_1+c_2+\dots+c_6$)을 2(혹은 6)로 나눈 값을 기입한다.
- (7) '1인당 강의실습 시수'에는 해당 학기의 전체 강의실습 시수를 강의실습 학생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강의실습 시수가 100시간이고 강의실습 학생 수가 50명인 경우 2로 기입한다.
- (8) '전체 강의실습 학생 수'에는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 수강자 수를 기입하고, 비학위과정은 해당 기수 수강자 전체 수를 기입한다.
- (9) '강의실습 참여율'은 '참여 학생 수(b)'를 '전체 강의실습 학생 수(a)'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기입한다.
- (10) '강의실습 일자'에는 강의실습을 한 날짜를 기입한다. 그룹별로 강의실습 일자가 다른 경우는 강의실습 날짜 옆에 괄호를 넣고 그룹을 표시한다.
예) 2016.3.14.(1그룹), 2016.3.15.(2그룹)

◎ 비치 자료

- (1) 학기별(기수별)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참여자 명단
- (2) 학기별(기수별) 강의실습 계획서 및 시간표
- (3) 강의참관 및 실습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국립국어원 양식)'
- (4) 현장실습 지도 관리부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 시간이 실습 교과목 전체 시간의 5분의 1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강의참관과 강의실습 모두 시행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3) 강의참관 인원이 5명을 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 용어의 정의

- (1) ‘현장 경험 보고서’란 학습자가 강의를 관찰(강의참관)하거나 강의실습을 하면서 기록한 ‘강의참관 일지(국립국어원 양식)’, ‘강의실습 일지(국립국어원 양식)’를 의미한다. 현장 경험 보고서 양식에는 장소, 기간, 횟수, 내용 및 평가, 소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장 경험 보고서로는 강의참관 일지(혹은 강의참관 보고서), 강의실습 일지(혹은 강의실습 보고서)가 해당된다.

◎ 작성 양식

<표 1-2-3a>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 현황 (강의참관)

유형			2014-1		...	2016-2		강의참관일지 작성율 $\{(b1+\dots+b6)/\{a1+\dots+a6\}}\times 100$
			강의참관 참여 학생 수 (a1)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1)	...	강의참관 참여 학생 수 (a6)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6)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참관 일지 작성율 $\{(b1+b2)/\{a1+a2\}}\times 100$
		강의참관 참여 학생 수 (a1)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1)	강의참관 참여 학생 수 (a2)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참관 일지 작성율 $\{(b1)/\{a1\}}\times 100$
		강의참관 참여 학생 수 (a1)	강의참관 일지 제출부수 (b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	--	--	--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표 1-2-3b>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 현황 (강의실습)

유형		2014-1		...	2016-2		강의실습 일지 작성율 $\{(b1+\dots+b6)/\}$ $\{(a1+\dots+a6)\} \times 100$
		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 (a1)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1)	...	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 (a6)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6)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강의실습 일지 작성율 $\{(b1+b2)/\}$ $\{(a1+a2)\} \times 100$
		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 (a1)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1)	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 (a2)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실습 일지 작성율 $\{(b1)/\}$ $\{(a1)\} \times 100$
		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 (a1)	강의실습 일지 제출부수 (b1)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
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
다.
- (2) '현장 경험 보고서' 양식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양식 5】,
【양식 6】을 활용한다.
- (3) '강의참관/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에는 해당 학기(기수)별로 강의참관/강의실
습에 참여한 총 학생 수를 기입한다.
- (4)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 제출 부수'에는 제출된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의

총 부수를 기입한다. 한 명이 낸 일지가 여러 개라도 한 부로 계산한다.

- (5)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 작성률'에는 '강의참관/강의실습 일지 제출 부수(b)'의 합을 '강의참관/강의실습 참여 학생 수(a)'의 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학기(기수)별 강의참관/강의실습 참여 명단
- (2) 학기(기수)별 제출된 현장 경험 보고서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 보고서가 없을 경우 F등급으로 평가한다.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용어의 정의

- (1)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이란 현장 경험 지도 내용이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충실성 판단은 현장 경험 지도율과 현장 경험 지도 현황에 따른다.
- (2) '현장 경험'이란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의미한다.
- (3) '현장 경험 지도'란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또는 현장 실습 지도자)가 현장 경험 참가자에게 적절한 사전지도와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강의참관 사전지도'에는 강의참관의 목적, 사전준비, 강의참관에 대한 유의사항과 강의참관 일지 작성 방법, 참관 대상 강의 및 수강생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 '강의참관 사후지도'에는 강의참관 후 느낀 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참관한 강의에 대한 담당 강의 교수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이 포함된다.
- (5) '강의실습 사전지도'에는 강의실습을 교안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와 강의실습 참가자가 작성한 교안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고 '강의실습 사후지도'에는 강의실습 후 느낀 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강의실습 참가자에 대한 평가와 조언 등이 포함된다.

◎ 작성 양식

<표 1-2-4a> 현장 경험 지도율

유형		2014-1			2016-2			사전지도율 $\{(b11+\dots+b61)/\}$ $(a1+\dots+a6)\times 100$	사후지도율 $\{(b12+\dots+b62)/\}$ $(a1+\dots+a6)\times 100$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a1)	사전지도 학생 수 (b11)	사후지도 학생 수 (b12)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a6)	사전지도 학생 수 (b61)	사후지도 학생 수 (b62)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5			2016			사전지도율 $\{(b11+b21)/\}$ $(a1+a2)\times 100$	사후지도율 $\{(b12+b22)/\}$ $(a1+a2)\times 100$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a1)	사전지도 학생 수 (b11)	사후지도 학생 수 (b12)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a2)	사전지도 학생 수 (b21)	사후지도 학생 수 (b22)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사전지도율 $\{(b11)/(a1)\}\times 100$	사후지도율 $\{(b12)/(a1)\}\times 100$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a1)	사전지도 학생 수 (b11)	사후지도 학생 수 (b12)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1-2-4a>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 현황

유형		학기/ 기수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					
			담당 교수자	소속	직위	사전지도 일자	사후지도 일자	
학 위 과 정	일반 대학	1) 학부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2015						
		2016						
	7) 온라인	2015						

		2016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2016					
	9) 온라인	2016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계절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정규 학기 외에 '2016-계절(여름)'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은 최근 2년간,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 (2) '현장 경험 지도율'에는 강의참관에 참가한 학생 수와 강의실습에 참가한 학생 수를 합산하여 총 현장 경험 학생 수, 사전지도 학생 수, 사후지도 학생 수를 기입하고 사전지도율과 사후지도율을 계산하여 작성한다.
- (3)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직위, 사전지도 일자와 사후지도 일자를 기입한다. 사전지도 일자와 사후지도 일자가 특정일이 아닌 어떤 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기간을 기입한다.
- (4) '현장 경험 지도 시간'은 현장 경험 지도에 사용된 시간을 적되, 1시간 단위로 기입한다. 이 때 기본 50분 내외 수업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5) '현장 경험 참가자 1인당 지도 횟수'에는 현장 경험 지도 담당자가 학생(수강생)의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지도한 횟수를 적는다.

◎ 비치 자료

- (1) 해당 학기(기수)의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계획서
- (2) 학기(기수)별 현장 경험 사전지도를 실시한 실제 자료
- (3) 학기(기수)별 현장 경험 사후지도를 실시한 실제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에 대한 적절한 사전지도 및 사후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용어의 정의

- (1)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이란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 담당 교수자가 교안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 참가자가 구성한 교안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하는가를 의미한다.
- (2) ‘교안 작성’이란 교수·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안에는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 학습 대상, 교수·학습 활동 단계별 내용과 소요 시간 및 지도상의 유의점, 강의 자료 등이 포함된다.

◎ 작성 양식

<표 1-2-5> 교안 작성 지도 현황

유형		2014-1	...	2016-2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 (a1+a2+...+a6)/6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1)	...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6)	
학위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유형		2016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 (a1+a2)/2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1)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2)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유형		2016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평균 교안 지도 횟수 (a1+a2)/2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1)	강의실습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 (a2)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실습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1-2-5> 교안 작성 지도 담당 교수자 현황

유형			학기/기수	교안작성 지도 담당 교수자		
				담당 교수자	소속	직위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2016				
	7) 온라인	2016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2016				
	9) 온라인	2016				

*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실습 수업이 있는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학위과정은 최근 3년간 해당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1학기 와 2학기를 나누어 기입한다. 비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는 최근 1년간 해당년 도의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년도에 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2016-1'과 같이 매 기수별로 나누어 기입한다. 기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뉘는 경우는 '2016-봄'과 같이 쓸 수 있다.
- (2) '강의실습(혹은 모의수업) 참가자 1인당 교안 지도 횟수'에는 담당 교수자가 학생(수강생)의 교안 작성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지도한 횟수를 적는다.

◎ 비치 자료

- (1)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안내자료
- (2)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차시별 지도 자료

2. 교원 ·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전임교원/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기준 대비 확보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전임교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의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1년에 1개 이상 맡고 있는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단, 연구년, 교환교수, 병가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전임교원은 '학위과정 전임교원', '비학위과정 전임교원', '학점은행제 전임교원'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전임교원은 다음 (4), (5), (6)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

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5) 비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 받은 교원 또는 해당 대학 총장 발령의 전일제(full-time) 근무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각종 수당 외에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 받는 교원

(6) 학점은행제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학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당해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양성 관련 학과(전공)의 강의와 운영만을 담당하고 당해 기관 내 타 학과(전공) 또는 타 기관의 강의와 운영을 겸임(겸직)하지 않는 교원

◎ 작성 양식

<표 2-1-1> 전임교원 확보율

유형		학생 수 (A)	전임교원 확보 기준 (B)	전임교원 수 (C)	전임교원 확보율 [(C/B)×100]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B=A/30)		
		2) 대학원	(B=A/30)		
		3) 특수대학원	(B=A/40)		
	사이버 대학	4) 학부	(B=A/200)		
		5) 특수대학원	(B=A/40)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B=A/100)			
	7) 온라인	(B=A/200)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B=1인)			
	9) 온라인	(B=1인)			

<부록표 2-1-1> 전임교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학과(전공)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1) 기관 유형별 전임교원 수(휴직교원 포함)는 평가 시점 직전 학기(회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학생 수는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정원 외 입학자 제외),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회기 포함 8개 회기(2년간) 입학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별 총 정원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학생 수 산출 기준

구분		산출공식
학위 과정	1) 학부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해당 회기 포함 3개 회기(2년간) 입학 평균인원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교과목별 총 정원의 합계

- 특수대학원의 경우 야간제와 계절제 특수대학원의 해당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 재학생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2) 전임교원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전임교원을 모두 포함한다.
- (3)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학과(전공) 및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달리 한다.
 - 일반대학 학부 및 대학원: 학생 30명당 전임교원 1인
 - 특수대학원: 학생 40명당 전임교원 1인
 - 사이버대학: (학부)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인
(대학원) 학생 40명당 전임교원 1인
 - 비학위과정: (오프라인) 학생 100명당 전임교원 1인
(온라인)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인
 -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전공) 당 1인
(온라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전공) 당 1인
 - 전임교원 확보기준 = 학생 수/n, 소수점 이하는 모두 올림하여 00명으로 기입한다(예, 4.01은 5명)
- (4)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전임교원 확보기준)×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5) 한국어교원 양성 관련 학과(전공)가 동일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모두 운영되는 경우에 동일한 전임교원을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중복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중 하나에서만 계산한다.

◎ 비치 자료

- (1) 전임교원 명부
- (2) 재직증명서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3)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4) 학위과정에서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평가의 주안점

(1) 산정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전임교원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1-4영역(5영역 제외)의 전공과목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강사 중에서 전공과목 강사로 간주할 수 있는 강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전공과목 강사'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① 전공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②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 학과(전공)에서 전공과목을 최근 2년 사이에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하거나 ③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단, 팀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의 경우에는 책임 강사가, 온라인 운영 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강의 개발자와 관리교수(강의 운영 책임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교수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전공과목 강사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전공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을 말한다.

◎ 작성 양식

<표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유형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 (A)	전공과목 강사 수 (B)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B/A)×100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2-1-2> 전공과목 강사 명단

유형		이름	소속 및 학과(전공)	직위	학력	최근 2년간 직접 강의한 전공과목 수*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타 기관에서 직접 강의한 전공과목의 수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 작성 요령

- (1)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와 '전공과목 강사 수'는 평가 시점 직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부록표 2-1-2> 전공과목 강사 명단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 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1-4영역(5영역 제외) 전공과목 강사를 모두 기입한다.
- (3)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전공과목 강사 수/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 수)×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전공과목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2) 전공과목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3) 최근 2년간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1-4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 평가의 주안점

- (1) 전공과목 강사 인정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강사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용어의 정의

- (1)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이란, 학과(전공) 및 기관별로 개설된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중 대학이나 기관 내 전공과목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시수 비율을 의미한다.
- (2) 강의시수에는 계절학기에 개설한 강의도 포함한다.
- (3) ‘전공과목’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을 말한다.

◎ 작성 양식

<표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유형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A)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B)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B/A)×100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2-1-3>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수 및 강의시수

유형		이름	소속	학과(전공)	전공과목 수	전공과목 강의시수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6) 오프라인				
비학위과정	7) 온라인					
	8)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총 강의시수는 평가 시점 전년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1년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수는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개수를 작성한다.
- (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는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중 전공과목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시수를 작성한다.
- (4)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5) <부록표 2-1-3> 전임교원별 전공과목 및 강의시수 작성 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과(전공)'은 해당 기관을 기입하며 '전공과목 수', '전공과목 강의시수'

는 그 기관에서 강의한 과목과 강의시수를 기입한다.

◎ 비치 자료

(1) 평가 시점 전년도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

◎ 평가의 주안점

(1)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를 확인하여 강좌 개설 시기와 종료 시기의 담당 교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전공과목 수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부: 학기당 4과목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학기당 2과목
- 비학위과정: 기수당 3과목
- 학점은행제: 학기당 4과목(18시간)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평가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3영역 과목을 타당한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강사와 5영역 과목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와 현장 실습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기관의 3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중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영역) 과목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 (3) 전임교원은 '학위과정 전임교원', '비학위과정 전임교원', '학점은행제 전임교원'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전임교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5) 비학위과정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 받은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각종 수당 외에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 받는 교원
- (6) 학점은행제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학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당해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양성 관련 학과(전공)의 강의와 운영만을 담당하는 교원

◎ 작성 양식

<표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유형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 (A)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A)×100
학위 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부록표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학과(전공)	최근 3년간 직접 강의한 3영역 과목명
----	----	----	--------	-----------------------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작성 요령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휴직교원 포함)는 평가 시점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원칙적으로 학과(전공) 및 기관 별 1인으로 한다.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인정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 박사학위를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경우
 -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및 저술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영역 과

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우

- ③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경우
※ 연구실적은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1건을 100%로 산정한다.

※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제시된 작성지침

-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② 국제 SCI급/SCOPUS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이공계-SCI, SCIE, 사회과학-SSCI, 인문예술-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③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지: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SCI급/SCOPUS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④ 저·역서: ISBN에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편저), 초·중·고 교과서 집필 등은 제외됨.
⑤ 논문게재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주저자=2/(n+2), 교신저자=2/(n+2), 공동저자=1/(n+2),
총저자수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⑥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1/n
- 총저자수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4) 3영역 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에서 명시한 대로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한국어사, 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영영별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자면,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등이 있다.

(5)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수×100)

(6) 한국어교원 양성 관련 학과(전공)가 동일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모두 운영되는 경우에 동일한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을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중복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중 하나에

서만 계산한다.

◎ 비치 자료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부
- (2) 재직증명서 등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4) 3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개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5) 연구실적 200%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관련 서류
- (6)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경력 증명서

◎ 평가의 주안점

- (1) 전공과목 전임교원 중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으로 산정된 전임교원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용어의 정의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이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강사 중에서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로 간주할 수 있는 강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② 3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중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과목 이상 직접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③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 작성 양식

<표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유형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 (A)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 (B)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B/A)×100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3영역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명단

유형		이름	소속 및 학과(전공)	직위	학력	최근 2년간 직접 강의한 전공과목 수
학위과정	일반대학	1) 학부				
		2) 대학원				
	사이버대학	3)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4) 학부					
	5) 특수대학원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3영역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와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는 평가 직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부록표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명단에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를 모두 기입한다.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전임 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 수)×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0%로 기입한다.

◎ 비치 자료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3) 3영역 과목을 최근 3년간 1개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평가의 주안점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인정 기준에 따라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용어의 정의

- (1)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이란,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 5영역을 담당하기에 적합한가를 말한다.
- (2)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란, 실습 교과목 담당 교강·사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을 의미한다.
- (3)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수강생을 관리하는 교·강사를 의미한다.
- (4) ‘현장 실습 지도자’란,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교·강사 중 한국어교육 실습 수강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교·강사를 의미한다.

◎ 작성 양식

<표 2-2-3a>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

유형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수		자격과 경력 충족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비율 (B/A)×100
			총 교수자 수 (A)	자격과 경력 충족 교수자 수 (B)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표 2-2-3b>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충족 비율

유형			현장 실습 지도자 수		자격과 경력 충족 현장 실습 지도자 비율 (B/A)×100
			총 교수자 수 (A)	자격과 경력 충족 지도자 수 (B)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2-2-3a>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학력 (박사수료 /박사졸업)	한국어교육 경력 (연 및 시간 수)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부록표 2-2-3b> 현장 실습 지도자 명단

유형		이름	소속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	한국어교육 경력(연 수)
학위 과정	일반 대학	1) 학부			
		2)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4) 학부			
		5) 특수대학원			
비학위 과정		6) 오프라인 7) 온라인			
*학점 은행제		8) 오프라인 9) 온라인			

*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습 과목이 개설된 기관만 기재한다.

◎ 작성 요령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한국어교육 경력은 평가 시점 직전 학기 또는 가장 최근 1학기에 실시된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경력으로 산정한다.
- (2) 한국어교육 경력 연 수 및 시간 수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한 것을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 수 및 시간만을 기입한다.
- (3) 실습 교과목에서 담당 교수 및 강사 외에 한국어교육 경력이 많은 한국어교원이 협력수업(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교안 작성 및 수업 운영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협력수업을 하는 한국어교원도 추가하여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 (4)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인정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
 - ②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한다.

(5)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①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②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③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 비치 자료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학위기 또는 학위 증명서
- (2)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3) 현장 실습 지도자의 한국어교원자격증
- (4) 현장 실습 지도자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5)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상의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관리부

◎ 평가의 주안점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 정확히 작성·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부록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매뉴얼 -평가위원용 (학부/대학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서면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매뉴얼
- 평가위원용 (학부/대학원) -



1.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 평가의 주안점

- (1) ‘영역별 필수 교과목 예시’에 제시한 각 영역별 과목 예시에 준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였는지 평가한다.
- (2) ‘개설 교과목’은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해 개설한 1~5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 (3) 계절학기에 개설한 교과목도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4) 과목명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적합 판정 교과목 예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적합 판정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적합 판정 교과목 예시 (자료: 국립국어원) (2017년 7월 현재)

영역	과목명
1 한 국 어 학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어형태론연구, 한국어통사론연구, 한국어어휘론연구, 한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의미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문법론, 한국문법의 이해, 한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문규범,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음운론연구, 국어학개론, 한국어사, 한국어음성학과 발음, 중세한국어강독(학부 과목만 인정), 중세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어문규범연구, 한국어화용론연구, 한국어화용론, 한국어변천사, 한국어형태음운론, 한국어문규정론, 한국어학연구,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의미론과 화용론, 한국어형태론과 통사론, 한국어음성학과 음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사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연구,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학연구,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화용론연구, 한국어정서법연구, 한국어문자 및 표기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특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화용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사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미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음운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형태론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세미나1, 한국어단어구조론연구, 한국어문장구조론연구, 한국어학일반론, 한국어표기법연구, 한국어교사를 위한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교사를 위한 문법 및 어문규범, 한국어문장연구, 한국어학원론, 한국어표기론특강, 한국어통사론연습, 한국어음운론특강/연구, 한국어사연습, 한국어사특강, 한국어통사론특강, 한국어정서법연습, 한국어의 담화와 화용, 한국어문자론, 한국어어문규범과 글쓰기, 한국어어휘구조론, 한국어연구입문, 한국어문법의 이해, 한글과 발음의 이해, 한글과 정서법, 현대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기원과 발달, 한국어말소리의 이해, 한국어구조의 이해, 한국어의 발음, 한국어문장론, 한국어화법과 의사소통, 한국어규범과 언어예절, 한국어방언학, 한국어의 뿌리와 역사, 한국어단어의 이해,

		한글과 정서법의 이해, 한국어담화분석세미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 입문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의 이해, 언어이론연구, 언어유형론연구, 외국어습득론, 응용언어학, 대조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 언어학개론,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연구, 제2언어학습이론, 응용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특강, 대조언어학연구 I (동양어권), 대조언어학연구 II (서양어권), 언어학세미나, 언어습득론, 제2언어 및 외국어습득론, 언어학특강, 담화분석, 제2언어 학습이론, 언어정보학연구, 담화텍스트이론연구, 현지외국어습득의 이해, 현지어와 한국어의 대조, 대조분석론, 이중언어학연구, 대조언어학이론과 실제, 언어와 정보, 대조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의 이해,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 오류분석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이중언어교육심화연구, 이중언어교육론, 한국어정보학, 한국어학습지언어자료연구, 말뭉치기반대조언어학, 대화분석연구,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언어와 사회문화적맥락, 인간과 언어, 외국어습득과 오류분석, 대조오류분석론, 인지언어학연구, 한국어정보학연구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읽기/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수법, 한국어매체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재 및 교수법연구,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어휘교육론연구, 한국어이해교수법연구, 한국어표현교수법연구, 한국어교육세미나,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교안작성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교육과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수요목, 한국어한자 및 어휘교육, 한국어말하기듣기교수법, 한국어읽기쓰기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발음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 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세미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개론연구,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한국문화교육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개론, 한국어이해교육론연구, 한국어표현교육론연구,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수학습이론, 한국어교수방법, 한국문학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법, 한국어듣기읽기교육법, 한국어담화교육론, 한국어교재 및 교수활용론, 한국어교육학세미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교수방법론연구, 한국어화법교육론, 외국어를 사용한 한국어교수법, 한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읽기와 쓰기교육법, 한국어교재연구,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문학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과 평가연구, 한국어어휘교육연구, 한국어교재교구연구, 한국어표현교육연구, 한국어발음교육연구, 한국어이해교육연구, 한국어교육학특수연구, 특수목적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문법교육세미나, 한국어교수법특강, 한국어교수자료연구, 한국어평가연구, 한국어교육과정연구, 한국어독해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능력평가, 한국어교육과정설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2,

	<p>한국어교육세미나 I, II, 한국어어휘교육세미나, 한국어발음교육세미나, 한국어능력평가연구, 한국어독해교육연구, 한국어말하기교육연구, 한국어듣기교육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어지도론1(말하기,듣기), 한국어지도론2(읽기,쓰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한국어교육평가 도구의 개발과 평가, 기술별한국어교육Ⅱ: 읽기,쓰기, 한국어교육연구의 비판적이해, 의사소통,내용,과제중심한국어교육, 영역별한국어교육Ⅰ: 문법, 영역별한국어교육Ⅱ: 발음, 영역별한국어교육Ⅲ: 어휘, 영역별한국어교육Ⅳ: 화용, 영역별한국어교육Ⅴ: 문화,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Ⅰ: 학업, 학습목적별한국어교육Ⅱ: 직업,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Ⅰ: 아동, 청소년,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Ⅱ: 이주노동자,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Ⅲ: 결혼이주여성,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Ⅳ: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자집단별한국어교육Ⅴ: 재외동포, 기술별한국어교육Ⅰ: 듣기·말하기, 한국어평가연구, 한국어기능교육론, 한국어교육과 통계, 한국어말하기지도법, 한국어읽기지도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문화교육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교육콘텐츠용발음교육, 한국어교육콘텐츠용어휘교육, 한국어교육콘텐츠용문법교육, 한국문화교육콘텐츠의이해, 한국문화텍스트번역연구, 한국어교육메체론,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수법, 한국고전문학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방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소설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 한국어발음지도법, 한국어수행능력평가연구, 한국어교재개발연구, 한국어교육자료개발세미나, 한국어교육자료개발론, 한국어수업지도안작성법, 한국어초급수업지도안작성, 한국어중급수업지도안작성, 한국어교안작성과 수업운영, 다문화가정대상한국어교수법,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론, 한국어문어교육론, 한국어번역론, 한국어음운교육연구, 한국어음성언어교육론, 한국어구어교육론,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수법, 한국어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매체활용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연구와 지도방법론, 한국어교재분석론</p>
4	<p>한국문화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연구, 한국문화연구, 한국문학과 문화,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고전문학특강, 한국현대문학특강,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민속학연구, 한국문학사연구,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화기초연구, 한국대중문화의 이해, 한국문화론, 전통문화현장실습,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한국민속론, 한국현대문화비평론, 한국고전시가론, 한국고전문학사, 한국고전소설론, 한국문학비평론, 한국한문학론, 한국현대문학강독, 한국현대문학사, 한국현대소설론, 한국현대시론, 한국현대문화연구, 현대한국사회연구, 한국문학의 이해와 연구, 한국학개론,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문학, 한국문화, 한국사회,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현대문화체험실습, 한국역사와 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실습, 한국작가분석, 한국소설과 영상, 한국민속문화, 한국문학입문, 한국고전시가, 한국현대문학입문, 한국현대예술, 한국여성문화, 한국사상사, 한국문화유산탐방, 한국전통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한국문화론특강, 한국문화와 다문화사회의 이해, 한국문화와 사상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문화사상특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국제사회와 한국현대문화의 이해, 한국종교문화연구, 한국문학개론(고전), 한국지역문화연구, 한국문화예술과 한류,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연구, 옛이야기와 한국문화, 세계속의 한국문화재연구, 한국문화와 생태학, 한국인의 해외활동연구, 한국의 종교와 사상, 한국문화교류사연구, 한국문학갈래론, 한국영화와 현대사회, 한국영</p>

	<p>화와 한국인, 한국공연예술의 이해, 현지문화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문화산업, 한국학일반론, 한국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문학사심화연구, 한국희곡연구, 한국의 지리와 문화, 한국매체정보론, 한국민요연구, 한국현대문화론연구, 한국사개론, 한국예술사상과 무용, 한국문화와 예술, 한국학의 이해, 한국인의 생활사, 한국학특수연구 I,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현대문학원론, 한국고전문학원론, 한국문화론특강, 샤머니즘과 한국문화, 해외한국문화제의 이해, 한국의선사와 고대문화, 한국문화원류탐구, 한국신화와 상징체계,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 한국노래문학의 이해와 감상, 한국현대작가와 문학현장, 한국고전작가와 문학현장,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한국의 사회와 법, 한국시의 이해, 한국문학의 재조명,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비교,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의 복식문화, 한국의 대중음악사, 한국의 건축문화, 한국미술의 이해, 한국어언어문화연구, 한국어언어문화특강, 외국문학으로서의 한국현대문학, 해외한민족의 이해, 해외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한국대중문화와 미디어, 한국문학과 사회, 한국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한류와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흐름, 한국사의 탐구,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한국대표문학작품감상, 현대한국사회의 쟁점, 한국근현대사의 쟁점세미나, 한국고전작가론, 한국고전시가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학과 콘텐츠, 한국노래문학의 이해,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개론</p>
5	<p>한국어 교육 실습</p> <p>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참관 및 모의수업, 한국어수업참관 및 현장실습, 한국어수업참관 및 교육실습, 모의수업, 한국어강의참관 및 실습, 강의실습, 한국어교육실습과 참관, 한국어교육모의수업, 한국어교육강의실습, 외국인을 위한 국내 한국어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국내 한국어 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한국어교육단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장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내), 한국어교육단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중기인턴십 I, II(국외), 한국어교육수업심화실습, 한국어교육실습과 교실운영, 한국어교육실습워크숍, 한국어교육실습 및 현장연구</p>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혹은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자료, 학점은행제의 경우 1년간 자료)

<p>◎ 척도</p> <p>A: 100% 이상</p> <p>B: 95% 이상 ~ 100% 미만</p> <p>C: 90% 이상 ~ 95% 미만</p> <p>D: 85% 이상 ~ 90% 미만</p> <p>F: 85% 미만</p>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 평가의 주안점

- (1) 내용 적합성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전체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각 영역별 1~2개의 강의계획서를 무작위로 확인한다.)
- (2) 내용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판정 결과로 평가한다.
- (3) 해당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적합/부적합 등으로 판정한다. 평가단(전문가 집단)은 이에 대한 판정 사유를 기술한다.
- (4) 개설 교과목 중 적합 판정 교과목의 비율을 평가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예: 적합 판정 교과목 수/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수 × 100)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자료, 학점은행제의 경우 1년간 자료)
- (2) 비학위과정은 교과목별 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강의안, 교재 등 강의 내용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
- (3) 학점은행제의 경우 실제 강의계획서 비치

◎ 척도

- A: 100% 이상
- B: 95% 이상 ~ 100% 미만
- C: 90% 이상 ~ 95% 미만
- D: 85% 이상 ~ 90% 미만
- F: 85% 미만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평가의 주안점

- (1) 필수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2) '미충족자'란 '취득자 중'에서 ① 학점은행제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② 학점을 충족하고 학점평

량 평균 환산 점수 70% 이상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3) 시범평가에서는 미충족 사유가 '필수이수 기준 미충족'인 경우와 '평량평균 환산 점수 미충족'인 경우(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종합시험 탈락')를 모두 고려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연계전공)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일반	특수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18학점		120시간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 교원자격 취득자의 이수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 (2) 비학위과정의 경우, 최근 2년간 종합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를 들면, 검사지 및 시험지, 응시자 명단, 합격자 명단, 기준표 등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p>◎ 척도</p> <p>A: 0%</p> <p>B: 0% 초과 ~ 5% 이하</p> <p>C: 5% 초과 ~ 10% 이하</p> <p>D: 10% 초과 ~ 15% 이하</p> <p>F: 15% 초과</p>
--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 평가의 주안점

- (1) 교수자 전공 일치도는 실제적인 전공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2) 한 과목을 여러 명이 담당하는 경우는 담당하는 총 교수자 대비 전공일치 교수자의 비율로 계산하여 기재한다. (예: 한 과목을 교수자 4명이 담당하고 이 중 전공일치 교수자가 3명일 경우 전공일치 과목수를 0.75로 계산한다.)
- (3) 같은 과목을 분반하여 서로 다른 교수자가 담당하는 경우는 다른 과목으로 간주한다. (예: 동일 과목명으로 동일 학기에 2명의 전공일치 교수자가 각각 다른 분반을 개별 운영한 경우 전공일치과목 수를 2로 계산한다.)

◎ 비치 자료

- (1) 최근 3년간(비학위과정의 경우 2년간, 학점은행제는 1년간) 과목개설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설과목 목록, 시간표 등
- (2) 개설과목별 교수자 전공 및 일치여부 목록 자료
- (3) 교수자의 세부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를 들면, 학위 증명서, 학위기,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자 확인 면, 박사학위 논문 초록, 논문 수록 학술지 목차 및 논문 중 분명히 전공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척도

- A: 100% 이상
- B: 95% 이상 ~ 100% 미만
- C: 90% 이상 ~ 95% 미만
- D: 85% 이상 ~ 90% 미만
- F: 85% 미만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 평가의 주안점

- (1) 실습 협력 체결 기관이 실습 현장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한다.
- (2) 실습 협력 체결 기관과의 협력 체결시기가 실습 이전 시기인지를 확인한다.
- (3) 실습 협력 체결 기관 중 적합 판정 기관의 비율을 평가한다. (학부, 대학원의 경우 예: 적합 판정 기관수/최근 3년간 실습 협력 체결 기관수 × 100)
- (4) 실습 기관이 매년 같을 경우 1개로 산정한다.
- (5) 실습 현장이 한국어교육경력인정 기관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비치 자료

- (1) 타 기관과 협력 시 실습 협력 기관 체결 양해 각서
- (2) 부속 기관과 협력 시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협조 공문이나 업무 메일
- (3) 협력 체결 기관장의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확인서
- (4) 협력 체결 기관이 용어의 정의(5)에 제시된 실습 현장 범위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척도

- A: 100% 이상
- B: 95% 이상 ~ 100% 미만
- C: 90% 이상 ~ 95% 미만
- D: 85% 이상 ~ 90% 미만
- F: 85% 미만

1.2.2.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 시간이 실습 교과목 전체 시간의 5분의 1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강의참관 또는 강의실습 둘 중 하나만 시행해도 인정한다.
- (3) 강의참관 인원이 5명을 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4) 평균 1인당 강의참관(강의실습) 시수는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 (5) 모의수업이 강의실습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비치 자료

- (1) 학기별(기수별)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참여자 명단
- (2) 학기별(기수별) 강의실습 계획서 및 시간표
- (3) 강의참관 및 실습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국립국어원 양식)'
- (4) 현장실습 지도 관리부

◎ 척도

- A: 100% 이상
- B: 85% 이상 ~ 100% 미만
- C: 70% 이상 ~ 85% 미만
- D: 55% 이상 ~ 75% 미만
- F: 55% 미만

1.2.3.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 보고서가 없을 경우 F등급으로 평가한다.
- (2) 강의참관 또는 강의실습 둘 중 하나만 시행해도 인정한다.
- (3) 한 학생이 여러 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한 번만 인정한다. 따라서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비치 자료

- (1) 학기(기수)별 강의참관/강의실습 참여 명단
- (2) 학기(기수)별 제출된 현장 경험 보고서

◎ 척도

- A: 100% 이상
- B: 85% 이상 ~ 100% 미만
- C: 70% 이상 ~ 85% 미만
- D: 55% 이상 ~ 75% 미만
- F: 55% 미만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 평가의 주안점

- (1) 현장 경험에 대한 적절한 사전지도 및 사후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2) 시범평가에서는 오프라인 지도만을 포함한다.
- (3) 사전지도 학생 수나 사후지도 학생 수가 총 현장 경험 학생 수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 비치 자료

- (1) 해당 학기(기수)의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계획서
- (2) 학기(기수)별 현장 경험 사전지도를 실시한 실제 자료
- (3) 학기(기수)별 현장 경험 사후지도를 실시한 실제 자료

◎ 척도

- A: 100% 이상
- B: 85% 이상 ~ 100% 미만
- C: 70% 이상 ~ 85% 미만
- D: 55% 이상 ~ 75% 미만
- F: 55% 미만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 평가의 주안점

- (1) 시범평가에서는 오프라인 지도만을 포함한다.
- (2)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안 작성 지도는 횟수에 상관없이 1회만 인정한다.

◎ 비치 자료

- (1)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안내자료
- (2) 학기(기수)별 교안 작성 차시별 지도 자료

◎ 척도

A: 5회 이상

B: 4회

C: 3회

D: 2회

F: 1회 이하

2. 교원 · 강사

2.1. 전임교원/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확보율

◎ 평가의 주안점

(1) 산정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전임교원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치 자료

(1) 전임교원 명부

(2) 재직증명서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3)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4) 학위과정에서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5개 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1년에 1과목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척도

A: 100% 이상

B: 85% 이상 ~ 100% 미만

C: 70% 이상 ~ 85% 미만

D: 55% 이상 ~ 75% 미만

F: 55% 미만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 평가의 주안점

(1) 전공과목 강사 인정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강사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치 자료

(1) 전공과목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2) 전공과목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3) 최근 2년간 전공과목(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1-4영역 과목 모두 포함)을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 척도

- A: 100% 이상
- B: 85% 이상 ~ 100% 미만
- C: 70% 이상 ~ 85% 미만
- D: 55% 이상 ~ 75% 미만
- F: 55% 미만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 평가의 주안점

- (1)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를 확인하여 강좌 개설 시기와 종료 시기의 담당 교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2)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전공과목 수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부: 학기당 4과목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학기당 2과목
 - 비학위과정: 기수당 3과목
 - 학점은행제: 학기당 4과목(18시간)

◎ 비치 자료

- (1) 평가 시점 전년도 학과(전공) 및 기관별 전공과목 강좌 개설 시간표(최종본)

◎ 척도

- A: 70% 이상
- B: 60% 이상 ~ 70% 미만
- C: 50% 이상 ~ 60% 미만
- D: 40% 이상 ~ 50% 미만
- F: 40% 미만

2.2. 3/5영역 전문성 확보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확보율

◎ 평가의 주안점

- (1) 전공과목 전임교원 중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으로 산정된 전임교원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 비치 자료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 명부
- (2) 재직증명서 등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으로서의 임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3)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4) 3영역 과목을 최근 2년간 1개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5) 연구실적 200%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관련 서류
- (6)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교원의 경력 증명서

◎ 척도

A: 100% 이상

F: 100% 미만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 평가의 주안점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인정 기준에 따라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치 자료

- (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박사학위기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 (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의 경력 또는 재직 증명 서류

- (3) 3영역 과목을 최근 3년간 1개 이상 강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강의 계획서 및 출석부)

◎ 척도

- A: 100% 이상
- B: 85% 이상 ~ 100% 미만
- C: 70% 이상 ~ 85% 미만
- D: 55% 이상 ~ 75% 미만
- F: 55% 미만

2.2.3.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

◎ 평가의 주안점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과 경력이 정확히 작성·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2)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가 다름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현장 실습 지도자 모두 자격과 경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 (4) 모의수업을 실습에 포함시켰는지 확인한다.

◎ 비치 자료

- (1)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학위기 또는 학위 증명서
- (2)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3) 현장 실습 지도자의 한국어교원자격증
- (4) 현장 실습 지도자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5)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상의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관리부

◎ 척도

- A: 100% 이상
- B: 85% 이상 ~ 100% 미만
- C: 70% 이상 ~ 85% 미만
- D: 55% 이상 ~ 75% 미만
- F: 55% 미만

부록5. 평가위원 평가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인증 현장 방문 평가양식

평가위원명: _____

담 당: 1영역 / 2영역

1.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1.1. 영역별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판정
영역	최근3년간 개설교과목수 (A)	적합과목수 (B)	영역별개설교과목 적합비율 $C=B/A \times 100$	적합비율 (전체평균)	
1					
2					
3					
4					
5					

1.1.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 적합성			판정
최근 3년간 개설 교과목수 (A)	적합판정 교과목수 (B)	적합교과목 비율 (B/Ax100)	

1.1.3. 필수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판정
2014		2015		2016		계			
취득자 수 (a1)	미충족자 수 (b1)	취득자 수 (a2)	미충족자 수 (b2)	취득자 수 (a3)	미충족자 수 (b3)	취득자 계 $A=(a1+a2+a3)$	미충족자 계 $B=(b1+b2+b3)$	미충족자 비율 (B/Ax100)	

1.1.4. 교수자 전공 일치 교과목 비율									판정
2014		2015		2016		계			
전공일치 과목수 (a1)	개설 과목수 (b1)	전공일치 과목수 (a2)	개설 과목수 (b2)	전공일치 과목수 (a3)	개설 과목수 (b3)	전공일치 교과목계 $A=(a1+a2+a3)$	개설 교과목계 $B=(b1+b2+b3)$	전공일치 교과목비율 (A/Bx100)	

1.2. 실습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1.2.1. 실습 기관의 적합성			판정
실습 협력 체결 기관수 (A)	적합판정 기관수 (B)	적합기관 비율 (B/Ax100)	

1.2.2a.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강의 참관)															판정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강의기관 참여율 {(b1+b2+b3+b4+b5+b6)/ (a1+a2+a3+a4+a5+a6)}x100	평균 1인당 강의참관시수 (c1+c2+c3+c4+c5+c6)/6	
강의참관대상 학생수 (a1)	강의참관학생수 (b1)	1인당 강의참관시수 (c1)	강의참관대상 학생수 (a2)	강의참관학생수 (b2)	1인당 강의참관시수 (c2)	강의참관대상 학생수 (a3)	강의참관학생수 (b3)	1인당 강의참관시수 (c3)	강의참관대상 학생수 (a4)	강의참관학생수 (b4)	1인당 강의참관시수 (c4)	강의참관대상 학생수 (a5)	강의참관학생수 (b5)	1인당 강의참관시수 (c5)	강의참관대상 학생수 (a6)	강의참관학생수 (b6)	1인당 강의참관시수 (c6)			

1.2.2b. 현장 경험 시수 및 참여율(강의실습)																판정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강의기 관참여 율 $\{(b1+b2+b3+b4+b5+b6)/(a1+a2+a3+a4+a5+a6)\} \times 100$	평균 1인 당 강 습 시 수 $(c1+c2+c3+c4+c5+c6)/6$
강의실습대상학생수 (a1)	강의관참여학생수 (b1)	1인당강의실습시수 (c1)	강의실습대상학생수 (a2)	강의관참여학생수 (b2)	1인당강의실습시수 (c2)	강의실습대상학생수 (a3)	강의관참여학생수 (b3)	1인당강의실습시수 (c3)	강의실습대상학생수 (a4)	강의관참여학생수 (b4)	1인당강의실습시수 (c4)	강의실습대상학생수 (a5)	강의관참여학생수 (b5)	1인당강의실습시수 (c5)	강의실습대상학생수 (a6)	강의관참여학생수 (b6)	1인당강의실습시수 (c6)		

1.2.3a.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율(강의 참관)												판정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강의참관 일지작성율 $\{(b1+b2+b3+b4+b5+b6)/(a1+a2+a3+a4+a5+a6)\} \times 100$
강의관참여학생수 (a1)	강의관일지출부수 (b1)	강의관참여학생수 (a2)	강의관일지출부수 (b2)	강의관참여학생수 (a3)	강의관일지출부수 (b3)	강의관참여학생수 (a4)	강의관일지출부수 (b4)	강의관참여학생수 (a5)	강의관일지출부수 (b5)	강의관참여학생수 (a6)	강의관일지출부수 (b6)	

1.2.3b. 현장 경험 보고서 작성율(강의실습)												판정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강의실습일지작성율 {(b1+b2+b3+b4+b5+b6)/(a1+a2+a3+a4+a5+a6)}x100	
강의실습참여학생수 (a1)	강의실습일지출제부수 (b1)	강의실습참여학생수 (a2)	강의실습일지출제부수 (b2)	강의실습참여학생수 (a3)	강의실습일지출제부수 (b3)	강의실습참여학생수 (a4)	강의실습일지출제부수 (b4)	강의실습참여학생수 (a5)	강의실습일지출제부수 (b5)	강의실습참여학생수 (a6)	강의실습일지출제부수 (b6)		

1.2.4. 현장 경험 지도의 충실성														판정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사전지도율 {(b11+b21+b31+b41+b51+b61)/(a1+a2+a3+a4+a5+a6)}x100	사후지도율 {(b12+b22+b32+b42+b52+b62)/(a1+a2+a3+a4+a5+a6)}x100	
총현장경험학생수 (a1)	사전지도학생수 (b1 1)	사후지도학생수 (b1 2)	총현장경험학생수 (a2)	사전지도학생수 (b2 1)	사후지도학생수 (b2 2)	총현장경험학생수 (a3)	사전지도학생수 (b3 1)	사후지도학생수 (b3 2)	총현장경험학생수 (a4)	사전지도학생수 (b4 1)	사후지도학생수 (b4 2)	총현장경험학생수 (a5)	사전지도학생수 (b5 1)	사후지도학생수 (b5 2)	총현장경험학생수 (a6)	사전지도학생수 (b6 1)	사후지도학생수 (b6 2)			

1.2.5. 교안 작성 지도의 충실성							판정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 평균교안 지도횟수 (a1+a2+a3+a4+a5+a6)/6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교안 지도횟수 (a1)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교안 지도횟수 (a2)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교안 지도횟수 (a3)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교안 지도횟수 (a4)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교안 지도횟수 (a5)	강의실습참가자 1인당교안 지도횟수 (a6)		

2.1. 전임교원 및 강사 확보

2.1.1. 전임교원 확보율				판정
학생수 (A)	전임교원 확보기준 (B)	전임교원수 (C)	전임교원 확보율 (C/B)x100	

2.1.2. 전공과목 강사 확보율			판정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전공과목의 강사수 (A)	전공과목 강사수 (B)	전공과목 강사확보율 (B/A)x100	

2.1.3. 전임교원 담당 전공과목 강의시수 비율			판정
총 전공과목 강의시수 (A)	전임교원담당 전공과목강의시수 (B)	전임교원담당 전공과목강의시수비율 (B/A)x100	

2.2. 3영역 및 5영역 전문성 확보

2.2.1.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전임 교원 확보율		판정
3영역과목전공일치 전임교원수 (A)	3영역과목 전공일치 전임교원확보율 (A×100)	

2.2.2. 3영역 과목 전공 일치 강사 확보율			판정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의 강사수 (A)	3영역과목 전공일치 강사수 (B)	3영역과목 전공일치 강사확보율 (B/A)×100	

2.2.3a.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판정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수			
총 교수자수 (A)	자격과 경력 충족 지도자수 (B)	자격과 경력 충족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자 비율 (B/A)×100	

2.2.3b. 5영역 담당 교수자의 전공 적합성(현장실습 지도자)			판정
현장 실습 지도자 수			
총 교수자수 (A)	자격과 경력 충족 지도자수 (B)	자격과 경력 충족 현장실습지도자 비율 (B/A)×100	

부록6. 평가위원 종합의견서

종합의견서

담당 유형: ① 학부 ② 대학원 ③ 학점은행제 ④ 비학위과정

평가위원명: -----

부록7. 평가 절차도(예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평가단	교육기관 (피평가 기관)
평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 실행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지표 개발 평가 DB 구축 		
	평가 편람·매뉴얼 개발 및 안내		
	평가 실시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설명회 참석
	평가 대상(피평가 기관) 선정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1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적합' 판정 기관에 한해 서면 평가 준비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신청서 제출	
	평가위원 연수	연수 참석	
	교육기관별 평가단 구성	서면 평가 실시	서면 평가 관련 서류 제출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현장 방문 평가 준비
		평가결과 DB 검증	
평가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산출 및 평가보고서 제출	
	평가결과 발표 및 활용	평가보고서 송부	평가결과 확인 및 활용

참고문헌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83~97쪽.
- 강승혜, 김현진, 조태린, 김일혁(2014),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방안 연구』(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_____(2015), 「한국어교원자격제도 10년의 회고」, 『새국어생활』, 제25권 제3호, 국립국어원, 107~122쪽.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41~58쪽.
- 김민수(2015),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제12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3~44쪽.
- 박기표, 김정남(201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학과의 실태 분석 및 제안」, 『우리말글』, 제56집, 우리말글학회, 213~253쪽.
- 안주호(2015),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 : 원격형 학점은행제 수강생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149권, 한국어교육학회, 181~205쪽.
- 윤소영, 조현성, 이미혜, 최은규(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정란, 이기영, 하지혜, 이보라미(2017),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정희원(2014),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 『제10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 조태린(2012),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경위와 방향」,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청회 자료집』, 1~9쪽.
- 조현성, 박영정, 홍기원(200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진정란(2014), 「사이버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사례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237~251쪽.
- 최용기(2009),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09, 53~67쪽.
- 최정순, 권성미, 박정아, 오지혜, 이미향, 이정란, 조태린, 지현숙, 진대연, 진정란(2012),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과 방안 연구』(연구 보고

서), 국립국어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자료: 제2017-07-07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대학평가원(2017), 『2017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ER 2017-1-299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황용주(201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교원 역량 강화 정책」,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9 ~ 237 쪽.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립국어원 자료실 http://www.korean.go.kr/09_new/data/report_list.jsp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main.do>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obon.or.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http://aims.kcue.or.kr/>

연구 책임자	강승혜(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원	장은아(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방성원(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조태린(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보라미(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권진주(국립국어원)
연구 보조원	김은실(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신승윤(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홍경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홍성주(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인쇄: 독수리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